

계간 KIPF 재정동향

제1권 제2호(통권 제2호)

2010년 6월

[목차]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5
I. 재정정책 동향	7
1. 2009회계연도 결산	7
2. 2010회계연도 집행	9
3. 2010회계연도 계획	14
4. 최근 재정상황	17
II. 이슈 및 분석	21
1. 예산법률주의를 생각하다 / 김종면	21
2.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고찰 / 이은경 · 박형수	36
3. 미국 건강보험 개혁 / 이은경	49
III. 국내외 보고서	62
1. 주요 보고서 요약	62
2. 보고서 목록	77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91
I. 주요국 동향	93
II. 미국 (FY2010: 2009.10~2010.9)	97
III. 일본 (FY2010: 2010.4~2011.3)	107
IV. 영국 (FY2010-11: 2010.4~2011.3)	123
V. 프랑스 (FY2010: 2010.1~2010.12)	141
VI. 독일 (FY2010: 2010.1~2010.12)	159
VII.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172
VIII. 호주 (FY2009-10: 2009.7~2010.6)	187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193
I. 미국 (2010년 3월 기준)	195
II. 일본 (2010년 2월 기준)	202
III. 영국 (2010년 3월 기준)	209
IV. 프랑스 (2010년 2월 기준)	214
V. 독일 (2010년 3월 기준)	218
VI. 캐나다 (2010년 2월 기준)	224
VII. 호주 (2010년 1월 기준)	229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I. 재정정책 동향

II. 이슈 및 분석

III. 국내외 보고서

I

재정정책 동향*

1. 2009회계연도 결산

- (결산) 정부는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의 결산심사를 거쳐 5월 28일 국회에 제출
 - 금번 국가결산은 2009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국가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통합결산보고서로 작성하고, 기금 및 정부기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서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의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시범 작성중이며, 국회 및 감사원에의 제출은 2011년 결산부터 적용 예정
 - 2009년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5.3조원, 총지출 272.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6조원(GDP 1,063.1조원 대비 1.7%) 적자
 -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2조원(GDP 대비 4.1%) 적자
 - 예산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 4.4조원, 관리대상수지 7.8조원이 개선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61.3조원, 총세출 252.2조원으로 9.2조원의 결산상 잉여금 및 6.5조원의 세계잉여금(일반회계 3.6조원, 특별회계 2.9조원) 발생
 - 5개 정부기업특별회계
 - 재정운영: 수익 7.5조원, 비용 6.7조원, 이익 7,500억원
 - 재정상태: 자산 56.9조원, 부채 47.5조원, 순자산 9.4조원
 - 63개 기금
 - 재정운영: 수익 126.5조원, 비용 114.1조원, 이익 12.4조원
 - 재정상태: 자산 872.9조원, 부채 598조원, 순자산 275조원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SECTION 1 >>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346.1조원(GDP 대비 32.6%)으로 2009년 추경시 계획한 355.3조원(34.5%)에 비해 크게 개선(△9.2조원)
 - 2008년 297.9조원(GDP 대비 29.0%)에 비해 48.2조원 증가
 -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국제기준)는 359.6조원으로, GDP 대비로는 전년보다 3.7%p 증가한 33.8% 수준
 - 국가채권(중앙정부)의 현재액은 174.7조원으로 전년 대비 6.9조원(3.8%) 감소
 -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296.8조원(감사원 검사결과 0.5조원 증가)으로 전년 대비 12.8조원(4.1%) 감소
 - 물품현재액은 11.5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9.8%) 증가
 - 성과관리 대상기관(49개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총 806개의 성과목표 중 658개(81.6%) 달성, 148개(18.4%) 미달성
 -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정부는 2009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결산보고서 구성서류의 하나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성과계획서는 2008년에, 성과보고서는 2010년에 최초 제출
- (세계잉여금 처리) 정부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조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하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
- 국가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는 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 상환(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 기타 채무상환(①, 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 2010년도 세입이입 등
 -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0.8조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적자국채 조기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4조원을 사용
 - 잔여 세계잉여금 1.4조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임

〈표 1-1-1〉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규모

(단위: 억원)

2009 세계 잉여금	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국가채무상환		④ 세입이입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36,087	7,864	8,467	5,927	13,829

2. 2010회계연도 집행

가. 조기집행 실적

- (4월까지 집행현황)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통해 4월까지의 재정집행을 점검한 결과, 초과달성된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 달성은 무난할 전망
 - 2010년 4월말 현재 집행관리대상 사업비 271.3조원 중 108.6조원을 집행하여 계획 (105.6조원) 대비 3.0조원 초과 집행

〈표 1-I-2〉 4월말 재정조기집행 실적

(단위: 조원, %, 누계)

구 분	2010년 집행규모 (A)	계 획		실 적		증 감	
		금액(B)	진도율(B/A)	금액(C)	진도율(C/A)	금액(C-B)	집행률(C/B)
합 계	271.3	105.6	38.9	108.6	40.0	3.0	102.8
예 산	175.1	70.4	40.2	74.3	42.4	3.9	105.5
기 금	31.3	11.5	36.7	11.9	38.0	0.4	103.5
공공기관	64.9	23.7	36.5	22.4	34.6	-1.3	94.8

- 특히, 일자리와 민생안정, SOC 사업 등 국민생활 및 경기에 영향이 큰 3대 중점관리 대상분야는 연간 목표액 82.6조원 중 25.9조원을 집행하여 3월 목표 25.7조원 대비 0.2조원 초과 집행

〈표 1-I-3〉 3월말 중점관리분야 집행 실적

(단위: 조원, %, 누계)

구 분	2010계획 (A)	2010년 3월말			상반기	
		계획	실적(C)	진도율 (C/A)	계획	진도율
합 계	82.6	25.7	25.9	31.4	52.7	63.7
민생안정사업	17.4	5.2	5.6	32.2	10.5	60.0
SOC사업	59.7	19.6	18.7	31.3	38.8	64.9
일자리사업	5.5	1.6	1.7	30.9	3.4	61.4

나.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 (국고보조사업) 2010년 4월, 기획재정부는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 법률 명칭을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3년)으로 평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 부여
 -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을 명확히 하여 ‘총비용개념’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활용 유도
 - 보조사업자, 수혜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2010년 4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의거,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개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대규모 재정지출(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상정의무화)
 - 상정 안전에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先협의 後상정 원칙)
 -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 소요재원 미반영
 -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활용할 방침

-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종 중·장기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 자원대책 등에 대해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도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

- **(기금존치평가)** 2010년 5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2009년도 말 현재 운영중인 기금 중 정비계획이 마련된 2개 기금을 제외한 61개 기금에 대해 기금존치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발표
 -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설치목적 및 기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존치필요성을 3년마다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정비에 활용하고자 2004년 처음 실시된 이래 2007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임
 - 평가제외 기금 :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2010년 1월 농작물재해기금과 통합), 지역신문발전기금(2010년 9월 폐지 예정)
 - 2010년 평가결과 : 1개 기금(국가장학기금) 폐지, 4개 수계관리기금의 통합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통합, 7개 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조건부 존치, 나머지 48개 기금은 존치
 - 평가결과는 5월 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관리주체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정비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안을 통한 중기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근거
 -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SECTION 1 >>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전년도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 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 국가채무관리계획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함
- 재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임대형(BTL)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 기금의 재정관리강화를 위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등
 -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등
- 국가채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간 확대
 -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발행계획 또는 차입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과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그 밖의 개정사항

- 보조금 관리 강화: 지자체 및 민간에 지원한 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상임위 및 예결위에 각각 제출
- 재정부담수반법령 재협의 규정 마련: 재정부담 수반 법령안의 재정지출 또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후 재협의
- 국세감면 요청시 “재정지출 축소방안”포함: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세감면을 요청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정지출 축소방안”도 제출

다. 4월부터 달라진 조세제도

- 세법령 개정, 기획재정부장관고시 개정 등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조세제도의 주요내용
 -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미발급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 중소기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 등 세무조사제도 개선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3.4% → 4.3%)
 - 유흥주점 VAT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수입시 VAT 면제대상 장애용품 범위 개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3.4% → 4.3%) 등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 가산세 면제,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해외 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보완 등 관세제도 개선
 -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개편

3. 2011회계연도 계획

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재정운용목표)** 2011년도에는 제로베이스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 계획
 - 재원배분의 3대 기본 방향
 -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 －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

- **(재정운용전략)** 이러한 재정운용의 목표와 재원배분 중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총량 관리 강화,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을 재정운용의 전략으로 채택
 - 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
 - －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건전화 목표('13~'14년 균형달성, 국가채무 30%대 중반수준 관리)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재정수지가 금년도(GDP 대비 $\Delta 2.7\%$)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관리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구조조정 추진
 - － 재량적 지출은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감액하거나 성과 제고방안을 강구
 - － 의무적 지출은 법개정·제도개선을 전제로 구조조정 추진
 - － 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사업은 그 효과 및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구조조정
 - － 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편성
 -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유사사업은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사업은 통폐합 추진

- 기획-편성-집행-평가 등 수단계에 걸쳐 지출 효율화
-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예산 간 연계 강화
-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하고,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노력 지속
 - 공기업 등에 대한 배당성향의 합리적 조정,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세외수입 확보
 - 기금·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유동성 제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재원은 일반회계와 통합운영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확대, 국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수입기반 확충

나.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를 위한 Ten-Ten 전략 추진

- (추진배경) 5월 1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재정 건전화와 함께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적극 시행키로 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
 - 금번에 통보한 세부지침은 지난 5월 9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임
- (주요내용)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
 -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성과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감액 조정,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과감한 통합·정비, 경제위기시 도입한 한시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재점검 등 추진
 - 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
 - 기획·요구 단계: ① 타당성 검증 강화, ②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③ 사전협의 내실화, ④ 총비용 검토

SECTION 1 >>

- 편성 단계 : ⑤ 전략적 자원배분, ⑥ PAYGO 원칙, ⑦ 보조사업 일몰제
- 집행·평가 단계 : ⑧ 전달체계 정비, ⑨ 사업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절감, ⑩ 성과정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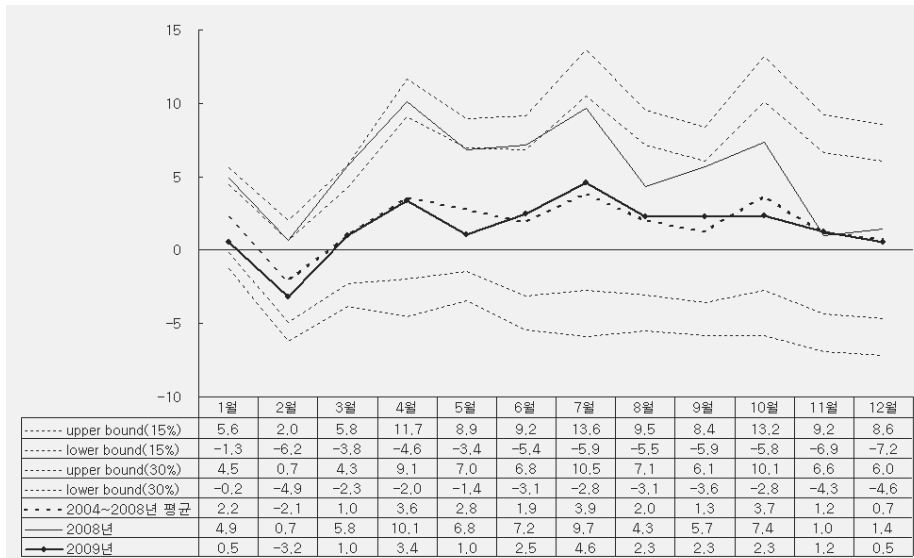
4. 최근 재정상황

- (2009년 월별통계) 상반기중에는 재정조기집행 정책 및 세수 부진 등으로 인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추경예산상 연간목표(51.0조원)의 84% 수준인 42.7조원에 달하였으나, 결산상 적자규모는 43.3조원으로 7.8조원이나 개선됨
 - 통합재정수입은 2009년 5월까지의 누적진도비가 42.7%(과거 5년 평균은 44.8%)에 그쳤으나, 이후 급격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세입도 늘어나 결산상으로는 추경예산상의 연간계획치(253.9조원)를 1.3조원 초과한 255.3조원 시현
 - 경상수입이 0.9조원, 자본수입이 0.4조원 정도 연간세입목표를 초과
 - 반면,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 정책(상반기 60% 집행 목표)으로 인해 2009년 10월까지의 누적진도비가 과거 실적치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결산상으로는 추경상의 연간계획(275.9조원)보다 3.0조원 작은 272.9조원 시현
 - 경상지출이 1.8조원, 순융자가 1.3조원 정도 연간지출예산보다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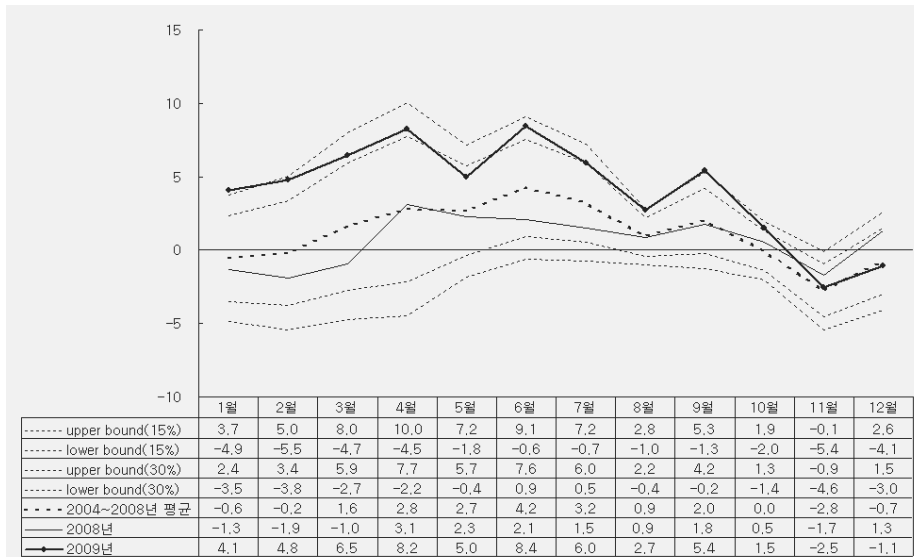
- (2010년 3월통계) 지난해보다 수입은 9.0조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3.6조원 증가에 그쳐 통합재정수지가 5.4조원 개선되었으나 관리대상수지는 19.5조원 적자로 여전히 큰 폭의 적자(전년대비 2.4조원 감소)를 보이고 있음
 - 통합재정수입은 3월 진도비가 29.6%로 과거 5년 평균(26.1%) 및 전년(26.0%)보다 높은 편
 - 다만 과거보다 약 2배 정도로 높게 계획된 자본수입의 진도비가 9.6%로 부진
 -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경우도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상반기 60% 집행 목표)에 힘입어 3월 진도비가 32.0%에 달했는데, 이는 과거 5년 평균(25.9%)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했던 전년(31.5%)보다도 높은 편

[그림 1-I-1] 2009년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의 월별 진도비 추이

(수입)



(지출 및 순용자)



주: 월별 진도비에서 매월 균등할 경우의 진도비를 차감한 수치임. upper and lower bound는 과거 6년간의 월별 진도비의 평균 및 표준편차 통계치를 바탕으로 계산된 연간목표 달성가능확률이 15% 및 30%에 불과하여 경계하여야 할 가상의 진도비 수준을 표시한 것으로, 월별 진도비가 동 영역을 상회 또는 하회하면 연간목표를 초과 또는 미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표 1-I-4〉 통합재정 추이

(단위: 십억원)

	수입			지출 및 순융자				통합 재정 수지	관리 대상 수지	
	소계	경상 수입	자본 수입	소계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순융자			
2004	178,760	177,432	1,329	173,538	145,148	26,992	1,398	5,222	-3,959	
2005	191,488	190,206	1,281	186,398	158,721	24,649	3,028	5,090	-6,521	
2006	209,573	208,091	1,482	205,928	173,688	26,493	5,746	3,646	-10,784	
2007	243,633	241,693	1,940	209,810	169,658	33,045	7,107	33,823	3,577	
2008	250,713	248,809	1,904	238,834	196,879	36,475	5,480	11,880	-15,631	
2009	분예산	263,984	262,171	1,813	257,536	206,582	42,096	8,858	6,449	-24,765
	추경	253,911	251,822	2,088	275,898	211,488	45,011	19,398	-21,987	-51,044
	1월	23,367	23,314	52	31,908	22,721	5,958	3,228	-8,541	-9,457
	2월	35,563	35,271	291	55,202	41,270	9,465	4,466	-19,638	-21,190
	3월	68,582	68,156	427	81,007	62,363	13,832	4,812	-12,425	-21,940
	4월	96,967	96,284	682	107,021	83,069	18,156	5,797	-10,055	-21,209
	5월	108,420	107,161	1,259	128,690	99,470	21,303	7,917	-20,271	-33,436
	6월	133,237	131,538	1,700	161,193	123,570	28,048	9,575	-27,955	-42,659
	7월	159,728	157,923	1,805	177,385	136,729	30,647	10,008	-17,657	-34,544
	8월	175,113	173,233	1,880	191,454	149,225	32,114	10,114	-16,341	-35,304
	9월	196,185	194,135	2,050	221,876	174,632	36,273	10,971	-25,690	-47,906
	10월	217,503	215,352	2,151	234,112	184,569	37,765	11,778	-16,609	-40,544
	11월	235,887	233,549	2,338	245,971	193,911	39,655	12,406	-10,083	26,125
12월	255,252	252,720	2,532	272,873	209,689	45,134	18,049	-17,620	25,630	
2010	분예산	262,263	258,714	3,548	264,278	212,396	45,933	5,948	-2,015	28,100
	3월	77,599	77,258	340	84,619	68,298	13,728	2,293	-7,020	-19,513
3월진도비	29.6%	29.9%	9.6%	32.0%	32.2%	29.9%	43.6%	-	-	
(전년도)	(26.0%)	(26.0%)	(23.5%)	(31.5%)	(30.2%)	(32.9%)	(54.3%)	-	-	
(5년 평균)	(26.1%)	(26.1%)	(23.5%)	(25.9%)	(26.6%)	(23.8%)	(14.7%)	-	-	

SECTION 1 >>

- (국가채무 통계) 2009년말 국가채무는 359.6조원(GDP 대비 33.8%)으로 2008년말 대비 50.6조원(GDP 대비 3.7%p) 증가
 - 일반회계 적자보전(34.0조원), 외환시장 안정(10.9조원) 등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48.1조) 및 지방채 발행 증가에 기인
 - 지방정부 채무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 이후 확정 예정
 - 2009년 추경예산보다는 6.4조원(GDP 대비 1.8%p)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국고채권 발행 감소(2.0조원), 국내외화유동성 안정에 따른 외평채 발행 축소(5.3조원) 등에 기인

〈표 1-I-5〉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연말기준,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결산	추경	결산	예산	중기 계획	중기 계획	중기 계획
국가채무 총계	309.0	366.0	359.6	407.2	446.7	474.7	493.4
(GDP 대비, %)	(30.1)	(35.6)	(33.8)	(36.1)	(37.6)	(37.2)	(35.9)
중앙정부	297.9	355.3	346.1	394.6	433.6	461.1	479.5
○ 국채	289.4	345.4	337.5	n.a.	425.5	453.5	472.5
- 국고채	239.3	282.9	280.9	n.a.	358.0	383.9	400.4
- 국민주택채권	44.9	48.9	48.3	n.a.	49.9	50.8	52.0
- 외국환평형채권	5.2	13.6	8.3	n.a.	17.6	18.8	20.1
○ 차입금	5.3	6.5	5.4	n.a.	4.2	3.7	3.2
○ 국고채무부담행위	3.2	3.4	3.2	n.a.	3.9	3.9	3.8
지방정부순채무	11.1	10.7	13.5	12.6	13.1	13.7	13.9

출처: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2010년 4월), 2010회계연도 예산, 2011~2013년은 국가채무관리계획(2009년 10월)

Ⅱ 이슈 및 분석

1. 예산법률주의를 생각하다*

가. 재정제도 재설계에 대한 논의

지난 1~2년간 정치권으로부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의 일부로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설계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개혁 논의가 다루는 정부 형태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정체(政體, political system)에 부합되도록 예산과 관련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 배분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예산과정에서의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예산법률주의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예산법률주의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관심의 근저에는 그 의미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고에서는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개혁을 수반한 예산제도 개정의 방안 중 비교적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사례로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작년 8월 말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 중 재정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해보기로 하자.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안은 2가지 정부 형태의 선택과 이에 따른 예산형식의 변경을 논하였다. 즉 프랑스와 유사한 이원정부제와 미국과 유사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하였다. 예산에 관한 한 두 가지 안 모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원정부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정부만 예산법률안제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반면 대통령제 안(案)은 미국과 같이 정부는 예산계획서를 국회(하원)에 제출하고 국회(하원)는 예산법률안을 제안하고 국회(상·하원)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 예산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제안되었다.

*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 연구위원(jhrv@kipf.re.kr)

-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의 장(章)을 신설하여 재정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
- 지출승인법 제정 또는 세출위원회 설치 등 부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
-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국회법에 반영하도록 제안하며, 예산안 제출기한 및 예산심사기한 규정 등은 삭제
- 하원이 예산법률안 제안을 제안하고, 하원이 우선 심의·의결한 후 상원으로 송부
- 국회의 지출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제한 규정 삭제

위에서 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제안에서도 예산제도 개정의 흐름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내지는 거의 전적으로 예산편성을 국회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 개정 사항을 발제하는 논리전개에서는 예산법률주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짐작하건대 예산법률주의하에서는 예산은 곧 하나의 법이 되고, 법의 발의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입법부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 자연스럽게 국회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연결된다는 논리 전개로 이해된다.

예산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OECD 예산간부회의에서도 수차 논의된 세계적인 추세이며 필자의 개인적 소견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논의는 사실상 예산법률주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안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자칫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편향 또는 왜곡된 이해를 바탕으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예산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나. 예산법률주의의 쟁점 이슈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하기에 앞서 그 정확한 정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54조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이렇게 통과된 결과는 예산이 된다. 달리 표현하면 예산은 정부가

안을 제출하여 국회가 확정하는 정부의 계획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이 아니다. 이에 반해 예산법률주의에서는 확정된 예산이 하나의 법이 되므로 의결되어 확정된 예산을 예산법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당연히 예산안은 예산법안이 된다. 이처럼 예산을 하나의 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예산법률주의이다.

그렇다면 예산을 법으로 생각해서 예산법이라고 부르는 이외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사항이 있는가? 특히 해외사례를 보았을 때 예산법률주의를 따르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비법률주의인 우리 예산제도와 다른 점이 있는가? 재정 관련 개헌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예산법률주의에 무게를 둔 논리 전개가 자주 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 본절의 논의는 예산법률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하고자 한다.

1) 예산편성권

예를 들어 다소 단순한 논리로,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 예산편성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산안도 법안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정부 발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반 법률과 같이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즉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요국 중 이런 구도는 미국의 예산제도가 유일하다¹⁾. 그 이외의 OECD 주요 국가들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다. 정부의 3부 중 행정부를 영어로 ‘executive branch’라고 칭하는데 이는 달리 번역하면 집행(execution)을 하는 “집행부”가 된다. 그렇다면 집행을 담당하고 따라서 실무적 세부사항과 소요비용을 가장 잘 아는 집행부에서 내년에 무슨 일을 하겠으며(국정계획 수립) 이를 수행하는 데는 얼마

1)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편성권이 의회에 있으나, 예산의 내역을 정하는 실질적 편성에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미국의 의회예산처(CBO)가 유능하기는 하나, 의회가 CBO의 도움만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결국 대통령 예산서를 기반으로 의회도 예산편성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은 수정만 가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의회가 편성과정에서 중대한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수 년간 직접 인터뷰한 OMB, CBO, GAO 전현직 관료들 간에 이견이 없다.

의 비용이 드니(예산안), 국고권(power of the purse)을 가진 국민의 대표인 의회, 즉 입법부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3권 분립의 취지에도 가장 부합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예산편성권에 대한 해외사례를 다시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국가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따르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를 형성하고, 수상 이하 이렇게 형성된 내각이 국정운영을 주도한다. 이 때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정책이나 법의 제·개정 등 행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안의 부결은 물론, 주요 수정까지도 그 자체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되어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일본 이외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예산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 및 확정 과정에서 입법부인 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사실 매우 약하다. 즉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 예산이 되며, 예산법률주의는 우리와 대동소이하게 의회가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여 승인한 정부예산안이 우리와는 달리 법의 위상을 갖는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의원내각제의 이러한 속성이 가장 두드러진 영국의 경우,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의회에 제출된 사례도 많으며, 과거 100여년간 지금까지도 수정발의조차 없었다. 또한 의회에서의 예산안 심의 소요 기간에 대한 제약을 보면 법률이 아닌(재무부의 영향력으로 제정된) 의회규정에 의해 세출예산에 관한 하원의 토론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원이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완료해야 하는 날짜를 8월 5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그 결과 보통 예산안 통과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 4개월 정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회에 의한 예산통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유럽 국가 중 의원내각제에서는 영국이나 영연방계의 국가에서와 같이 국정운영에서의 행정부의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강하지는 않다²⁾. 또한 남유럽이나 북유럽 등 지역이나 문화권에 따라 정치나 행정의 성격이

2) 영연방 국가들은 두 개의 거대 정당 중 하나가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하여 정권을 이루게 되는 거대양당제인 반면, 다른 유럽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대부분 한 정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얻기 힘든 선거제를

다소 차이는 있다³⁾.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들 국가 모두가 예산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의 속성상 예산의 편성 및 확정 과정에서의 행정부의 권한은 매우 강하고 의회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약하다는 점이다.

OECD 회원국의 정치체제로는 의원내각제 이외에도 몇 나라에서 대통령제, 또는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를 볼 수 있다. 반대통령제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의 수상과 유사하게 총리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반대통령제로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에서도 지목한 프랑스의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프랑스와 거의 동일한 반대통령제 국가이다. 또한 프랑스가 의원국가제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리의 독자적 권한은 사실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며, 대통령이 여하한 형태로든 총리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중요하다. 즉 실질적인 국정 주도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한다⁴⁾. 프랑스는 근대사의 왕정 당시부터 대표적인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그리 의외의 현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굳이 대통령제와 반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것은 본고의 맥락에서 큰 의미가 없고 대통령제 국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프랑스 두 가지 경우만 살펴보는 것으로 예산법률주의와 예산편성권의 관계에 대한 실례 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예산제도는 적어도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의 우리 모습과 유사하다. 우리와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따르지만 예산(법)안은 의원이 발의할

따르고 있다. 따라서 거의 예외없이 복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의 형태를 이루게 되며, 단일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영연방 국가의 경우보다 여권 내에서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 3) 북유럽 국가에서는 영연방과 유사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형식보다는 합리성이 존중된다. 그러나 때로는 법이 있더라도 상식이 이에 우선할 수도 있는 영연방과는 달리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을 중시한다. 사회적 합의 또한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미 명백히 합의된 사안을 법제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사전적(ex ante) 형식과 논리의 정치성을 중시하는 civil law system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 4) 프랑스 정치체제를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나, 프랑스 헌법 5조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 지휘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0조 1항과 제21조 1항에 의하면 총리가 행정부의 활동을 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의 범조항을 해석 및 적용하는 데 있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정치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나, 2000년에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5년제로 바꾸면서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를 일치화하고, 이에 따라 대개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동일 정당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대통령주의적 성향을 보다 강화하였다.

수 없고 헌법 제40조에 의해 오직 정부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가 정부예산안에 비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신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국회와 정부 간의 예산편성에 관한 역할 및 권한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점은 우리와 다르나, 똑같은 (반)대통령제 체제인 프랑스에서는 확정된 예산이 법적 지위상으로 “법”이기는 하나, 일부 수정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국회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예산과 동일하다.

오히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는 예산법률주의하에서도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도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47조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총 7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별법(ordonnance)에 의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안에 주요 수정을 가하더라도 헌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독자적 예산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예산의 집행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총지출의 1.5%까지 국회의 승인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프랑스 국가재정법 제14조), 전통적으로 각 부처에 파견된 재무부의 지출관리관들이 부처 지출을 유보 또는 삭감까지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제하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따르고, 주요국 중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예가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부권에 대한 아래의 논의에서 더 살펴보기로 한다. 그 대신 여기서는 본질을 마감하면서 OECD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편성권 강화 간에는 논리적 연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서로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부연하여 강조하고 싶다. 예산 비법률주의 국가인 일본을 제외하면 OECD 주요국은 모두가 예산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으나, 이 중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은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국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는 각국의 예산제도에 대한 문헌 연구와 더불어 OECD의 예산간부회의와 전문가회의를 통해 OECD 회원국의 재정차관 및 예산실장 등 예산고위간부들과 필자가 수년간 직접 논의하고 확인한 결과에 근거한다. 즉 적어도 예산편성권에 관한 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해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거나 예산안 수정에 대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해외사례를 통해서는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미국의 예산제도를 우리가 따를지 여부를 묻는 것이지,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이슈와는 논리적으로 무관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2) 거부권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경우, 즉 예산도 법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진행한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사안 역시 다분히 미국식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본절에서는 주로 미국에서의 예산안 거부권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간략하게나마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거부권에 대해 보기로 하자.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거부권이 의미가 없다. 정권 획득 자체가 의회에서의 다수석 확보를 전제로 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주요 사안에 대해 의회가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의를 하였다면(즉 거부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자체가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되어 총리와 내각이 물러나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 중 프랑스에서는 예산법이 의회에 의해 채택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그 전에 의회에 예산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법안 심의 및 수정에 대한 강력한 제약,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수정하거나 바로 채택할 수도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감안할 때, 적어도 예산에 관한 한 의회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미국 이외의 OECD 주요국에서는 예산법률주의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거부권이 이슈가 되지 않음을 밝혔다. 즉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핵심은 앞으로 개헌이 된다면 우리가 미국의 예산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이다. 부연하자면 거부권의 문제 역시 해외사례로 판단하건대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서 이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제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 자명하다.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의회에서 통과된 세출법안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함으로써 법이 된다. 대통령이 의회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한 내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가 재심의 및 재통과 절차

를 거치도록 하는데, 이때 양원에서 각기 재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뒤집을 수 있으며 즉시 법으로 확정된다⁵⁾⁶⁾. 이 점에서는 세출법도 다른 일반적인 법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예산, 즉 세출법에서만 쟁점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법안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항목별 거부권(line-item veto)이 그것이다.

의회를 통과한 세출법안 중 대통령과 정책적 판단이 다른 일부 내용이 있거나 의회의 선심성 예산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대통령이 법안 전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항목별 거부권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이러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1996년에 의회에서 이를 인정하는 항목별 거부권법(line-item veto act)이 통과되었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활용하여 재임 중 11개 법안에 대해 82번 적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1998년에 동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이후에는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적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⁷⁾.

여기서 잠시 이와 연관된 미국 헌법을 보기로 하자. 미국 헌법 제1조 제9항은 “국고로부터의 지출은 오직 의회의 입법을 통한 지출 승인에 의거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⁸⁾. 이 조항은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법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헌법이 명시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헌법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명문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한다는 별도의 조항

5)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외에도 두 가지 경우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의회 회기중에 대통령이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10일(일요일 제외)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법이 발효된다. 반면 10일이 경과한 시점이 의회가 폐회한 기간중이면 대통령의 “주머니 거부권”(pocket veto)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는 의회가 재심의하여 재통과시킬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의회는 그 다음 회기에 같은 법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다시 다룰 수 있다.

6)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채택되는 경우는 드물다. 1789년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의회가 다시 통과시킨 경우는 1,484건 중 106건에 불과하다.

7) 연방정부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미국 헌법에 의해 선택적 거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50개 중 7개 주만이 항목별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8) 이에 더하여 공공재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세서가 수시로 발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and a regular Statement and account of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all public Money shall be published from time to time.”(U.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9))

이 헌법에 없으므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잠정예산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⁹⁾.

이와 같이 헌법 제1조 제9항에 의해 예산도 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이상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예산법안의 처리 과정은 다른 일반 법률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거부권의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의 제1조 제7항의 2와 3으로, “제출”조항(presentation clause)이라고 알려진 조항이다¹⁰⁾. 동 조항은 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법으로 발효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포함되는데, 1996년의 항목별 거부권처럼 의회의 법안에 대해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명하여 법이 발효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항목별 거부권에 대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헌적으로 의회 고유의 입법권을 위임하고, 대통령은 위헌적으로 법안에 대한 최종 수정·결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을 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1996년의 항목별 거부권법의 구체적 사례 이외에도, 향후 예산법안에 대한 어떠한 선택적 거부권도 현행 헌법하에서는 위헌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즉 항목별 거부권이 여하한

9) 미국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준예산제도와 같은 잠정예산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예산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미국 의회는 임시적인 조치로 계속(지출)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채택하여 정부가 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계속결의안은 형식상 상하원의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으로 처리되며, 공동결의안은 그 자체가 법으로 간주되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지출의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계속결의안은 법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될 수도 있다.

10) “Every Bill which shall have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shall, before it become a Law,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approve he shall sign it, but if not he shall return it, with his Objections to that House in which it shall have originated, who shall enter the Objections at large on their Journal, and proceed to reconsider it. If after such Reconsideration two thirds of that House shall agree to pass the Bill, it shall be sent, together with the Objections, to the other House, by which it shall likewise be reconsidered, and if approved by two thirds of that House, it shall become a Law. But in all such Cases the Votes of both Houses shall be determined by Yeas and Nays, and the Names of the Persons voting for and against the Bill shall be entered on the Journal of each House respectively. If any Bill shall not be returned by the President within ten Days (Sundays excepted) after it shall have been presented to him, the Same shall be a Law, in like Manner as if he had signed it, unless the Congress by their Adjournment prevent its Return, in which Case it shall not be a Law.

Every Order, Resolution, or Vote to which the Concurr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be necessary (except on a question of Adjournment)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before the Same shall take Effect, shall be approved by him, or being disapproved by him, shall be repassed by two thirds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Rules and Limitations prescribed in the Case of a Bill.”

형태로든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의 근거를 헌법에서 확보하는 개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상 본질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시사점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편성권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에 대한 검토 역시 미국식 예산제도 채택 시에만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문제라고 판단되며, 특히 같은 대통령제를 따르는 프랑스의 경우라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제도이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경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구현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식 예산제도를 따를 것인지 검토할 수 있겠으나, 예산법률주의 그 자체는 해외사례를 보건대 예산의 편성권이나 예산법안의 거부권과는 별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향후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중요할 수도 있도록 예산제도를 바꿀 경우, 일반 법률과 달리 예산법안에 대한 선택적 거부권을 인정할 것인지, 만일 그러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이를 구체화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결론이 여하한 방향으로 나오든 간에, 이를 개정된 헌법에 명시적으로 기술하여 그 이후의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¹¹⁾.

3)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 좋은 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를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국가의 주요 기능이나 사업에 대해 법에서는 그와 같은 사업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법의 취지와 실제 예산 배정 간의 불일치를 말하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 현재 법의 하위규범인 예산도 예산법으로 함으로써 양자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는 특정

11) 헌법 이외의 일반 법률이나 국회 의사진행규정 등에서도 예산법에 일반 법률과 구분하여 다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예산제도에서도 상·하원의 의사진행 규정에는 예산법안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이 다수 있는데, 주로 예산법안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기능이나 사업을 국가가 하도록 법을 제정할 때 재원까지도 지정·확보하거나 예산배정을 강제토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논리도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하는 것 같다. 영어로 budgeting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예산을 ‘배정하다’ 또는 ‘편성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보다 세분화된 개념이 사실 없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래 근대적인 예산제도가 모습을 잡아가면서 영미권 국가와 그 밖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다시 수권(authorization)과 세출입법(appropriation)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국가재원 지출의 법적 근거 부여(수권)와 구체적인 지출의 결정(세출입법)이 개념과 성격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영미권 국가에서는 수권입법과 세출입법을 같은 법안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오랜 전통의 불문율이 있을 정도로 두 가지 개념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위에서 얘기한 사례에서 국가가 어떠한 사업이나 지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 법은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는 수권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 구체적 지출 결정이 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오히려 법리적으로는 지출결정이 수권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없이 지출의 법적 근거만 명시한 수권법의 사례도 외국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부연하자면 수권법은 사업의 당위성을 다루는 부분이며, 당위성이나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도 국가의 재정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별도의 의사결정에 따라 예산이 충분히, 적게, 또는 아예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어떤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와 그에 대한 예산배정 여부 간에는 불일치되거나 모순될 것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문제로는 수권은 법으로 이루어지되 수권사업에 대한 예산은 법이 아니라는 형식적 측면의 불균형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법학자 이외에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나, 굳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예산도 예산법의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는 방안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논리적으로 다른 제도적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생각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4) 법으로서의 구속력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또 하나의 이슈가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행정부에 대해 더 확실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 운영의 현실을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의 계획이고 법이 아닌 하위규범이라고 해서 국회의 결정이 행정부에 대해 구속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반대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도 담당 기관에서 매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의 예로 예산법률주의의 가장 대표적 사례인 미국에서는 예산이 세출법의 형태로 처리됨으로써 그만큼 강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경우 1974년의 의회예산법 이전에는 행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예산 결정을 무력화시키기도 하였는데, 특히 닉슨 정권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하였다. 즉 예산이 세출법의 형태를 갖췄다고 해서 구속력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¹²⁾.

이와 연관된 문제로, 예산이 법이 됨으로써 사업을 담당할 공무원이나 다른 책임자가 집행을 잘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확보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집행과정에서 외부요인 또는 정책판단의 문제로 인한 잘못은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데 대부분의 독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책임자의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되는 중대한 과실로 국한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굳이 세출법에 관련조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출법에서 특정 행위를 금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까지 적시되지 않았다면 법적 구속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예산을 다루는 세출법에서 이와 같은 세세한 조건이나 처벌조항까지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다고 해서 예산의 구속력이 강해지지는 않을 것

12) 미국은 1974년의 의회예산법을 통해 우리가 아는 의회예산편성권을 명확히 하였다. 동법에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 미집행을 명시적으로 금한 (행정부에 의한 예산재원) 압류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1974년은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해이며, 대통령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안이 의회예산(및 지출유보금지)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라고 설명하였다. 본질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반대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은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예산에 대한 구속력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특정 세출법에 담긴 내용이 행정부에 대해 어떠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이하의 논의에서는 특정 세출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제약의 구속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우리 제도하에서는 국가재정법 등 법에서 정한 제약들이 예산에 대해 적용되는데, 예산이 법의 하위규범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제약을 비켜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국가채무, 세계잉여금의 처리 등에 대한 제약이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고, 예산편성과 결정 과정에서는 그러한 제약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서 이와 같이 제약하더라도,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 예산이 세출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정하는 법이 우선된다는 원칙 하에 매년의 세출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국가재정법에 우선된다¹³⁾. 실제로 미국에서는 실패로 끝난 1990년의 예산강제법(Budget Enforcement Act)하에서 PAYGO 제도를 통하여 세입과 의무지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중기적으로 재정 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요 제도를 제·개정하는 법안에서 당해 법안에는 PAYGO 적용을 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합법적이기는 하나 본래의 PAYGO 취지에는 어긋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예산법률주의하에서 국가재정법이나 PAYGO 등 예산운영을 통제하는 법에 세출법이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서, 궁극적으로는 법에 의한 예산운영 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 맺음말

최근의 개헌 및 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서 예산법률주의가 자주 거론되었다. 많은 경우에 예산법률주의 도입은 다른 재정제도 개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설명되었으며, 특히 예산과정에서의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주요 국가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예산법률주의가 자동

13) 프랑스의 국가재정법(예산조직법)은 다른 일반 법률의 상위법으로 헌법에서 정하여 이러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 간에는 나중의 법이 우선된다.

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정 유형의 예산제도나 절차를 의미하는 것처럼 설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를 통해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살펴본 결과, 나라마다 예산법률주의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있는 모습이 서로 매우 다르고 어느 한 가지 주된 성향을 발견하기도 어려웠다. 즉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근의 일부 논의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서 이에 따라 예산제도의 다른 부분도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논의에서 제시하는 예산제도는 대부분 사실 미국식 예산제도 한 가지 사례에만 근거한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부연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식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미국과 예산제도가 매우 다르면서도 예산법률주의를 따르는 다른 주요국의 사례를 우리가 상기한다면 예산법률주의 도입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이슈라고 판단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예산법률주의를 우리가 도입하는 경우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예산법률주의 예산제도를 우리가 거의 백지 상태에서 고안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방하거나 참조하여 도입하기 좋은 어떤 대표적 유형의 예산법률주의 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 이에 따라 예산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즉 예산제도의 변화가 다분히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종속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산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예산법률주의하에서 어떻게 법으로 그런 예산제도를 확립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다. 이것이 외국의 다양한 예산법률주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다.

〈참고 문헌〉

- 미국 및 일부 OECD 주요국 헌법, 예산제도법, 세출법
정재황·한동훈,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 예산제도』, 정책분석 09-06, 2009.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요약본)』, 2009.
OECD, *The Legal Framework for Budget System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ECD Journal on Budgeting* V4.N3, Special Issue, 2004.
Schick, Allen, *The Federal Budget: Politics, Policy, Process*, 3rd edi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2.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고찰*

가. 위기의 배경

- 2008년 9월 이후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를 경험중
 - IMF의 추정에 따르면 G20 선진국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2007년 GDP 대비 1.9%에서 2009년 9.7%로 무려 8%p나 악화되고, 5년 후인 2014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5.3%에 달할 전망
 - 이러한 선진국들의 급격한 재정악화는 주로 경기악화 및 자산가격·금융산업이익 급락에 따른 세입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재정부문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수지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 세계 3대 경제권의 재정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적자 3%, 국가채무비율 60% 상한”이라는 EU의 재정준칙으로 인해 EU국가 전체로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금번 위기로 인한 재정악화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
 - 그러나 27개 EU국가들 간에 재정여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그리스의 경우 2010년 재정적자/GDP는 4번째(12.2%), 국가채무비율은 1번째(124.9%)
- 지난해부터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소규모 유럽국가들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
 - 2010년 2월 현재 27개 EU회원국들 중 무려 18개국이 EU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상한을 준수하지 못해 2009년중 EU집행부의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이때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 2009년 4월 27일 시정조치 결정 4개 국가: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프랑스
 - 2009년 7월 7일 시정조치 결정 5개 국가: 라트비아, 말타,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eklee@kipf.re.kr)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폴란드

- 2009년 12월 2일 시정조치 결정 9개 국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체코, 벨기에, 오스트리아

○ 특히 2009년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13%에 달하고 재정적자도 GDP 대비 12.7%

- 16개 유로존 국가 평균 : 재정수지 $\Delta 6.4\%$, 국가부채비율 78.2%

구분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재정수지(GDP 대비)	$\Delta 9.3\%$	$\Delta 5.3\%$	$\Delta 12.5\%$	$\Delta 12.7\%$	$\Delta 11.4\%$
국가부채(GDP 대비)	77.4%	114.6%	65.8%	112.6%	54.3%

○ 국가의 대외신용도(국채의 부도 가능성)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s premium, CDS¹⁴⁾)이 그리스 등 PIIGS 국가들에서 급격하게 증가

○ 이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로화의 평가절하 등을 초래하는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

□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고질적인 문제로서 지난 10년 이상 계속되었고 2001년 유로 가입 당시에도 공공부채가 GDP 대비 100%에 이르는 등 다른 회원국의 우려가 있었음

○ 2001년 유로에 가입하자 그리스 채권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의 평가절하(devaluation)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그 결과 부채 refinancing이 용이해짐

- 유로존 가입 후 하락한 금리 덕분에 GDP 대비 순이자비용이 6.5%p나 감소하였음
- 이러한 금융시장 호황을 바탕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저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그리스의 장기차입이 용이해짐
- 또한 낮은 금리는 과소비를 조장하여 200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에 달함(소비 주도 경제성장)

14) CDS는 채무자의 신용위험만을 별도로 분리해 시장에서 사고파는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수수료(프리미엄)를 지급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품. 채권자의 부도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상승(국가의 대외신용도 즉, 국채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냄)

- 그 결과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채가 감소하였다기보다는 경제성장률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보다 컸기 때문
 - 반면,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유로존의 보호하에서 재정상황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유로 가입 이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3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됨
 - 다행히 이러한 재정적자가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그리스의 물가상승률은 유로존 평균치를 상회하면서 그리스의 가격경쟁력 상실
 - 그러나 해외 차입금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2008년 GDP 대비 14.8%까지 증가
 -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정상황이 지금처럼 악화되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임
 -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부도로부터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 시에도 그리스는 유로 회원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시장에서 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하였음 (재정적자 GDP 대비 5%로 발표)
- 그러나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의 정부부채 규모가 큰데, 유독 PIIGS 국가들의 재정부실이 sovereign risk(국가채무 불이행)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문제가 되는 원인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
- 해외언론(Washington Post, 2010.2.6)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PIIGS 국가들이 모두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긴축재정정책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금융시장에서 이를 신뢰하지 않음
 -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문화일보, 2010-2-8) PIIGS 정부의 노력에 대한 confidence가 없기 때문 (Independent, 2010-2-6)
 - 그리스는 위기 이전인 2007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95.6%로 이탈리아(103.5%)에 이어 두번째로 컸으며, 재정적자 규모도 GDP 대비 3.7%로 헝가리(5.0%)에 이어 두번째로 재정규율이 매우 약한 국가

- 2010년 2월 7일, 그리스 재무장관은 긴축정책의 철저한 시행으로 재정적자를 2012년까지 3% 미만으로 감축하고, 이미 공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부의 긴축정책(공공부문 임금삭감, 세제개혁안 등)에 대해 노조의 거센 반발이 나타남에 따라 국제금융계에서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 표명
- 포르투갈 또한 재정긴축법안을 부결시키고 Azores와 Madeira island 자치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법안 통과
-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부채수준이 낮지만, 실업률이 높고 은행들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며, 역시 공공부문 노조에서 공공부문 지출 삭감을 반대하는 시위 결성
- 아일랜드만이 긴축재정정책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음

나. 그리스의 재정 현황 및 전망

- 그리스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누적되어 재정부실이 심화되어 왔고,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음

〈표 1-Ⅱ-1〉 그리스의 재정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질 GDP 성장률	4.6	2.2	4.5	4.5	2.0	-2.0	-0.3 ^f	-0.5 ^f
재정수지 적자 (% of GDP)	7.5	5.2	3.6	5.1	7.7	13.6	-	-
국가채무 (% of GDP)	98.6	100	97.8	95.7	99.2	115.1	-	-

주: f는 전망치

자료: Eurostat

- 2010년 5월 EC가 발표한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에 따르면 2010년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보다 다소 낮아진 9.3% 수준으로 예상, 그리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통해 GDP 대비 13.6%까지 치솟은 재정적자를 8.1%까지 줄이겠다고 발표

SECTION 1 >>

○ 2009년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3.6%인데 2010년 재정수입 증대 및 재정지출 감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5.5%p 줄여 GDP 대비 8.1%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 국가채무의 경우 그리스 재무부는 2010년 GDP의 133%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EC는 GDP의 124.9% 정도 예상

〈표 1-Ⅱ-2〉 그리스 GDP 및 재정 전망

	그리스 정부 (May.2010)		European Commission (May.2010)		OECD (May.2010)		IMF (May.2010)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실질 GDP 성장률	-4.0	-2.6	-3.0	-0.5	-3.7	-2.5	-4.0	-2.6
재정수지 적자 (% of GDP)	8.1	7.6	9.3 ¹⁾	9.9 ¹⁾	8.1 ²⁾	7.1 ²⁾	8.4	7.1
국가채무 (% of GDP)	133 ³⁾	145 ³⁾	124.9 ¹⁾	133.9 ¹⁾	-	-	133 ³⁾	145 ³⁾

주: General Government(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Social Security funds) 기준

1) Under the no-policy-change assumption and on the back of the discontinuation of one-off measures in 2010

2) National accounts basis

3) National Statistical Service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Bank of Greece; and IMF staff estimates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Greece) (2010.5), Hellenic SGP Newsletter

EC (2009.5),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10

OECD (2010.5), Economic Outlook No. 87.

IMF (2010.5), Country Report No. 10/110

□ 그리스의 2010년과 201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비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

○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10」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EU 전체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7.2%, 6.5% 정도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9.6%, 83.8% 정도로 예상

○ 유로존의 경우는 2010년과 2011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6.9%, 6.5% 정도로 예상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4%, 88.2% 정도로 예상

〈표 1-Ⅱ-3〉 그리스 및 EU의 경제 및 재정전망

	Greece		EU		Euro Area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실질 GDP 성장률	-3.0	-0.5	1.0	1.7	0.9	1.5
재정수지 적자 (% of GDP)	9.3	9.9 ¹⁾	7.2 ¹⁾	6.5 ¹⁾	6.6 ¹⁾	6.1 ¹⁾
국가채무 (% of GDP)	124.9	133.9	79.6	83.8	84.7	88.5

주: General Government(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Social Security funds) 기준

1) Under the no-policy change assumption and on the back of the discontinuation of one-off measures in 2010

자료: EC,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10(2010. 5)

- 이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제104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각종 제재 조치 시행)를 벗어나는 수준
- 또한 그리스는 올해 530억유로 규모(GDP의 약 20%)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며, 그 중 200억유로 정도의 국채 만기가 4~5월에 집중되어 있음
 -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자금 조달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대규모 국채의 상환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자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 확산

다. 그리스 재정위기 이슈화 과정 및 그리스 정부의 대응

- 그리스의 재정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 10월 총선 이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 재정적자 통계를 대폭 상향조정(GDP 대비 5%→12.7%)한 것으로부터 발단
 - 2008년 재정적자 통계를 현저한 폭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던 비용을 포함했기 때문
 -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는 비교적 적었으나(세입 감소는 1%에 불과) 소비가 대폭 하락하여 부가세 등 기존의 주 세입원이 크게 감소

SECTION 1 >>

- 2009년 12월, 3개의 주요 신용평가기관 중 Fitch와 S&P에서 그리스 채권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추가 하향조정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
 - 이로 인해 이미 그리스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던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당시 두바이 경제위기가 터지자 sovereign risk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었음
 - 그 결과 그리스 채권 스프레드가 더욱 확장됨

- 2009년 12월 중순, 그리스 정부는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시하며 그리스 재정위기
에 대한 우려 확산을 방지하려 하였으나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수확대, 탈세방지, 공공부문 지출삭감 등을 제시하였으나 재정적자 규모에 비해 그 폭이 작고,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여짐
 - 아일랜드는 공무원의 임금삭감, 연금개혁 등 대대적인 지출삭감에 착수하여 보다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의지를 보임
 - 반면 그리스 재무장관 George Papacostantinou는 그리스의 공공부문은 지나치게 높은 임금보다는 과대한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고용감소와 임금삭감 노력을 동시에 병행하겠다고 천명
 - 그러나 이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보다 가시적이고 대대적인 지출통제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

- 2010년 1월 15일, EU에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보고서
제출
 - 정부지출을 2009년 GDP 대비 52%에서 2013년 47.3% 수준까지 줄이고, 정부수입은 2009년 GDP 대비 39.3% 수준이었던 것을 2013년 45.3%까지 증대하여 재정수지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
 - 우선 2010년도 말까지 2009년 말 GDP 대비 12.7% 수준이던 재정수지 적자를 4%p 낮춘 GDP 대비 8.7% 달성을 목표로 함

〈표 1-Ⅱ-4〉 그리스 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목표

	2010	2011	2012	2013
재정수지 적자 (% of GDP)	8.7%	5.6%	2.8%	2%
국가채무 (% of GDP)	120.4%	120.6%	117.7%	113.4%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Greece), The Hellenic Stability and Growth Programme, 2010. 1.

-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 마련 및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설계, 예산 과정의 개혁, 공공부문 지출 감축에 중점을 둔 정부지출 개혁, 탈세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 안 마련 등 경제·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 제시
-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보장 부문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그리스 정부는 OECD 30개국 중 가장 관대하고 방만한 연금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천명
- 2010년 1월 25일, 그리스 80억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
-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7%까지 상승(2009년 통계)하고 채권시장이 불안해지자, 2010년 2월, 그리스 정부는 세금인상 및 공공부문 임금동결 연장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
- 2010년 2월 3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 승인
 - stability programme에서 그리스 정부가 밝힌 2012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감축 방안 승인
 - 그리스 정부가 감축안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
- 2010년 2월 9일, 그리스 정부 공공부문 임금 및 세제 개편안 발표

SECTION 1 >>

- 2010년 2월 11일,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금융지원에 원칙적 합의
 - 지원방식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지원주체 및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 2010년 3월 3일,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8.7%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48억유로 추가 긴축안 발표
 - 3월 3일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안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기 집행적 성격의 수단으로 이를 통해 올해 목표의 절반 수준인 48억유로(GDP의 2% 수준) 재정적자 감축 기대
 - 재정수입 증대 조치: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담배세 인상 등을 통해 24억유로(GDP 대비 1% 규모)의 재정수입 증대
 - 재정지출 감축 조치: 공공부문의 임금 및 연금, 공공투자, 교육지출 등을 줄여 24억유로(GDP 대비 1% 규모)의 재정지출 감축
 -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을 5월 중순까지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

〈표 1-Ⅱ-5〉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안(2010.03.03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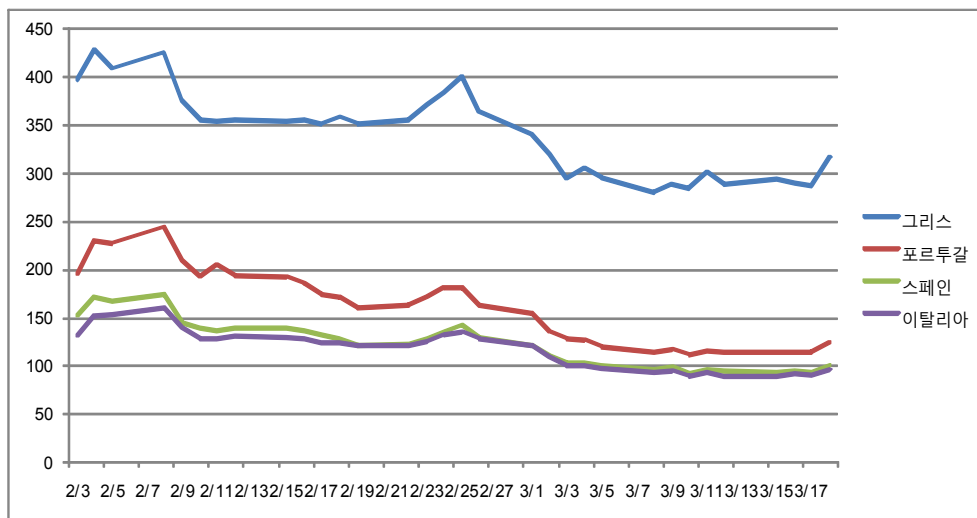
수입/지출	항목	규모(GDP 대비 비율)
재정수입(revenue) : 24억유로 증대	부가가치세(4.5%, 9%, 19% → 5%, 10%, 21%)	13억유로(0.54%)
	소비세 - 휘발유세 - 디젤 연료세 - 담배세 2%p 세율 인상(63%→65%) - 주세 인상(20%) - 사치품 과세 등	11억유로(0.46%) 8,000유로 3,000유로
재정지출(expenditure) : 24억유로 감축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감축 - 보너스 감축 - 공기업 임금 삭감 - 연금 지출 동결	17억유로(0.7%)
	공공부문 경성, 자본지출 감축 - 공공투자(5억유로) - 교육지출(2억유로)	7억유로(0.3%)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Greece) 보도자료

□ 2010년 3월 4일, 그리스 50억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

□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긴축안을 발표하고 국채발행에 성공하자 CDS 프리미엄이 점차 안정화 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Ⅱ-1]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 추이



주: CDS 5yr 기준, 단위: bp(뉴욕 가격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Financial Market Daily(원자료: Bloomberg)

□ 2010년 3월 25~26일, EU 정상회의 및 4월 11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이 IMF와 유로존이 그리스에 공동지원하는 안에 대해 합의 (03.25~03.26)
- 유로존 회원국 16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에 300억유로 차관 제공 및 IMF에 150억유로 요청에 합의(04.11)

□ 2010년 4월 15일, 그리스 정부가 EU, ECB, IMF에 다년도 경제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서한 발송

- 그리스 정부의 EU와 IMF에 대한 사실상의 구제요청
- EU는 5% 금리로 300억유로 지원, IMF는 2.7% 금리로 100억~150억유로 지원 예상

SECTION 1 >>

- 2010년 4월, 그리스의 재정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자 주요 신용평가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 4월 27일에는 S&P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정크본드)으로 강등시키면서 위기우려 확산, EU와 IMF로부터의 조속한 금융지원이 논의되고 있음

〈표 1-Ⅱ-6〉 국제신용평가사에 의한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평가(2010.04.27. 현재)

	Fitch	Moody's	S&P
국가신용등급 (발표일)	A- (2009. 10. 22)	A1	A- (2009. 1. 14)
	BBB+ (2009. 12. 8)	A2 (2009. 12. 22)	BBB+ (2009.12.16)
	BBB- (2010. 4. 9)	A3 (2010. 4. 22)	BBB+ (2010. 3. 16)
			BB+ (2010. 4. 27)
전망(Outlook)	Negative	Negative	Negative

자료: 국제금융센터(<http://www.kcif.or.kr/>)

- 2010년 5월 3일, EU와 IMF는 그리스 구제금융 패키지로 향후 3년간 총 1,100억유로(약 158조원) 투입 결정
 - 유로존 국가들은 5%의 이자율로 800억유로(약 115조원)를 지원하고 IMF는 300억유로(약 42조원) 지원
 - IMF는 지난 5월 12일, 그리스 정부에 1차 지원금 55억유로(약 7조 9,000억원) 지급
 - 유로존 회원국 중 10개 국가들은 지난 5월 18일, 그리스 정부에 1차 지원금 145억유로(약 21조원) 지급. 독일이 44억유로, 프랑스가 33억유로, 이탈리아가 29억유로 지원
 -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의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토대로 오는 9월과 12월에 2차 및 3차 지원금(각각 90억유로 규모)을 제공할 예정
 - 이는 구제금융 규모로 사상 최대이자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회원국에 대한 첫 구제금융에 해당

- 그리스는 EU와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EU 기준인 GDP 대비 3% 미만(약 300억유로)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에 합의
 - 이 프로그램은 향후 3년간 공공부문 임금삭감, 연금동결, 부가가치세 21%에서 23%로 인상, 연료/주류/담배세 10%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지난 6일 의회를 통과
 - 이 프로그램은 또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를 2010년 8.1%, 2011년 7.6%, 2012년 6.5%, 2013년 4.9%, 2014년 2.6%로 낮춘다는 목표를 담고 있음

라. 그리스 재정위기가 문제되는 이유

-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결국 국가부도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연쇄적으로 확산될 경우 단일통화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음
 - 그리스 위기가 지속되면서 2010년 4월 27일, S&P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정크본드, BBB⁻→BB⁺)으로 강등하고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도 A⁺에서 A⁻로 두 단계 하향조정하였음
 - 곧이어 4월 28일, 스페인의 신용등급도 AA⁺에서 AA로 한단계 낮아져 유로권 전체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PIIGS 국가들 중 재정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경제 규모를 모두 합치더라도 유로존 GDP의 6%에 불과하지만, 스페인을 포함할 경우 20%에 달함
 - EU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PIIGS 국가에 대한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편이어서 PIIGS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처할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됨 (WSJ, 2010.03.15)
 - EU에서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그리스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는 각 국가들의 국내 정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

SECTION 1 >>

– 독일의 경우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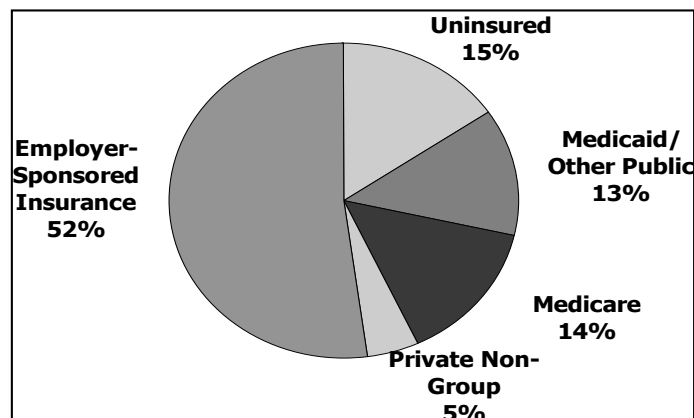
□ 유로화 가치 하락은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Washington Post, 2010.03.05)

3.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가.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배경

- 현재 미국 국민의 의료보험은 민간의료보험 60%, 공공의료보험 25%, 그리고 무보험 15%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Ⅱ-1] 참조).
-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이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80% 이상)은 직장을 통해 제공받음
 -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고용주들은 비임금 혜택의 일환으로 프리미엄의 73~84%를 부담하고 나머지 16~27%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식
 - 민간의료보험은 관리의료(managed care)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민간보험회사(HMO)가 병원 혹은 의사와 계약을 맺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HMO에 가입된 환자는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의료공급자에게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 HMO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내용을 선택하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을 꾀할 수 있음
 - 이러한 관리의료제도는 1970년대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감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 활성화되었음

[그림 1-Ⅱ-2] 미국의 건강보험제도(2008)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eklee@kipf.re.kr)

SECTION 1 >>

- 전체 인구의 25%에게 제공되는 공공의료보험은 크게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로 나눌 수 있음
 - 메디케어는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에 해당
 - 이밖에도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기에는 소득이 높지만 중산층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SCHIP, 현역 및 퇴직 군인들을 위한 military health benefits, 인디언들을 위한 Indian health service, 주 자치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공공보험이 존재함
- 미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500만명은 어떤 종류의 의료보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상태도 불량함
 - 무보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실직자나 영세기업 근로자처럼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제공받을 수 없거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은 청장년 남자, 그리고 이민자들이 대부분
 - 무보험자들은 막대한 의료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므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약품 구입, 예방의학 이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름
- 현재 미국의 의료제도에서는 민간부분이 main player이고 공공부분의 의료보장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료 형평성이 낮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unaffordable, unsustainable, and inequitable)
 - OECD Health Data에서 제시하는 미국의 1인당 연간 의료비지출은 2007년 7,290달러로서 OECD 평균인 2,984달러의 2.5배에 달함 (그림 1-Ⅱ-2 참조)
 - 시계열적 측면에서 보면 그 크기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인당 의료비지출은 1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그림 1-Ⅱ-3 참조)
 - 또한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역시 OECD 평균 8.9%에 비해 미국은 16%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 (그림 1-Ⅱ-4 참조)
 - 이렇듯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OECD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데 반해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오히려 떨어짐
 - 평균 기대수명은 미국이 2007년 기준 78.1세로 의료비 지출이 미국의 절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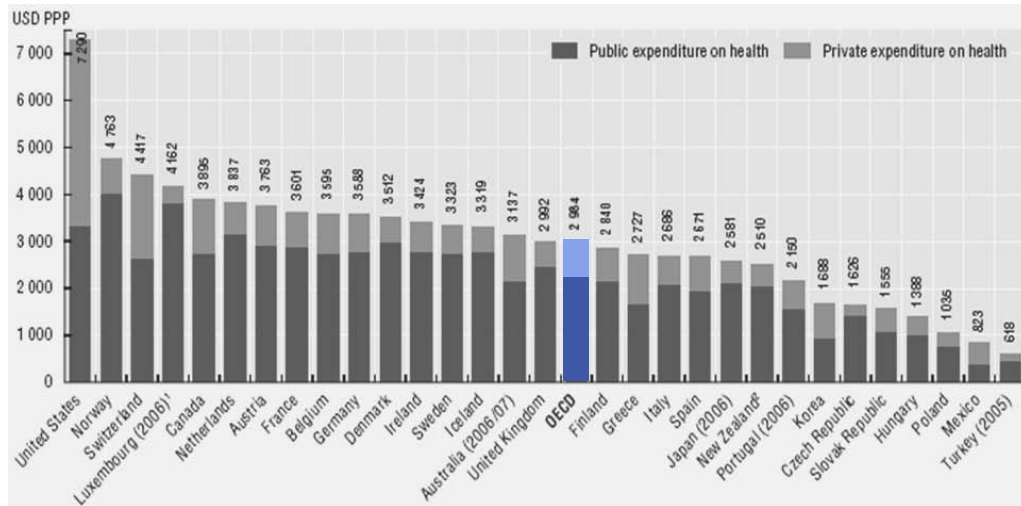
- 인 일본의 평균 기대수명 82.6세에 비해 4.5세나 낮은 수치 (그림 1-Ⅱ-5 참조)
- 영아사망률의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는 하나 미국은 캐나다 및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그림 1-Ⅱ-6 참조)
- 의료비와 건강수준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그림 1-Ⅱ-7]은 미국 의료시스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적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줌

나.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역사

- 미국은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100년간 의료보험 개혁을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음
 - 미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은 1912년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부터 1993년 클린턴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시도되었음
 - 그러나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사회 분위기, 이익집단(의사협회,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의 반대 및 정당 간 분열(민주당 vs 공화당, 보수 vs 진보) 등으로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함 (<표 1-Ⅱ-1> 참조)
 - 1993년 클린턴 정부는 규제화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당정 간 분열, 이익집단의 로비, 행정 절차의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됨
-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이 증가하고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자 자연스럽게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정당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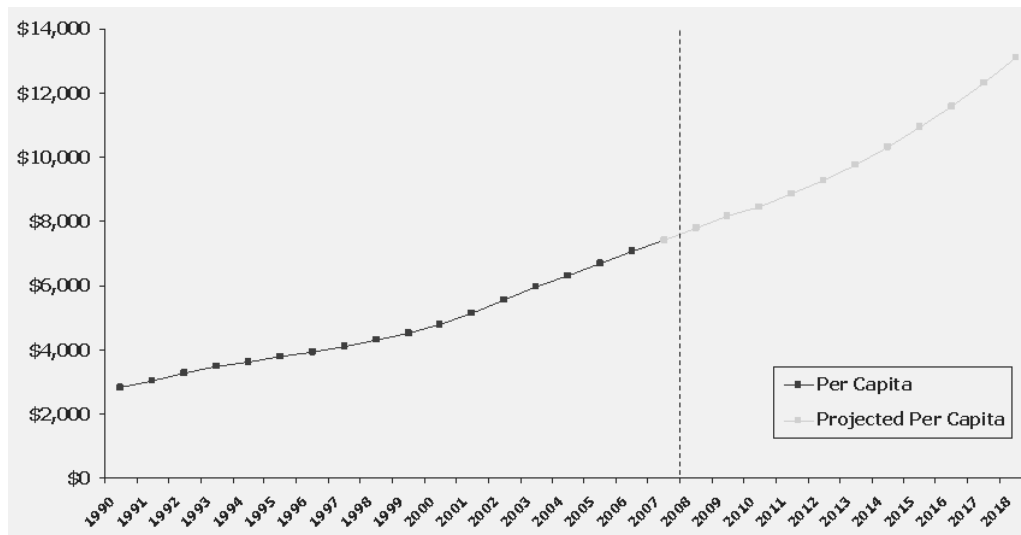
SECTION 1 >>

[그림 1-Ⅱ-3]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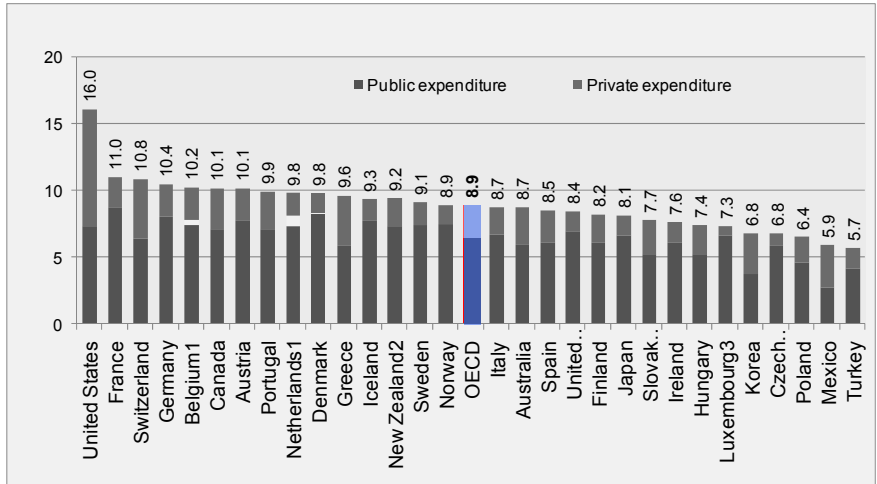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2009

[그림 1-Ⅱ-6] 미국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 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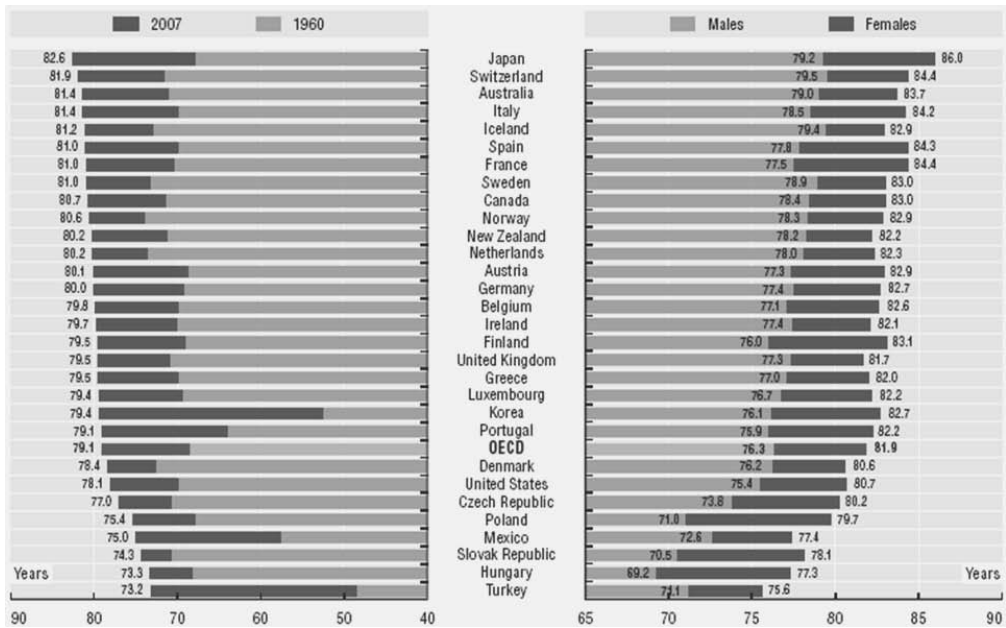
출처: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KAISER(2009)에서 재인용

[그림 1-Ⅱ-7]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출처: OECD Health,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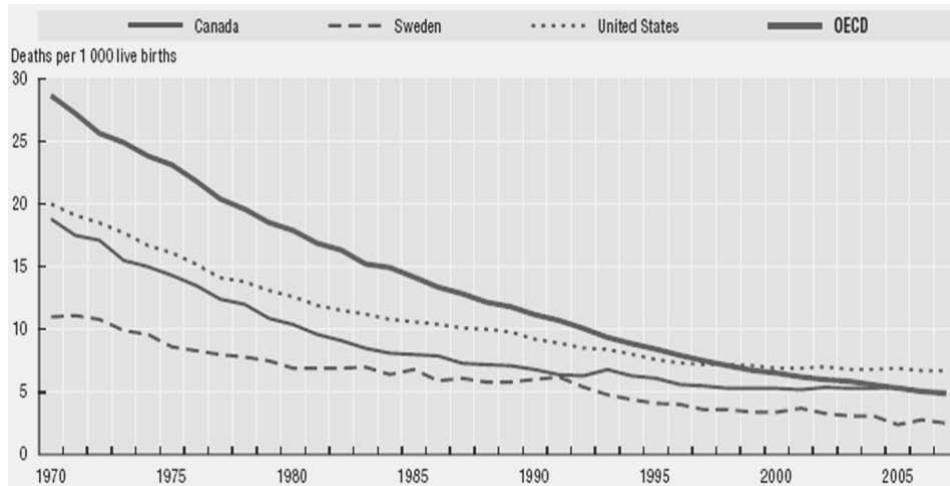
[그림 1-Ⅱ-9] 평균 기대수명



출처: OECD Health,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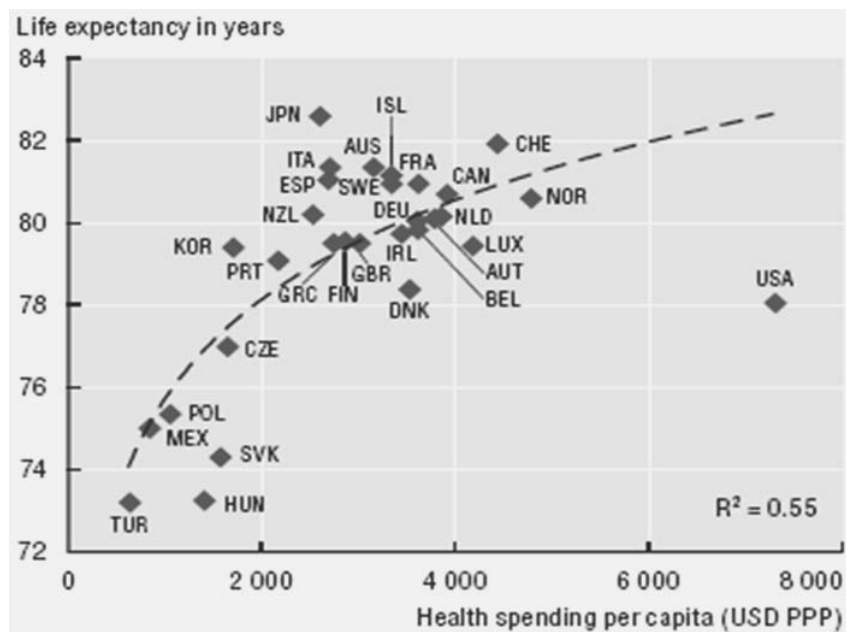
SECTION 1 >>

[그림 1-Ⅱ-7] 영아사망률



출처: OECD Health, 2009

[그림 1-Ⅱ-8] 의료비 지출과 평균 기대수명



출처: OECD Health, 2009

〈표 1-Ⅱ-7〉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역사(1912~현재)

일자	내 용
1912.	루즈벨트 당시 공화당 후보가 사회보험과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민주당 후보였던 우드로 윌슨 당선
1935.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의회 통과. 그러나 노령, 실업, 유족 연금만 보험 적용되고 논의되었던 전 국민 건강보험은 전미 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
1945.	트루만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병원건축 확대, 의사와 간호사 공급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나 역시 의사협회의 반대 등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
1962.	케네디 대통령은 노인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Medicare 도입 추진, 그러나 전미 의사협회의 반발로 무산
1965.7.31	린던 존슨 대통령이 Medicare와 Medicaid 법안에 사인
1971.	닉슨 대통령은 직장에서 최소한의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등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제안.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실현되지 못함
1976.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고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확대 실시 제안. 케네디 상원의원도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주장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함
1993.	클린턴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개혁안 마련 (managed competition): 정부는 직장과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민간보험회사들이 정부의 규제화된 시장에서 경쟁을 하도록 함.
1994.	클린턴 정부의 Health Security Act가 의회에서 부결 (당정 간 분열, 이익집단의 로비(의사, 제약회사, 보험회사, 자영자의 반대), 호전적 밀실행정, 의회의 관심 분열, 미디어 의사전달 체계의 문제 등)
1997.	S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공공보험 혜택을 확대 실시
2003.10.	부시 정부는 Medicare에 처방약 구입비용을 포함시키는 법안(Medicare Modernization Act) 통과
2006.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민 모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법안 통과
2007.	캘리포니아에서도 주 차원에서 건강보험 확대 실시를 제안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함
2008. 11.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움
2009.	오바마 대통령이 SCHIP 재승인
2009.11.7.	건강보험 개혁안 하원 통과 (찬성:반대=220:215)
2009.12.24.	건강보험 개혁안 상원 통과 (찬성:반대=60:39): 민주당 58표와 민주당에 우호적인 independent 2표 획득. 공화당은 전원 반대
2010.1.19.	건강보험 개혁안 추진에 장애 발생: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Scott Brown) 당선, 공화당이 41석을 확보하면서 합법적인 의사결정 방해권인 filibuster 발동 가능
2010.2.22.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발표: 상원안과 매우 흡사하나 하원안의 주요사항 포함

<표 1-II-7>의 계속

일자	내 용
2010.2.25.	오바마 대통령이 양당 위원들을 소집해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토론 개최. 그러나 양당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음: 공화당은 현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했고, 민주당은 Reconciliation Rule(단순 과반수 이상 찬성시 법안 통과)을 적용해서라도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천명
2010.3.21.	하원에서 상원안(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통과 (219 vs. 212, 공화당 전원 반대),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 하원에서 상원안에 대한 수정안 ¹⁾ (the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HCERA 2010) 통과. 상원에 송부.
2010.3.23.	오바마 대통령이 PPACA를 법안으로 사인 (P.L. 111-148)
2010.3.25.	상원에서 HCERA 2010 통과(56 vs. 43)시키되 교육 관련 2가지 수정 제안. 하원에서 수정안 통과 (220 vs. 207).
2010.3.30.	오바마 대통령이 HCERA 2010를 법안으로 사인(P.L. 111-152)하여 P.L. 111-148 개정

주: 1) 상하원에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들에 대한 대출시스템 개혁을 담음

출처: <http://healthreform.kfi.org/>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09/07/19/us/politics/20090717_HEALTH_TIMELINE.html

-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2009년말까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개혁안을 제시하고 통과시켰음
-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은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2009년 12월 24일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반영한 수정안)를 법으로 사인
 - 하원에서 219 : 212(공화당 전원과 민주당 34명 반대표)로 통과
-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건강보험개혁안은 1965년 통과된 사회보장법에서 공공보험(Medicare and Medicaid)을 제정한 이래 가장 획기적인 의료개혁임
- 내용상으로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과 클린턴 정부의 개혁안 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확대를 목표로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정부 개입을 증가시킴
 -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공화당과 보험회사의 반대 역

시 클린턴 정부의 건보 개혁 때와 비슷한 상황

- 그러나 전개 양상에 있어서 오바마 정권의 건강보험 개혁은 과거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
 - 클린턴 정부의 개혁안은 기존 제도를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수립 (revamping)하려 했다면 오바마 정부는 현존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한 보수작업 (retention-building) 시도
 - 두 정권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개입 정도인데, 클린턴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의료시스템 전체를 관리·감독하려 한 반면, 오바마 정부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려 함
 - 클린턴 정부는 보험회사 및 의사협회, 제약업자들의 반발을 야기했으나, 오바마 정부의 경우에는 보험료 및 보험상품 규제 이외에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여 의사협회나 제약업자의 지지를 얻어냄
 - 아울러 절차상에 있어서도 클린턴 정부는 힐러리를 수장으로 한 태스크 포스를 조직하는 등 행정부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 반면, 오바마 정부는 처음부터 의회가 개혁안을 만들고 개혁을 주도하도록 하여 진행 과정에서도 의회와 행정부의 절충이 가능하도록 함

다.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Obama Care) 내용

-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은 의료보험 수혜자 확대, 의료비용 증가 억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함¹⁵⁾
 -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보험 수혜자 확대
 -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 거주자는 반드시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함. 미구입 시 개인 및 50인 이상 고용 기업에 페널티 부과
 - 26세까지 부모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개인은 주별로 설립된 보험거래소(American Health Benefit Exchange)에서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영세기업은 별도의 거래소를 통해 보험 구입 가능

15) KAISER, Focus on Health Reform, Summary of New Health Reform Law, April 8, 2010

SECTION 1 >>

- 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판매를 거부할 수 없음
-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없는 개인이나 영세기업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지급
- 저소득층에 제공되었던 Medicaid를 빈곤선 133%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제공
-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공공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비용 증가 억제
 - 민간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함부로 인상할 수 없음. 프리미엄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함
 - 행정 간소화를 위해 금융 및 행정 거래 시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
 - Medicare 수가 지급 제도 개선, 관리 감독 강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감소 및 Medicaid 관련 지급금 감소
-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성과 향상을 추구
 - 임상 효율성에 대한 리서치 지원, 의료사고 감소 관련한 법안 개선을 위해 그랜트 지원
 -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수가를 연동하는 방안 검토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성
 - 예방의학, 기초진료, 체력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 장기요양(long-term care) 관련 지원 확대

〈표 1-Ⅱ-8〉 법안 내용: 2010~2019년

년도	Coverage	Taxes and Fees	Cost Contro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용주에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보조금 지급 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으로 인한 보험가입 거부 금지 자녀 26세까지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stay 가능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을 대비하여 최소 5년간 보험료를 적립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약회사 \$2.5billion annual fee(차기년도에 증가 예정) 	
2012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200,000 이상인 개인 혹은 \$250,000인 커플에 새로운 Medicare tax 부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1.45%에서 2.35%로 인상 불로소득(배당 및 이자소득)에 3.8%의 세금부과 의료기기 판매에 2.3%의 소비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Medicare pilot program 시행 - bundled payment for care: 서비스의 수보다 질에 대한 보상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의료보험을 제공받지 못한 개인이나 영세기업이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거래소(exchange) 설립. 보험회사는 기존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음 전 국민의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지급. 133%(400%) FPL 미만인 있는 사람들은 보험구입에 소득의 3%(9.5%) 이상 지출하지 않음 빈곤선 133% 미만의 모든 국민은 Medicaid에 가입 영세기업에 대한 보조금 인상: 10명 이하 고용하는 사업장과 연봉 \$25,000 미만인 사업체는 고용주 기여분 50%에 대해 세제혜택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면서 직장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피고용주가 보험을 사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 벌금 부과: 30명 이상 피고용인 1인당 \$3000 보험회사 \$8billion annual fee(차년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독립적인 Medicare board가 비용감축을 위한 제안을 제출 의무화
20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max(taxable income의 2.5%, \$695) 벌금 징수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험거래소에서 보험구입 가능(state 허가 필요)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가의 직장의료보험(개인보험 \$10,200 이상, 가족보험 \$27,500 이상)에 40% 소비세 부과 	
2019			

출처: WSJ, What's in the Bill? 2010.3.22.

라. 미국 건강보험 개혁과 재정부담

- 보험거래소 신설과 Medicaid 확대정책을 통해 2019년까지 32만명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향후 10년간 9,38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CBO 추정치)
-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세원 발굴(새로운 조세 및 수수료), 지출 감소(기존 공공보험의 낭비 감소)를 통해 재원조달을 계획하고 있음
 - 2010년
 - 비영리병원에 추가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시 연간 5만달러 세금 부과
 - 민간보험회사의 임직원 보상에 대한 세금공제는 1인당 50만달러로 제한
 - 실내 일광욕 서비스에 대해 10% 세금 부과
 - 비가공 연료에는 cellulosic biofuel producer credit 부여 제외
 - economic substance doctrine*의 지원자격을 명확화하고 economic substance가 결여된 거래에 해당하는 underpayment에는 페널티 증가
 - * 법원은 경제적 내용이 결여된 조세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음
 - 2011년
 -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간단한 의약품(over-the-counter drug) 비용은 HRA나 health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를 통해 보상 혹은 감면받을 수 없음
 - HRS나 Archer MSA에서 차용된 금액을 승인된 의료지출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출 금액의 20%까지 세금 인상
 - 제약회사에 연회비 부과
 - 2013년
 - 변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에 대한 세금공제 기준선을 소득의 7.5%에서 10%로 인상
 - 고소득자(개인 20만달러, 부부 25만달러 이상)의 Medicare Part A(병원비 관련 보험) 소득세를 0.9%p 인상 (1.45% → 2.35%)
 - 고소득자의 불로소득에 대해 3.8% 과세
 - 의료비를 위한 FSA에 대한 적립금을 연간 2,500달러로 제한

- 과세대상 의료기구 판매시 2.3%의 소비세 부과
 - 퇴직자의 Medicare Part D 관련 약제품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주에 대한 세금감면 없음
 - 2014년: 보험산업에 수수료(fee) 부과
 - 2015년 이후: 고가의 의료보험(개인 10,200달러 이상, 가족 27,500달러 이상)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소비세 부과
- CBO에 따르면 2010~2019년까지 재정적자는 1,240억달러 감축될 전망
- 그 다음 10년 동안(2020~2029년)에는 재정적자 1조달러 감축 예상
- 그러나 재원조달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Medicare 관련 소비세 인상, 불로소득 과세, 고가 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세 부과)과 Medicare의 지출 감소 및 낭비 절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혁 단행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
- 공화당 및 건강보험개혁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논리는 재정에 대한 염려 때문
 - 전 CBO director인 Douglas Holtz-Eakin은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는 1,430억달러 감소가 아니라 5,62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

Ⅲ 국내외 보고서

1. 주요 보고서 요약*

가. IMF, Strategies for Fiscal Consolidation in the Post-Crisis World 2010.02.04

-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음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비슷한 상황)
- 선진국의 경우 재정 악화가 더욱 심각하고, 개도국의 재정상황에도 위협 요인이 존재
 -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위기 이전(2007년말) 73%에서 2014년말 109%로 크게 증가할 전망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들의 부채비율이 85%를 상회할 전망)
 - 개도국의 부채비율은 2013년까지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이는 위기중 재정악화와 성장률 둔화 폭이 작았고 위기 회복 직후부터 재정건전화 노력을 시작하였기 때문
 - 그러나 부채비율이 증가할 위험도 여전히 상존
- 재정 악화 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고 성장을 저해하여, 디폴트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 시장의 자신감이 감소하는 등 악순환을 가져오고 이는 주변 펀더멘털이 약한 개도국에 파급효과를 미침
 - 정부가 시장의 자신감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재정건전화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디폴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snowballing effect)
 - 이는 반드시 재정적자나 부채 수치가 높아서가 아니라도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안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eklee@kipf.re.kr)

- 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perception)만으로도 가능
- 따라서 신뢰 있는 전략수립 자체가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부채비율을 위기 이후의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부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성장률을 저해하는 debt overhang effect가 존재
 - 1인당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p 증가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2%p 감소
 - 부채비율을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경우, 향후 위기 발생시 재정정책 운용의 폭 감소
 - 따라서 2030년까지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60%, 개도국의 경우는 GDP 대비 40%까지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 체계적인 재정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부채비율을 명시하고 각 단계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제시
- 인플레이션을 이용한 부채 감축보다는 경제성장 등 기초 재정수지를 강화하는 것이 부채 감축의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을 부채 감축 전략으로 할 수 있음
 - 10년간 성장률을 1% 증가시키면 정부부채는 GDP 대비 29%p 감소함
 - 따라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구조개혁, 예를 들면 시장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의 세금 왜곡효과 제거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정건전화 전략은 보수적인 성장 전망에 바탕을 두어야 함
- 재정건전화 정책의 크기는 목표 부채비율, 이자율-성장률 차이, 건전성 회복속도에 대한 가정에 기반함
- 선진국은 구조적 재정수지 회복(2030년까지 부채비율 60% 달성)을 위해서 2011~2020년 GDP 대비 8%p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매년 3~4%p 조정을 의미함
 - 초기 부채비율 및 재정수지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조정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음

- 개도국의 경우 2030년까지 부채비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1~2020년까지 GDP 대비 2.5%p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선진국에서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 종료, 재정구조 개혁, 공공지출 감축, 연금 및 의료제도 개혁, 세원 증대 등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음
 - 경기부양책 종료는 기초 재정수지를 GDP 대비 1.5%p 향상시킴
 - 재정구조 개혁은 조세부담률과 고령화 속도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 공공지출 감축에 있어 투자보다는 지출(임금과 이전지출) 감소를 통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 정년 연장, 연금수령액 감축, 연금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연금개혁 및 의료부문 개혁을 통해 GDP 대비 비율을 4~5% 감축할 수 있음
 - 다른 부문 지출도 우선순위가 낮은 지출(예: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함
 - 근본적으로 세원 확보 역시 중요

- 재정건전화를 지지할 수 있는 예산 제도적 장치 필요
 -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현 재정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신뢰성 있는 보고자료 및 통계 발간 필요
 -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전략 개발: 투명한 중기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중기 예산계획을 마련하며 그 목표를 추진하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정당국 필요
 - 체계적인 top-down 예산절차를 통해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 예산편성 시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반영하고, 예산승인 시 의회에서 재정건전화 의지를 확인하며, 예산집행 시 재정운용의 규율과 신축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예산 제도 및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위험을 공지하는 보고를 정례화하고, 중기 재정목표를 발표하며, 예산편성 및 승인 시 재정건전화 정책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나. OECD, Preparing Fiscal Consolidation, 2010.03.22

-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세입 감소와 세출 증대, 각국 정부의 재량적 확장정책 운용으로 재정적자 및 부채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각국 확장재정정책의 규모나 구성은 다르지만 운영상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
 - 정부 소비 증가, 직접세 감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신설, 다양한 민간 수요 견인책 마련 (폐차 인센티브 제도*, 직접세 경감, 가구에 일시금 지급, 간접세 경감 및 주택 관련 세제혜택 부여)
 - * car scrappage incentive schemes: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영국, 독일, 스페인, 독일 등 유럽국가, 한국)
 - 경기불황과 그로 인한 확장재정정책 실시로 재정적자는 2010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구조적이며, 2011년 약간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기적으로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일본, 영국, 미국의 경우 GDP의 8% 수준)
 - 정부부채도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 2011년 일본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200%로 예상
 -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와 같이 정부부채 수준이 낮고 위기 이전 재정상황이 양호했던 국가들은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지출을 늘릴 여지가 남아 있음
 -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재정안정화 정책을 취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011년 재정적자가 GDP의 6%를 초과하는 국가의 경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반면, 한국과 같이 재정적자가 낮은 수준인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

SECTION 1 >>

	Financial balances ¹			Net financial liabilities ²			Gross financial liabilities ³		
	2007	2011	2017	2007	2011	2017	2007	2011	2017
No consolidation (budget deficit of less than 2½ per cent of GDP in 2011)									
Korea	4.7	1.1	1.2	-36	-33	-28	26	41	44
Three years of consolidation (fiscal consolidation of 3 percentage point of GDP from 2012)									
Canada	1.6	-4.5	0.6	23	36	30	65	89	83
Germany	0.2	-4.6	0.1	43	58	52	65	85	80
Italy	-1.5	-5.1	0.5	87	103	88	112	130	114
Six years of consolidation (fiscal consolidation of 6 percentage point of GDP from 2012)									
France	-2.7	-8.0	-0.3	34	67	72	70	99	104
United States	-2.8	-9.4	-3.6	42	72	87	62	100	114
Japan	-2.5	-9.5	-3.4	80	113	131	167	205	223
United Kingdom	-2.7	-12.5	-5.3	29	70	95	47	94	120
Euro area	-0.6	-6.2	0.2	43	63	61	71	93	92
Memorandum item:									
OECD	-1.3	-7.6	-1.9	39	64	73	73	104	113

- 더딘 경기회복으로 인해 2010년에 예정된 확장정책을 전면 실시하지만 2011년부터는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재정건전성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①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재정부담 가중, ② 부채수준이 높으면 경기불황시 재정정책 운용의 폭 감소, ③ 과잉 정부채권 발행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투자를 구축, ④ 채무상환을 위한 비용 증가가 잠재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임
 - 각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점과 속도는 경기상황, 통화정책 운용의 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재정건전화 정책이 2010년 중반까지 수립되어야 2011년 예산부터 반영 가능
 - 출구전략 수립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국가 간 출구전략의 공조도 필요함
 - 금융시장 및 가계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
 - 공공부문 효율성 증진과 연금, 의료 부문 등 의무지출에 대한 개혁 필요
 -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는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함
 - 세출 감소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출(교육, R&D, 기반시설)은 삭감하지 않아야 함

- 세입 증대에 있어서 성장률에 대한 왜곡효과가 가장 적은 수단을 채택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제하고 부동산 및 소비에 대한 세금 증가가 효과적임)

다. OECD,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Lessons for the Public Sector, 2010.03

- 각 국가들은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범위내에서 신뢰성 있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재정적자 감축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소비자, 기업,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금융시장에서 정부부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져 자금 차입이 용이하고, 따라서 투자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 다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정책 수단을 활용할 여유 확보
 - 대규모의 재정감축은 경기확장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로 덴마크(1983~86), 아일랜드(1987~89), 스웨덴(1996), 핀란드 등이 있음
- 대규모의 적자 감축안은 정부가 주도적이며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보다 프로그램 평가, 효율성 평가, 비용-편익 분석 등 훨씬 더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
 -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모든 프로그램 및 지출에 대한 리뷰가 필요
-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년도간 큰 폭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함
 - 재정건전화의 성공 여부는 적자감축 크기, 기간, 구성, 초기 재정상태, 조세 및 지출의 초기 수준에 달려 있음
 - 적자감축 폭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조세 증가보다는 지출 감소를 통해, 초기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조세와 지출 양면을 모두 포함할수록 재정건전화 성

공률이 높아짐

-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국가로는 캐나다(4년), 덴마크(4년), 스웨덴(7년), 핀란드(9년)가 있음
- 대규모 적자 감축을 단행한 국가로는 스웨덴(GDP의 17%), 덴마크(GDP의 13.5%), 그리스(GDP의 12%), 캐나다(GDP의 10%), 포르투갈(GDP의 8.5%)가 있음

□ 재정적자 감축안은 지출 감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출(정부 소비와 이전지출) 감소가 80%, 세금 증가가 20% 정도의 부담을 지는 것이 바람직함
-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인 이전지출이나 보조금을 감소해야 재정적자 감축안이 좀 더 신뢰성을 얻음
- 기타 방법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 정부내의 규제 철폐, 아웃소싱 등이 있음

□ 재정적자 감축의 타이밍이 중요

- 일반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효과적이지만, 때로는 반대세력 형성에 발미를 제공할 수도 있음
- 경기불황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경기호황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counter-cyclical한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하지만 경기침체를 핑계로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미루어서는 안됨
 - 재정건전화를 단행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경제위기가 재정적자 감축 계획안 수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음

□ 재정규율과 제도는 다년도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재정준칙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지출을 제한하는 명확한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다년도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경우 재정규율, 투명성, 책임성, 확실성 증가
 - 스웨덴의 경우, GDP의 2% 재정흑자라는 명확한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재정상황이 호전되었음

- 재정당국이 폭넓게 관여할수록 재정건전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확률이 증가
-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대한 투명성,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추진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함
 - 1990년대 캐나다의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전 3번의 실패를 겪었고,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도 지출 감축에 실패한 후 성공, 영국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감축안이 성공하기까지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였음
- 재정감축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 덴마크(1983~86)
 - 1980년대 초반 세계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결과 공공부채가 GDP 대비 29%에서 65%로 증가
 - 신용평가회사의 경고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강력한 재정건전화 프로그램 실행
 - 4년후 기초 재정수지는 GDP의 15%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감소, 실질 GDP도 연평균 3.6%씩 성장
 - 아일랜드(1982~84, 1986~89)
 - 1980년대 초반 재정상황 악화, 1981년 부채비율이 87%까지 증가
 - 첫 번째 재정건전화 정책 실패 후 더욱 강력한 건전화 프로그램 실행(지출 감축, 세원 확대), 통화의 평가절하를 병행하여 재정상황 개선
 - 뉴질랜드(1986~2001)
 - 1980년대 재정적자가 매년 GDP의 6%를 초과하며 부채가 계속 증가하자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 위기 의식 경험
 -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운영의 신축성(flexibility)을 증가시키며, 정부 규제 철폐(임금 및 가격통제), 지출 감소(GDP의 7%), 공공부문 인원삭감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72%에서 30%로 감축
 - 핀란드(1992~2000)
 - 금융위기를 겪고 재정적자가 GDP의 8%, 부채비율 58%에 달함
 - 유로 단일통화존에 가입 및 외부차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정당성 확보, 중기적 예산 프레임워크, entitlement 개혁, 지출 감소, 세제개혁 등을 단행

- 2000년까지 부채비율을 45% 이하로 낮추고 1992년 이후 기초 재정수지를 GDP의 10%만큼 향상시킴

○ 스페인(1993~97)

- 1980년대 후반 스페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5년까지 재정적자는 GDP의 7% 초과, 부채는 70% 초과
- 외부자금조달과 유로통화 가입을 위해 강력한 재정건전화 프로그램 도입, 지출 감소(사회이전지출, 임금, 의료비지출), 세제개혁 등을 통해 재정수지를 GDP의 4%만큼 개선

라.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논의 동향과 전망”(2010.02.09)

□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FY2010 재정수지 적자는 1.6조달러로 추정, 이는 GDP 대비 10.6%로 전후 가장 큰 수치
 - 재정적자는 2011~2020년 평균 4.5%를 기록할 전망이며,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 2009년말 연방정부 채무는 11.9조달러로 GDP 대비 83.4%에 달함
 - 국채발행액 증가와 금리상승으로 이자지급 부담도 함께 증가(2020년 GDP의 3.5%(재정지출의 14.7%)를 이자지급으로 사용)

□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음 네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FY2011부터 3년간 비국방 재량적 지출 동결
 - 경기부양책이나 의료개혁정책은 지출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음
 - 비국방 재량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하여 재정수지 적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따라서 비국방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에서도 예산을 동결하거나 재량적 재정지출

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주장 제기

- 감세조치 종결 및 금융기관에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세수 증대
 -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2010년말 종료, 항목별 소득공제 범위 제한, 자본이득 및 배당세율 15%→20%로 인상
 -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로 400억달러 추가 세입 확보
 - 금융기관 구제 프로그램인 TARP로 인한 손실 1,170억달러를 금융부문에서 부담 하도록 수수료 부과
- 재정적자 감축과 재정규율 강화를 권고하기 위한 예산위원회 신설 (2010년 1월 26일)
 - 세법개정, 사회보장 등 entitlement program의 지출 삭감 등에 대한 권고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 의회의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
- PAYGO 원칙의 부활

□ 전망과 시사점

-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수지 개선이 힘들어질 전망
 - 민간부문의 회복지연은 세수 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이어져 재정수지 적자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
 - 확대재정 또는 감세의 구체적 수단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 효과가 낮거나 일시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성장동력 수단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마. 삼성경제연구소 “영국 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2010.03.23)

-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영국의 재정상황 악화, 영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발 재정위기설 대두
 - 2010년 GDP 대비 영국의 재정적자는 12.9%, 정부부채는 80.6%로 위기 이전(재정적자 5%, 부채비율 52%)에 비해 급격히 증가

- 영국정부는 세입을 늘리고 세수를 줄여 최대한 재정적자를 축소할 계획이지만 EU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임금동결,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통해 FY2014-15까지 재정적자를 4.4%로 감축하겠다는 방침
 - 그러나 EU 집행위는 FY2014-15까지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줄일 것을 촉구
 - 영국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경우, 영국발 재정위기를 초래해 세계경제의 더블딥(Double-dip) 가능성 존재
 - 국가신인도 하락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경기회복을 지연시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영국발 재정위기설의 발생 원인
- 금융위기의 충격이 지속되면서 영국 경제가 다시 침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음
 - 2009년말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FY2010-11 긴축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대외경쟁력 약화, 민간소비 침체 등 경제회복에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임
 - 주택가격 상승률 및 거래량 감소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 증가
 - 금융부문에서는 은행부실이 지속되어 재정 부담으로 작용
 - 6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가 탄생할 경우 신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이는 파운드화 급락과 국채이자율 상승 등을 통해 다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 반복
 - 국채시장의 수급 불안
 - 재정적자 확대로 영국정부는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해외에서는 물론 영국 내에서도 영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
 - 국채수익률(국채발행 비용) 상승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남유럽 재정위기, FY2010-2011 예산안, 2010년 1사분기 경제성장률, 선거 등 영국 재

정위기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변수 존재

-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통해 재정위기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 국제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당장 국가부도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자국통화 사용)
- 재정건전성 회복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
- 영국의 재정위기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재정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영국의 저성장 기조와 민간소비 침체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기기 수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은 받을 것으로 예상

바. 삼성경제연구소, 국가채무의 재조명(2010.02.10.)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의 재정적자 심화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
 -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동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5년물) 급등, MSCI 선진국 및 신흥국의 주가지수 크게 하락
 - 전 세계 주요국의 재정적자 심화는 국가부도 위험 증대로 금융불안을 야기하거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향후 세계경제 흐름에 있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실증분석 결과 국가채무와 실질경제성장률은 국가채무/GDP 수준이 90% 이상일 경우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판명
 - 한국 역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국가신인도 저하' 및 '장기적인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대비 100조원이 증가한 407조원, 이는 2003년의 2.5배 수준

- 재정위기 위험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는 PIGS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 PIGS 국가의 국가채무는 2008~2010년간 연 8.6~33.1%로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부실화
 - 국가채무 급증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하면서 부채발행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충당해야 하므로 이들 국가들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확대
 - PIGS 국가의 2007~2009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5~13.3%, 재정적자는 3.9~6.4%로 EMS 위기¹⁶⁾ 당시의 경상수지 적자 2.6%, 재정흑자 0.01%보다 크게 악화되어 금융불안 가능성 증가
 - 그러나 2007~2009년 물가상승률은 연 1.4~2.8%로 EMS 위기 당시보다는 안정되어 있으며 실효환율도 연 0.7~2.4% 상승
 - 안전통화인 유로화를 통용하고 있으므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음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는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
 - 재정수지 악화로 국내채무를 상환할 세수가 부족하고 경상수지 악화로 대외채무를 상환할 외화 수입도 축소되어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
 - 특히 그리스의 경우 위기이전에도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상회하였으며 GDP 대비 대외채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그러나 EU집행위의 위기국가 정부채 보장, 집행위의 채권발행, 유럽투자은행 등을 통한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은 희박하나, 향후 국채수요 위축에 대응할 필요
 -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9~2010년 동안 연 15%로 증가하여 위기 이전인 2006~2007년 7.5%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고 정부부문 대외채무 상환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여 국가신인도 위험은 낮은 편
 - 그러나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국채의 실질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약화될 가능성 존재
 - 2007~2009년의 연평균 재정적자는 GDP의 2%로 2004~2006년의 재정수지 적자보

16) 1991년 ECU에 통화가치를 고정시켰던 핀란드가 평가절하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1992~1993년에 걸쳐 회원국 통화엔 연쇄적인 투기적 공격이 발생.

다 2배 이상 악화되었으며, 동 기간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9.4% 하락하여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OECD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 금융위기로 인해 확대된 재정적자를 방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채발행 및 상환부담 증가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
 -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의 국채 상환부담은 연평균 31.6% 증가할 전망
 - 2009년 79조 4,00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2011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40조 8,000억원의 국채 만기가 도래
 - 단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기초수지(이자지불을 제외한 재정수지) 흑자 확대가 필요
 - 기초수지를 연 8조 6,000억원 흑자로 유지해야 201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08년 수준(30.1%)으로 감축 가능
 - 향후 민간부문이 자생적으로 회복하지 않는 한, 기초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면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적자를 지속하면 재정수지 개선이 지연되는 딜레마에 봉착
 - 재정적자 기초를 방지할 경우 국가채무 누적이 가속화되어 성장이 저해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할 우려
 -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면 204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해 재정위기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이 10년 앞당겨 도래
 - 재정적자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2050년에 GDP의 91%에 이를 전망
- 국채 조기상환 확대와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해 금융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함
 - 2011~2014년 국채 만기 규모가 연평균 10조 2,000억원 증대하는 데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국고채 만기도래가 본격화되는 2013년 이후를 대비하여 국채 조기상환
 - 2010년 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737억달러로 충분하지만, 국제적 금융위기의 발생

SECTION 1 >>

할 경우 달러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고 재정적자 확대로 국가신인도가 악화될 경우 외환보유액의 여유분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높여 유사시 국채발행을 통해 외부충격 조절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함
 - 단기적으로 불황기에는 신속히 정부지출을 확대하되 평상시에는 흑자재정을 견지하고 채무를 상환
 - 확장적 재정정책의 생산증대 효과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마련하여 경기에 다른 재정의 신속한 조정을 제도화
- 재정규율 강화와 사회보험제도 개편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의 격차발생요인을 공개토록 하여 민간의 감시기능을 강화
 -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재정수지 악화요인을 배제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에 공헌한 '세원확보준칙'의 도입 검토)
 - 향후 재정지출 증대의 주요인인 공공연금 및 보건의료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고령자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입원진료 수요를 축소
- 연기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금융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국채 공급을 확대, 다변화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순기능을 극대화

2. 보고서 목록

가. 국제기구

□ IMF

1. The Outlook for Financing Japan's Public Debt, Working Paper No. 10/19 (January 1, 2010)
2. Public Debt Sustainability and Management in a Compound Option Framework, Working Paper No. 10/2 (January 1, 2010)
3.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 Policy-Driven, Multispeed Recovery (January 26, 2010)
4. Exiting from Crisis Intervention Policies, IMF policy paper (February 4, 2010)
5. Rethinking Macroeconomic Policy, Staff Position Note No. 2010/03 (February 12, 2010)
6. The U.S. Federal Debt Outlook: Reading the Tea Leaves, Working Paper No. 10/62(March 1, 2010)
7.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0)
8.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April 29, 2010)

□ OECD

1. The Automobile Industry in and beyond the Crisi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45 (Jan 2010)
2.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OECD WP No. 285 (Jan 2010)
3. Sub-Central Governments and the Economic Crisis: Impact and Policy Responses, OECD WP No. 752 (Feb 2010)
4.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Crisis and Exit Strateg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53 (Feb 2010)
5. Long-Term Growth and Policy Challenges in the Large Emerging Econom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55 (Mar 2010)

SECTION 1 >>

6. Economic Policy Reforms 2010: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Mar 2010)
7. Migration and Labour Market in OECD Countries, Vol 2010, No. 1 (2010)
8.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Apr 2010)
9. Labour Markets and the Crisis, OECD WP No. 756 (Apr 2010)
10. Advancing Structural Reforms in OECD Countries, OECD WP No. 757 (Apr 2010)
1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0, Vol. 2010, No. 4 (Apr 2010)

□ World Bank

1. The Effect of Fiscal Policies on the Quality of Growth, WB Brief No. 53855 (Jan 2010)
2. Citizen-centric governance indicators : measuring and monitoring governance by listening to the people and not the interest groups, WPS 5181 (Jan 2010)
3. Corruption and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 evidence from a global survey (Jan 2010)
4. Sponsoring a race to the top : the case for results-based intergovernmental finance for merit goods, WPS 5172 (Jan 2010)
5.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0: Crisis, Finance, and Growth, WB Publication No. 53098 (Jan 2010)
6.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10: Externa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Feb 2010)
7. Within-school tracking in south Korea : an analysis using Pisa 2003, WB WPS5266 (Apr 2010)
8. Rethinking multipliers in a globalized world, WPS5277 (Apr 2010)
9. Financial transactions tax: panacea, threat, or damp squib?, WB WPS5230 (Mar 2010)

□ ADB

1.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Quality and the Links with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Asia, WP No. 193 (Feb 2010)
2. The Ties that Bind Asia, Europe, and United States, ADB WP No. 192 (Feb 2010)
3. Development Effectiveness Review 2009 (Apr 2010)

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0: Macroeconomic Management Beyond the Crisis (Apr 2010)

□ EU

1. EU interim forecast: Fragile recovery in progress(February 25, 2010)
2. Quarterly report on the euro area(March 31, 2010)

나. 국내학회

□ 한국재정학회 (<http://kapf.or.kr>)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10.02.09)

1. 남·북 통일 대비를 위한 세제설계 방안 연구/유경문
2. 성장촉진지역 재정지원의 사각지대 - 통합시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이순배
3. 좋은 학교 찾기: 수능점수 분석을 통한 학교평가/김진영
4. 노동패널을 이용한 주관적 동등화 지수 추정/김진 · 송헌재
5. 투표참여의 경제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결정요인을 중심으로/윤성호 · 주만수
6.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from Geostationary Environmental Monitoring Satellite: Incorporating Payment Vehicle Effects/엄영숙 · 홍중호

『재정학 연구』 제3권 제1호(2010.02)

1. 재정정책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김현아 · 박상원
 2.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정준칙: 개념적 고찰/최광 · 이성규
 3.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공성 추정/주만수
 4. 정부지출 구조와 부채/신봉호
 5. 바우처와 현금지원: 보육료지원사업을 중심으로/최성은
 6. 지방세 신 세원 도입의 효율성 분석: 관광세를 중심으로/고태호, 임정현
- 정책세미나: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2010.03.05)

SECTION 1 >>

1.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 및 시사점/오진규
2. 녹색성장과 탄소세 도입방안/김승래
3. 우리나라의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의 이중배당 효과/임종수
4. 탄소세제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정책혼합/홍인기

2010년 춘계학술대회(2010.03.26)

1. Effects of Law and Social Networks on Trust: Are They Robust?/이동원
2. Analysis of Participation by Female Seniors in the Korean Job Creation Program for the Elderly/윤형호
3. 국제 대학 순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김진영
4. 수도요금 유인규제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논의/염명배
5. 공적연금자산에 대한 기대와 개인저축: 연금자산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이 대체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전승훈
6. 탄소세 도입이 산업별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김성태 · 임병인 · 강만옥
7. 재분배고려와 정책의 수용성/박상원
8. 확률적 투표이론이 조세정책에 주는 시사점/이성규 · 이영환
9. 확률적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세제개편 효과 분석/장인성
10.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김학수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방향/박종규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0년 동계학술대회 (2010년 2월)

1. East Asia in the Era of New Global Economic Order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정책 과제
3. 학회별 분과회의

□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4권 3호(2010년 1월)

1. DEA와 TIER분석을 활용한 지방재정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75개 시급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신유호
2.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지방재정지출의 영향/윤석완
3.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의식조사: 예산결정이론을 중심으로/전성훈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영향요인 분석: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중심으로/이현정, 정문기
5. 의존재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분석/배인명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부세 도입 방안: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신두섭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2010년 4월)

1. 기초자치단체 인건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조연상
2.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 변화와 재정전망/하능식 · 신두섭
3. 소도읍 육성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분석/이순배
4.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이효
5.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서정섭
6.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과 충청북도 대응방안/김덕준 · 김혜란 · 주운현
7.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설계 대안/오영민
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김홍환

□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경제학연구』 제58권 1호 (2010년 3월)

1.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강성진
2. 소비자의 탐색활동과 가격분산: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김대욱 · 김중호

3. 경기순환 국면별 통화정책 효과의 비대칭성/김기화
4. 혼합주기자료 VAR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월별 동태효과 분석/김운영
5. 우리나라 통화개혁의 비교 연구/배영목
6. 2007년 논의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안들에 대한 비교평가/이태정

다. 국내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재정포럼』

1.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김현아 (2010년 1월호)
2.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동향과 주요 쟁점/박노욱 (2010년 2월호)
3.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박명호 (2010년 3월호)

세미나 자료

1.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전병목 외 (2010년 3월)
2.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성과와 과제/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년 3월)
3. 제 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 방향/박서춘 외 (2010년 3월)

기타연구자료

1. KIPF 재정동향 (2010년 2월 창간호)
2. 2009년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4월)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예산분석 보고서

1.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0년 2월)
2. 2010-2015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2010년 2월)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2010년 2월)
4. 2009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2010년 3월)
5.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도입방안 연구 (2010년 3월)
6.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국회예산정책처 사례를 중심으로 (2010년 3월)
7.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 (2010년 3월)
8.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 (2010년 4월)
9. 쌀 변동직접지불금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2010년 4월)
10.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 (2010년 4월)

경제분석 보고서

1.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2010년 2월)
2.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4호 (2010년 2월)
3.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5호 (2010년 4월)
4.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 (2010년 4월)
5.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2010년 5월)

기타보고서

1.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0년 4월)

포럼/간담회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주요쟁점 (2010년 1월)

2. 전력수요관리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2010년 1월)
3. 해외자원개발전략: 패키지딜을 중심으로 (2010년 1월)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쟁점과 과제 (2010년 1월)
5. 미래연구 동향과 시사점 (2010년 1월)
6. 청년 고용 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0년 2월)
7.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2010년 2월)
8.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10년 2월)
9.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2010년 2월)
10.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에 대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현황 검토 (2010년 3월)
11. 공항사업 평가 (2010년 3월)
12.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동향 및 시사점 (2010년 4월)
13.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TF팀 보고서 관련 의견 청취 (2010년 4월)
14. 실업급여 증가와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 (2010년 4월)
15. 국제공항사업 평가 (2010년 4월)
16. 중소기업청 2009년 예산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2010년 4월)

□ KDI (<http://www.kdi.re.kr>)

보고서

1. KDI 경제동향 2010. 1 (2010년 1월)
2. Economic Bulletin, Jan 2010 (2010년 1월)
3.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1월 (2010년 1월)
4. click 경제교육 2010 Feb (2010년 1월)
5. 나라경제 2010. 2 (2010년 2월)
6. KDI 경제동향 2010. 2 (2010년 2월)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윤희숙 외 (2010년 2월)
8.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재준 (2010년 2월)
9.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윤희숙 외 (2010년 2월)

10. Economic Bulletin, Feb 2010 (2010년 2월)
11. click 경제교육 2010, Mar (2010년 2월)
12. 나라경제 2010. 3 (2010년 2월)
13.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2월 (2010년 2월)
14.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측정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송민규 외 (2010년 3월)
15. KDI 경제동향 2010. 3 (2010년 3월)
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윤희숙 외 (2010년 3월)
17. 유료방송서비스 간 규제차별과 제도개선 방안/이수일 (2010년 3월)
18. Economic Bulletin, Mar 2010 (2010년 3월)
19.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유경준 (2010년 3월)
20.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3월 (2010년 3월)
21. click 경제교육 2010. Apr (2010년 3월)
22. 나라경제 2010. 4 (2010년 3월)
23. KDI 경제동향 2010. 4 (2010년 4월)
24.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고영선 외 (2010년 4월)
25. Economic Bulletin, Apr 2010 (2010년 4월)
26. 생계급여 누수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2010년 4월)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4월 (2010년 4월)
28. 나라경제 2010. 5 (2010년 4월)

국제회의/세미나/공청·토론회

1.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컨퍼런스 (2010년 2월)
2.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2010년 2월)
3. 세계 경제의 재건(Reconstructing the World Economy) (2010년 2월)
4. 이명박 정부 2년의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 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2010년 3월)
5. 법의 영역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2010년 3월)
6.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상승 (2010년 3월)

7. 한국경제의 전환, 선진국으로 가는 길 (2010년 4월)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해외경제정보 제2010-5호: 미국의 재정수지 전망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제/ 구미경제팀(2010. 1. 26)
2. 해외경제정보 제2010-8호: 그리스 사태로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구미경제팀 (2010. 2. 17)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보고서

1.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문외솔, SERI 경제포커스 제275호 (2010. 01. 12)
2.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신창목 외, CEO 인포메이션 제740호 (2010. 01. 27)
3. 미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논의 동향과 전망/ 박현수, SERI 경제포커스 제279호 (2010. 02. 09)
4. 국가채무의 재조명/ 강성원, 전효찬, 이은미, 문외솔, CEO 인포메이션 제742호 (2010. 02. 10)
5.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김득갑, 양오석, 이종규, 연구보고서 (2010. 02. 18)
6. 중국의 출구전략과 시사점/ 엄정명 외, CEO 인포메이션(2010.03.10)
7. 영국 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 이종규, SERI 경제포커스(2010. 03. 23)

세미나

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 (2010년 2월)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보고서

1. Japan Insight 27호: 2010년 일본의 주요 이슈 (2010년 1월)
2. LGERI 리포트: 2010년 글로벌 경제 기상도 (2010년 1월)
3. LGERI 리포트: 중국, 버블·부실 논란 있지만 위기는 아니다 (2010년 1월)
4. LGERI 리포트: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2010년 1월)
5. LGERI 리포트: 신용위험 높은 기업 여전히 많다 (2010년 1월)
6. LGERI 리포트: LGERI의 미래생각(2)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2010년 1월)
7. Weekly 포커스: 고용 회복이 더딘 이유 (2010년 1월)
8. LGERI 리포트: 아시아의 내수형 성장 아직 멀지만 희망이 보인다(2010년 1월)
9. China Insight 27호: 2009년 중국경제 평가와 2010년 전망 외 (2010년 2월)
10. Weekly 포커스: 떠오르는 녹색자원에 주목하자(2010년 2월)
11. LGERI 리포트: LGERI의 미래생각(3) 2020년 글로벌 고령시대의 빛과 그림자 (2010년 2월)
12. Weekly 포커스: 기회의 시장, 글로벌 저소득층 (2010년 2월)
13. LGERI 리포트: 미래유망산업, 현장을 가다 (2010년 2월)
14. LGERI 리포트: 가계부채 위험한가/이근태 (2010년 2월)
15. LGERI 리포트: LGERI의 미래생각(4) 미래 녹색사회를 향한 대장정/조용수 (2010년 2월)
16. LGERI 리포트: 성장모델 전환 모색하는 중동 석유화학 산업/문상철 (2010년 2월)
17. LGERI 리포트: 일본경제의 쇠퇴 현상,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지평 (2010년 2월)
18. Japan Insight 40호: 부활 꿈꾸는 일본기업의 회생 전략 (2010년 3월)
19. Weekly 포커스: 위안화 절상되면 무역수지는 소폭 개선/배민근 (2010년 3월)
20. LGERI 리포트: 금융위기 이후 환위험 노출도 줄었다/박상수 (2010년 3월)
21. Weekly 포커스: 경기,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 재개 예상/이근태 (2010년 3월)
22. Weekly 포커스: 2010년 수출전선 이상없나/윤상하 (2010년 3월)
23. Weekly 포커스: 외국인 채권투자, 금융시장의 잠재적 교란 요인/정성태 (2010년 3월)
24. LGERI 리포트: 포스트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 시나리오/이서원 (2010년 3월)
25. LGERI 리포트: 2010년 양회 결산 중국 경제 '구조개선'에 정조준/박래정 (2010년 3월)

SECTION 1 >>

26. China Insight 28호: 중국 경제, 다시 탄탄대로에 들어선 것인가 외 (2010년 4월)

세미나

1. 기로에 선 한국기업의 도전과 과제 (2010년 5월)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보고서

1.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이태규, 정책연구(2010. 03. 16)

세미나

1.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2010년 1월)

2. 중국의 내수시장 활용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2010년 1월)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CFE 리포트

1.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비교와 시사점/김시정 (2010년 2월)

2.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 분석/곽은경 (2010년 2월)

3.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안재욱 (2010년 3월)

4. 색다른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비 부담/권혁철 (2010년 4월)

5. 가계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박양균 (2010년 4월)

정책모니터

1. '코펜하겐 협정'과 온실가스 환경평가의 의의/조영일 (2010년 1월)

2. 희망근로제는 과연 바람직한 고용정책인가?/박동운 (2010년 2월)

3. 실업급여제 전반의 평가/김재원 (2010년 3월)

4.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최승노 (2010년 4월)

5. 서울시 지방세 간소화방안의 평가와 그 과제/박정수 (2010년 4월)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1. [제659회] 한국 경제의 전망과 정부의 역할/강만수 (2010년 3월)

2. [제660회] 북한의 화폐개혁과 체제의 지속가능성/조동호 (2010년 3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주진홍 외 (2010년 4월)

2.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DDA Trade Liberalization: Assessment of Alternative Scenarios/Nakgyoon Choi (2010년 4월)

3. Intra-Industry Trade in an Enlarged Europe: Trend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European Union and its Determinants/Yoo-Duk Kang (2010년 4월)

4.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정철 외 (2010년 4월)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보고서

1. 레버리지의 결정요인과 파급효과/손상호 (2010년 1월)

2. Korea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Vol. 15, No. 1 (2010년 1월)

3. 녹색금융의 현황 및 향후 과제/구정환 (2010년 2월)

4. 외국인 투자자가 본 국제금융중심지 홍콩의 일곱가지 매력/최광해 등 (2010년 2월)

5. 금융소의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이건호, 정찬우 (2010년 2월)

6.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안/이재연 외 (2010년 2월)

금융연구 24권 1호/KIF, 한국금융학회 (2010년 3월)

7. 예대율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지언 외 (2010년 4월)

8.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KIF (2010년 4월)

9. 외화표시 국내채권 CDS 시장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서병호 외 (2010년 4월)
10.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장민 외 (2010년 4월)
11. 계간 금융동향: 분석과 전망/KIF (2010년 4월)
12. 2009년 KIF 금융백서/KIF (2010년 4월)
13.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KIF (2010년 4월)

세미나

1.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2010년 2월)
1.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2010년 2월)
1. 금융회사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 (2010년 2월)
2. 환경과 녹색금융-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융합과제 (2010년 3월)
3. 국제 금융규제 대변혁기의 우리 금융산업의 전망 (2010년 4월)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I. 주요국 동향

II. 미 국(FY2010: 2009.10~2010.9)

III. 일 본(FY2010: 2010.4~2011.3)

IV. 영 국(FY2010-11: 2010.4~2011.3)

V. 프랑스(FY2010: 2010.1~2010.12)

VI. 독 일(FY2010: 2010.1~2010.12)

VII. 캐나다(FY2010-11: 2010.4~2011.3)

VIII. 호 주(FY2009-10: 2009.7~2010.6)

I 주요국 동향*

- 2010년 2/4분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상 7개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한 확장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
-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고용지원에 초점을 맞춤
 - 독일은 민간소비 진작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부여, 노동 및 사회보장(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 차지,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신규 차입
 - 미국은 중산층 이하의 국민 및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연장, 고용지원법안 통과로 실업계층 보호
 -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수요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구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에코포인트 제도 실시
 - 영국은 소규모 기업에 세제혜택 확대, 아동수당 확대, 모기지(morgage) 이자 동결기간 연장, 아동빈곤퇴치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지원 등 가계에 지원 확대
 - 프랑스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 지원
 - 캐나다는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둔 예산안 Budget 2010을 발표하고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 Economic Action Plan)의 2차년도 계획안 실행
 - 개인소득세 경감, 아동보조금 증대, 실업보호 및 고용창출,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지출 확대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부문에 지원 강화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eklee@kipf.re.kr)

- 독일의 경우, 2015년까지 교육 및 연구에 GDP 대비 10% 투자를 목표로 함
 - 일본은 실질GDP 성장률 2%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세부 달성 목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 3대 성장부문(6대 전략 분야)은 일본의 강점 부문(환경·에너지, 건강), 개발이 필요한 부문(아시아, 관광·지역활성화), 성장동력 부문(과학·기술, 고용·인재양성)으로 구성
 - 영국은 기술·혁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
 - 프랑스는 미래투자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고등교육, 연구개발투자, 중소기업 및 산업투자, 지속가능발전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에 350억유로 투입, 또한 총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자동차, 항공, 정보통신, 의료, 농업비즈니스 등 주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캐나다는 대학 기반시설 확충 및 친환경 조성 등 미래 경제 구축에 18.8억캐나다달러 지원,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에 22.3억캐나다달러 투입
-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목표를 수립하고 재정규율 및 준칙을 강화하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
- 세원 확대
 - 미국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 금융기관에 금융위기 페널티 부과, 유해 화학물질 등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과세제도 부활
 - 영국은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주류 및 담배세 인상, 연료 및 환경세 인상
 - 프랑스는 금융기관 종사자 보너스에 대한 과세
 - 지출 감소 및 지출구조의 효율화
 - 미국은 필요없는 보조금을 폐지하고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 일본은 지출부담행위에 대해 재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비 선정
 - 영국은 지출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공공부문 지출 삭감,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통한 지출 감축
 - 프랑스는 지출통제전략을 통해 2010년 8.2%인 재정적자를 2013년 3%까지 낮추겠다고 함

- 캐나다는 모든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전략 검토, 프로그램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마다 지출삭감 목표를 세우고 실행
- 제도적 장치 강화
 - 미국은 재정적자를 지난 부시정권 교체시 기록했던 재정적자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여 재정위원회 설립, PAYGO 부활, 신속재원 폐지 등 제도적 장치도 설립
 - 독일은 기본법 개정을 통해 균형재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2010년 현재 GDP의 5.5%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3% 미만으로 낮추기로 합의
 - 일본은 국가전략실에 많은 힘을 실어주어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전면 재검토 실시
 - 영국은 재정책임법 승인을 통해 재정목표 달성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 프랑스는 독일과 같은 재정관리원칙(지방재정 포함) 및 실행방안 마련을 진행중, 재정건전성 지수(S2) 개선을 목표
 - 캐나다는 FY2014-15까지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FY2009-10부터 6년 계획 실행
-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스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환경 개선
 - 금융시장 안정화
 - 독일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기관 지원
 - 영국은 금융기관 감독 강화, 임금체계 및 지배구조 개혁
 - 탈루 방지 등 징세구조 개선
 - 미국은 납세 신고와 납세 순응성 제고, 국제조세제도 개혁
 - 프랑스는 부가가치세 관련 시스템의 선진화 및 간소화, 조세회피 방지
 - 캐나다는 과세체계 개선과 세제상 허점 방지 등을 위해 투자
 - 의료부문 개혁
 - 미국은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비 지출 감소를 꾀함
 - 프랑스는 의료부문의 효율성 증대 및 의약품 가격 조정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 감소를 꾀함

SECTION 2 >>

- 인구 고령화현상에 대비한 정책 운용
 - 독일은 노인연금 조정, 퇴직연령 연장 등을 시행할 계획
 - 일본은 신연금제도 검토회를 신설하여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을 검토
 - 프랑스는 PAYGO 원칙 도입을 제안
 - 호주는 교육, 혁신,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제고를 통해 고령화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 또한 보건시스템 개선 및 2017년부터 연금 수령연령을 상향조정

II

미국 (FY2010: 2009.10~2010.9)

1. 세제개편¹⁷⁾

가. 2001년, 2003년 감세법 및 대체최저한세(AMT) 개편

- 2010년 만료 예정인 2001년/2003년 감세법을 연소득 20만달러(독신)/25만달러(부부합산) 미만 소득자에 대해 영구 연장
 - 10%, 25%, 28% 소득세 과표구간 및 매리지 패널티(marriage penalty) 구제, 아동세액 공제(3천달러 환급수준) 등 영구 연장
 - 연소득 20만달러(독신)/25만달러(부부합산) 미만인 자는 자본소득 및 배당에 대해 15% 세율* 적용
 - * 연소득 20만달러(독신)/25만달러(부부합산) 이상인 경우에는 20% 세율 부과

- 다만, 연소득 20만 달러(독신)/25만 달러(부부합산)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2001년 /2003년 감세법 종료
 - 2010년 이후 33%, 35% 소득세 과표구간은 만료되어 각각 36%, 39.6% 세율로 회귀
 - 인적공제의 단계적 폐지 및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제한 유지
 - 자본소득 및 배당에 대해 20% 세율 부과

- 유산세는 2009년 수준인 최고세율 45%, 면세한도 350만달러 유지

- 대체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면제소득을 2009년 수준으로 지속하되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도록 운영

17) '10.2월 발표된 FY2011 예산안에서 제시된 세제개편안으로 구성

* 고소득층이 과도한 소득공제 및 조세회피를 통해 소득세를 경감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969년 도입된 동 제도는, 과세하기 유리한 항목들을 공제하지 않고 다시 총소득에 포함시켜 고소득자들이 일정 정도 최소 수준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함. 도입 당시에는 1%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가구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2010년에는 무려 20%의 가계가 AMT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

나. 주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신규 세금 감면 정책

- (가계) FY2011 예산안은 근로장려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비용공제 확대 등 가계에 대한 세금감면 제안
 -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운영
 -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45% 세액공제 혜택을 영구 연장
 - 자녀 및 부양가족 비용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확대
 - 조정후총소득(AGI)이 15,000달러를 넘으면 초과소득 2,000달러당 1퍼센트씩 감소하는 기존의 비용공제비율 산정법에서 기준금액을 85,000달러로 인상
 - 고등교육 비용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확대 및 연장
 - 고등교육 수업료에 대해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
 - FY2011 예산안에서는 동 공제의 영구화 및 인플레이션에 연동할 것을 제안

- (기업) 경기부양법(ARRA)에서 연장된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세제혜택 영구화 제안
 -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 2009.2.17일 이후 발행된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 매도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
 - 연구 및 실험 세액공제 영구화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 및 실험 비용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다. 주요 증세 방안 및 세제상의 허점 방지

- 이번 예산안에서 제시된 주요 증세 방안은 작년 예산안과 대체로 유사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에 superfund세* 부활, 국제조세제도 개혁, 석유/천연가스/석탄 생산에 대한 보조금 폐지
 - * 원유와 유해 화학제품에 대한 과세로 오염지역을 복구하는 데 사용
 - 세금보고와 납세 준응성 제고를 통한 미수세금(tax gap) 감소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¹⁸⁾

- FY2011 예산안은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재정건전화와 일자리 창출에 국정능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표 2-Ⅱ-1〉 FY2011 예산안 예산총량 전망

(단위: 십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정수입	2,165	2,567	2,926	3,188	3,455	3,634	3,887	4,094	4,299	4,507	4,710
재정지출	3,721	3,834	3,755	3,915	4,161	4,386	4,665	4,872	5,084	5,415	5,713
재정적자	1,556	1,267	828	727	706	752	778	778	785	908	1,003
GDP 대비 %	10.6	8.3	5.1	4.2	3.9	3.9	3.9	3.7	3.6	3.9	4.2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 20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¹⁹⁾의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
 - 2009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이 (+)로 전환되고 일자리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
 - 이에 따라, 경기부양법(ARRA)의 일부 관련 조항을 연장 실시할 것을 제안
 - 의회의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한 예산배정 및 추가적 실업대책*을 마련
 - *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 예산지원, 인프라기금(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and Finance Fund) 신설 등
- **(재정건전화)**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임기 내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FY2010 예산안에 이어 재공약

18) 미국의 FY2011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0년 2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요국 예산안 2010」 참조

1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재정위원회 설립 및 3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의료보험·실업급여 등의 부당수취 방지, 세원조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안
- 예산제도적 측면에서는 PAYGO원칙 도입과 행정부가 의회 승인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를 제의

*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에 관하여 의회에 폐지요청을 하는 것으로 상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재원폐지 제안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의 수정 및 토론 제한 등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

나. 추경

- 2010.3월 재해복구 및 하계 청년고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추경안(Disaster Relief and Summer Jobs Act of 2010)이 하원을 통과
 - (재해복구) 기록적인 대설과 홍수 등에 대한 재해복구 및 예방비용으로 51억달러 책정
 - (하계 청년고용 프로그램) 16세~21세 청년을 대상으로 약 30만개 일자리 지원 (6억달러)
 - (중소기업청) 경기부양법(ARRA)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연장에 6천만달러 책정

다. 결산

- 미국 FY2010 예산안에 대한 결산은 2010.10월 발표될 예정임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재정위원회 설립,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재정사업 운영 개선방안 등과 함께 PAYGO 원칙 도입 및 신속재원폐지 등 예산제도 개혁도 추진

- (재정위원회) 2010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초당적 성격의 ‘국가재정책임 개혁위원회’²⁰⁾를 설립
 - 4월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한 18명의 위원을 모두 임명
 - 위원회는 FY2015까지 기초재정수지 균형 달성 및 장기 재정전망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2월 1일까지 확정 후 의회 제출

-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FY2011 예산안에서는 3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
 - * 안보기관에 속하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보훈처,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 기타 관련 국제협력 계정을 제외한 재량지출

〈표 2-Ⅱ-2〉 기관별 재량지출

(단위: 예산자원, 십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승인규모	요청				
안보기관	683.7	719.2	747.5	768.7	789.7	814.0
비안보기관	446.3	441.3	446.4	446.2	459.1	472.3

주: 1. 해외 군사작전 비용, 긴급자금 제외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 (재정사업 운영 개선) FY2010 예산안에 이어 국가 재원의 부당수취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원확보를 위해 FY2011 예산안에서도 다음 4개 분야에 증액 지원

20) 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

- 사회보장국(SSA)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Continuing Disability Reviews(지속적인 신체장애상태 재심사)와 SSI(생활보조금)의 재판정에 지원
 - 의료보험 부정수령 및 남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실업급여 부당수령에 대한 감독 강화
 - 국세청(IRS)을 통한 세법집행 강화
 - OMB는 상기 4개 분야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2020년까지 1,320억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 (PAYGO 원칙 적용) 2010.2월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효력 발생
- PAYGO 원칙은 신규 법정지출이나 세입감소 정책에 대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출 감소 혹은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예산중립제도
 - 동 원칙에 위배되었을 시에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PAYGO 원칙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법정지출 프로그램에 일률적인 삭감 조치 시행
- (신속재원폐지 규정 제안)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 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를 FY2011 예산안에서 제의
- 대통령에게 의회가 승인한 재원에 대해 개별 조항을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예산안에 제시된 제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원폐지 요구의 항목 수를 제한하여 의회에 송달할 수 있으며,
 - 의회는 재원폐지 제안에 대한 신속한 가부투표(up-or-down vote) 필요
 - 재원폐지 제안은 재원의 축소나 폐지만 가능하며, 이로 인한 재원 절감분에 대해 대통령은 재원의 사용처를 변경할 수 없음
 - 하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행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표결하며,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도 정해진 기일 내에 수정없이 원안에 대해 표결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2010년 3월 고용지원법(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효력 발생
 - (주요내용) 실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제공
 - 2010.2.3일부터 2010.12.31일까지 신규고용 시 고용주에게 급여소득세(payload tax) 공제 혜택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전 최소 60일 동안 실업상태였거나, 고용전 60일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40시간 이하로 근무한 자를 신규 채용시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고용주 부담 6.2%(참고 1 참조)를 공제 • 최소 52주 동안 신규 고용자의 고용을 지속할 시 고용주에게 법인세 혜택 제공(1,000달러 이하 또는 신규채용자 임금의 6.2%)
세제혜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내 고용주는 해당 없음 • 연소득 106,000달러 이상인 근로자,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를 대신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비용상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인 계좌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외국계은행이 보유한 미국 금융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30% 원천징수 • 해외금융자산 5만달러 이상을 소유한 자는 연말정산시 보고 • 해외금융자산 미공개로 인한 과소계상에 대해 40% 벌금 부과 • 외국 기업이 받은 배당등가물(dividend equivalent) 및 대체배당금(substitute dividend)을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¹⁾

주: 1)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30%이지만, 주식스왑거래로 수령하는 배당등가물과 주식대여거래로 받는 대체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참고 1> 연방 급여소득세(Federal payroll tax)

①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납부

-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정부에 소득세 납부

② 연방 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

- 급여의 7,000달러 한도내에서 6.2%의 금액을 고용주가 납부
-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정부 실업기금에 실업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과세소득의 5.4%까지 공제

③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세(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 연방보험기여법(FICA)에 따라 정부는 노인, 생존 배우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을 제공
 - 연금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세(Medicare tax)로 총당
-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부담
- 사회보장세는 급여의 106,800달러 한도내(2010년 기준)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6.2%를 납부
- 의료보험세는 전체 급여액의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45%를 납부

다. 기타 정책이슈

□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

- 3.23일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데 이어, 30일 수정안 역시 대통령 서명을 마침으로써 의보개혁의 입법과정은 일단락
 - 3.21일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219: 212)

- 하원은 상원의 의료보험개혁법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면서 상원법안의 수정안도 함께 채택하여 상원으로 이송
- 3.25일 상원에서는 하원의 수정안을 다시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56:43)하여 하원으로 보내고, 하원은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220:207)
 - 최종 수정안은 네브래스카주에 특혜를 제공하는 조항 삭제 및 메디케이드에 대해 주정부에 연방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
- 의료보험 개혁법은 의료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 의료보험개혁법은 건강보험이 없는 3,200만명의 미국인에게 보험 혜택 제공
 -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보험 가입의 부담을 최소화
 - 보험사가 사전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관행을 금지
 - 의료보험 개혁법은 향후 10년 동안 1천억달러 이상의 적자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Ⅲ

일본 (FY2010: 2010. 4~2011. 3)

1. 세제개편

- FY2010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및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국회 제출 (2010.2.5)²¹⁾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따라 현행 조세특별조치 적용 실태 조사 및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
 - ⇒ 경과: 국회 의결(2010.3.24) 및 시행(2010.4.1)

2. 예산, 결산, 추경

가. FY2010 예산안(FY2010: 2010.4~2011.3)

- FY2010 예산안 국회 심의 개시 및 스가 재무장관의 향후 재정운영의 주요 내용 발표 (2010.1.29)
 - 향후 재정운영시 수요 및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둔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마련, 재정의 전면 재검토와 재정규율 유지, 경기회복의 확실성 부여를 위한 대책 추진 지속, 세계 경제의 회복 및 발전에 대한 공헌 등에 중점
- FY2010 예산안 편성에 따른 향후 세입·세출 예산의 시산 결과, 2013년 재정수지 적자

21) 『재정동향』 2010년 1호에 수록된 ‘FY2010년 세제개편안’ 중 담배세 인상관련 내용 수정
 - (기존) 담배 1개피당 3.5엔~5.0엔 정도로 담배세 인상(2010년 세제개편 이전 세계조사회 검토 내용)
 - (수정) 담배 1개피당 3.5엔 인상(2010년 세제개편안 수록 내용)

SECTION 2 >>

는 2010년 대비 11조엔(24.8%) 증가한 55.3조엔(GDP 대비 11.0%) 정도에 달할 전망
(2010.2.4)

- FY2010 재정수지는 2009년 당초 예산에 비해 세출은 3.8조엔(4.2%) 증가한 반면 세입은 7.3조엔(18.9%) 감소하여 약 44.3조엔(GDP 대비 9.3%)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일정한 경제여건과 FY2010 예산상 제도 및 시책의 유지를 전제하여 향후 재정여건을 시산한 결과, 2013년도 세출은 2010년 대비 8.0조엔(8.7%) 증가한 100.3조엔 정도이며 세입은 3조엔(6.3%) 감소한 45.0조엔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55.3조엔(GDP 대비 11.0%)에 이를 전망

〈표 2-Ⅲ-1〉 FY2010 예산의 후년도 영향 시산

(단위: 조엔, %)

구 분		추정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	국채비	20.2	20.6	22.6	25	27.9
	지방교부세 등	16.6	17.5	17.2	16.9	16.9
	일반세출	51.7	53.5	54.1	54.2	55.5
	사회보장비	24.8	27.3	28.5	29.3	30.5
	공공사업비	7.1	5.8	5.7	5.7	5.7
	기타	19.8	20.4	19.9	19.2	19.3
	계	88.5	92.3	93.9	96.1	100.3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	46.1	37.4	38.7	39.7	40.7
	기타 수입	9.2	10.6	3.9	4.2	4.2
	계	55.3	48	42.6	43.9	45
	재정수지 (GDP 대비)	△33.3 (△7.0)	△44.3 (△9.3)	△51.3 (△10.6)	△52.2 (△10.6)	△55.3 (△11.0)

자료: 재무성, 「平成22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歳入への影響試算」, 2010. 1.

□ FY2010 예산안 국회 의결(2010.3.24) 및 예산집행 세부절차 등에 대한 지침 강화(2010.3.26)

- FY2010 예산집행시 예산의 이체, 유용, 과목 구분, 이월, 보조금 등의 교부 등에 대한 예산집행의 세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재무성의 승인 및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

나. FY2009 결산(FY2009: 2009.4~2010.3)

- FY2009 결산은 2009년 7월경 발표 예정

다. FY2009 2차 추경

-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기본경비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7.2조엔 규모의 FY2009 제2차 추경예산안 국회 의결(2010.1.18)
 - 「긴급경제대책」과 관련하여 고용안정(0.6조엔), 환경대책(0.8조엔), 경기대책(1.6조엔), 생활안정(0.8조엔), 지방지원(3.5조엔)을 계상
- 「FY2009 예산에 대하여 재정법 제 34조의 2 제1항 규정에 근거한 재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 개정 (2010.2.2)
 - FY2009 예산관련 지출부담행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재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비를 부성별로 명시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국가전략실, 향후 3년간 국가 재정의 기본구조 마련(‘중기재정구조’) 및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방향(‘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기재정 운영에 관한 검토회’ 신설(2009.1.25)
 - 동 검토회는 기존 ‘예산편성 방식에 관한 검토회’(2009.10.19)와 ‘예산편성의 기본방침’(2009.12.15)에 근거하여 신설되었으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 국가전략특명장관, 내각관방차관, 내각총리장관보좌관, 재무성차관, 내각부장관 정무관, 재무성장관정무관, 경제학 및 법학교수, BNP 이코노미스트 등
 - 2009년 3월 현재 2009년 신정부 출범 이후 중기재정구조 및 재정운영전략에 관한 검토내용과 일본의 과거 중기재정구조의 논점 정리 작업 등²²⁾을 진행중에 있으며 최종안은 6월에 발표 예정

- 아사히 신문, ‘일본 재정악화 해결 못하면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2010.3.7)
 - 2010년 일본의 국가채무 잔액은 949조엔(GDP 대비 197%)에 이를 전망으로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
 - 최근까지 일본 금융기관들이 정부발행 국채를 90% 소화하였으나 개인금융자산이 줄어들면서 금융기관의 자금 부족으로 국채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
 - 전문가들은 채권가치 하락 및 장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여 향후 국채상환 부담이 커져 재정파산 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국채발행 감축, 소비 및 소득세 인상 및 연금 등 복지혜택 축소를 주장

22) <참고 2> 및 <참고 3> 참조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 「긴급경제대책」에 따른 주택에코포인트제도 실시(2010.1.15)

- 국토교통성, 기 발표된 「긴급경제대책」(2009.12.8)에 따라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을 지원하는 주택에코포인트제도²³⁾ 실시 발표
 - 포인트 발행 대상은 원칙적으로 2010년 1월 28일 이후에 공사를 완료한 주택이며 포인트 발행 및 상품 등의 교환 신청은 3월 8일부터임
 - 에코주택의 신축은 2009.12.8~2010.12.31에 착공한 것이어야 하며, 개축(창의 단열, 이중유리로 교환, 천정 및 마루의 단열 시공 등)의 경우에는 2010.1.1~2010.12.31 기간중 착공해야만 에코포인트를 부여
 - 포인트 부여는 신축의 경우 1호당 30만포인트를 제공하며, 개축은 1호당 30만포인트를 한도로 내용에 따라 2천~10만포인트를 부여

〈표 2-Ⅲ-2〉 주택에코포인트 제공 내역

(단위: point)

구분	내역			
신축	300,000			
개축	창문	대(2.8㎡~)	중(1.6㎡~2.8㎡)	소(0.2㎡~1.6㎡)
		18,000	12,000	7,000
	유리	대(1.4㎡~)	중(0.8㎡~1.4㎡)	소(0.1㎡~0.8㎡)
		7,000	4,000	2,000
	외벽, 지붕·천장, 마루	외벽	지붕·천장	마루
		100,000	30,000	50,000
	장애물 제거	난간 설치	단차 해소	복도폭 등 확장
		5,000		25,000

자료: 국토교통성, 「住宅エコポイント制度の概要」, 2010. 1.

- 동 제도 관련 재원은 FY2009 2차 추경예산상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에 예

23) 포인트 교환대상은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제품, 지역특산품 및 상품권, 선불카드, 환경기부, 에코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의 시행사가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공사 등

각각 333.3억엔씩 배정되어 총 1,000억엔이 반영됨

2)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신성장전략」의 기본방침 발표(2009.12.30)

- (추진배경)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침체 지속 및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과거의 성장전략과 차별화된 신성장전략(기본방침)을 마련
 - 일본경제는 1990년대초 버블붕괴 이후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2008~2009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3.7%, -2.6%로 급감하였으며 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5%를 기록하여 전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
 - 이에 따라 과거 1960~80년대 국가주도 공공사업에 의한 성장전략(제1기) 및 2000년대의 지나친 시장주도의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전략(제2기)과 차별화된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신성장전략(제3기)을 마련

- (거시운용목표)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 목표를 3%(실질GDP 성장률 2%)이상 수준으로 설정²⁴⁾
 - 이는 2009년 현재 명목GDP 473조엔(추정)에서 2020년 650조엔 정도로 1.4배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임
 - 2009년 현재 5% 수준을 상회하는 실업률의 경우 중기적으로 3~4% 이하가 되도록 줄이는 것을 목표
 - 환경, 건강, 관광 등의 분야에서 100조엔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476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

- (주요내용 및 평가) 성장목표 달성을 위하여 3대 성장 부문 및 6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2020년까지의 세부 달성 목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
 - 3대 성장부문(6대 전략 분야)은 일본의 강점 부문(환경·에너지, 건강), 개발이 필요한 부문(아시아, 관광·지역활성화), 성장동력 부문(과학·기술, 고용·인재양성)로

24) 일본정부는 경제가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성장률 대신 명목성장률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

구성

-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성장전략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등의 목표수치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실질성장률 2% 달성 목표는 2009년 10월 일본은행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0.5%에 비해 4배 수준이며, 198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평균 2% 이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

〈표 2-Ⅲ-3〉 신성장전략 분야별 주요내용

분야	2020년 목표	주요시책
환경·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조엔 이상의 환경관련 신규시장 창출 - 14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 민간기반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13억 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고정가격매입제도 확충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 보급 - 친환경 주택, 히트펌프 보급으로 주택·빌딩 등의 탄소 무배출화 - 축전지 및 차세대 자동차, 화력발전소 효율화 등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 규제개혁, 그린세제 등 종합정책 패키지를 활용한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실시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간병·건강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 - 신규시장 45조엔, 28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간병·건강관련산업의 성장 산업화 - 혁신적인 자체 의약품 개발 - 의료·간병·건강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친고령자 주택 공급 촉진 - 의료·간병 서비스 기반 강화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자유무역권(FTAAP) 구축 - 아시아 성장에 따른 국내개혁 추진(인적·물적·자본적 유통규모 확대) - 아시아의 소득증가를 통한 성장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APEC 주최국으로서 무역·투자 자유화의 적극적 추진(FTAAP 로드맵 구축) - 아시아 각국과의 공조로 일본의 '환경·안전' 등 기술 및 제도의 국제표준화 추진 - 민관 협력을 통한 철도, 물, 에너지 등 인프라 정비 지원 및 친환경도시 개발 - 하네다 공항의 24시간 거점화 및 오픈스카이 구상 추진, 대형선박 유치에 위한 항만 정비 - 인적·물적·자본적 유통 저해 규제의 재정비

<표 2-III-3>의 계속

분야	2020년 목표	주요시책
관광·지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입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일 외국인수 2020년초까지 2,500만명, 이후 3,000만명 유치 - 경제파급효과: 약 10조엔, 56만명의 고용창출 기대 • 지방도시 및 대도시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최대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대도시권 공항·항만 등 인프라의 전략적 집중투자 • 농수산분야의 성장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및 목재자급률 50% 이상 - 농수산물 등의 수출을 현 2.5배인 1조엔으로 확대 • 주거중심 주택정책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주택유통 및 개축시장의 규모 확대 - 내진성취약 주택 비중 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입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일 관광비자 취득 간소화 - 휴가 분산화를 통한 '로컬 홀리데이제도(가칭)' 검토 • 지방도시 및 대도시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생권' 구상의 추진, 과소지역의 자립 지원 - 특구제도 활용을 통한 도시 및 지역 재생 - 대도시권 인프라 정비에 민간자본(PFI, PPP 등) 활용 • 농수산분야의 성장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별 소득보상제도 도입, 지역자원 활용, 6차 산업화, 농상공연계에 의한 성장 산업화 - 도로망 정비, 인재육성, 목재·바이오매스 등에 의한 산림업 재생 - 검역 협의나 판매루트 개척 및 수출 확대 • 주거중심 주택정책으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주택유통시장 등 환경정비, 역모기지 등 적극 활용 - 주택·건축물의 내진성 정비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라이프 이노베이션 - 세계상위 수준의 대학·연구기관수 증가, 이공계박사 수료자의 완전고용 달성,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활용 촉진 - 정보통신 활용으로 국민생활 편리성 향상, 생산비용 절감 - 민관 연구개발투자 GDP 대비 4%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공공기관 개혁 촉진, 신진 연구인력의 진로(career path) 정비 - 혁신(innovation) 창출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혁 - 행정의 간소화(one-stop service), 정보통신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고용·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터족 및 니트족, 비정규직 50% 감소 - 여성취업률의 M자곡선¹⁾ 해소 - 고령자 및 장애인 취업 촉진 - 직업카드 취업자 300만명, 유급휴가 촉진 -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환경 개선에 의한 출산율 증대 및 인구감소 개선 - 취학 대기 아동 지원 - 출산·육아 후 업무복귀 지원 - 세계최고의 국제 학업성취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여성·고령자·장애인 취업률 제고 - 트램폴린(trampoline)형 사회 구축 - 직업카드제도의 '일본판 NVQ(취업능력평가제도)'로의 발전 - 지역고용 창출 및 '보람있는 워크'의 실현 •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원·유치원 통합, 각종 제도 및 규제 검토로 다양한 사업주체 참여 촉진 - 육아휴직기간 및 방법의 다양화 - 교원의 질 향상, 민간활용을 포함한 지역 교육지원 체계 강화 - 고등교육의 내실화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

주: 1) 여성취업률이 25~29세 및 45~49세에서 높고 30~34세에서 낮은 현상을 의미
 자료: 국가전략실, 「新成長戰略(基本方針)」, 2009.12.30 재구성

- (추진일정) 「신성장전략」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정책별 구체화 작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에 최종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
- 「신성장전략」 상의 시책 및 제도에 대하여 국가전략실을 중심으로 각 부성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25개 조기실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FY2009 제2차 추경예산(6,560억엔) 및 FY2010 예산(3,273억엔)에 총 0.98조엔을 반영

〈표 2-Ⅲ-4〉 「조기실행 프로젝트 25」의 주요내용

(단위: 억엔)

분야	내용	FY2009 2차 추경	FY2010
환경·에너지	(1) 그린 이노베이션 R&D 집중투자 및 사업화 촉진	172.6	2,675.8
	(2) 저탄소 투자지원체계 개발(입지보조, 정책금융 등) ¹⁾	297.1	81.7
	(3) 친환경 최첨단 인프라 및 시스템 수출지원 ²⁾	8.0	-
	(4) 저탄소사회를 위한 금속·광물 등 자원확보지원 ³⁾	2.5	55.7
	(5) 지역에너지 관리시스템 개발	-	87.4
	(6) 친환경소비 3대 분야(포인트, 자동차, 주택) 개발	5,930.1	-
	(7) 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 도입 구체적 검토 ⁴⁾	-	-
	(8) 에너지 절약기준 강화(TV)나 연비개선(자동차) ⁵⁾	-	-
건강	(9) 의료·간호분야의 규제개혁·산업화 추진 연구	-	20.0
	(10) 암 조기진단 및 치료기기 종합연구개발 추진	-	12.2
아시아	(11)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투자를 위한 로드맵 구축	-	-
	(12) 아시아진출 자국기업 지원 세제 등의 정비	-	세제개정
	(13)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비과세제도의 확충	-	세제개정
	(14) 환경안전규제 등의 아시아 보급 추진	-	-
	(15) 시스템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정비	-	-
	(16) 아시아 개도국으로의 선진환경기술 보급 촉진	-	110.4
	(17) 컨텐츠산업의 인재발굴 및 육성	-	8.0
관광·지역활성화	(18) 지역 강점 등을 살린 신성장 산업군 창출 지원	-	13.9
	(19) 중소기업 경제지원체제 강화	-	40.2
	(20)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비즈니스체계 구축	-	-
과학·기술	(21) 시장창조형 규제 검토 긴급 추진	-	-
	(22)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세제 정비	-	세제개정
	(23) 중소기업 R&D 향상 및 실용화 추진	-	159.1
고용·인재	(24) 차세대 첨단기술 인재 양성	-	3.7
	(25) 고용불일치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	150.0 ⁶⁾	5.0
합 계		6,560.3	3,273.1

주: 1) 2010년중 법안 마련 추진

2) 2010년중 NEXI(일본무역보험)를 활용한 리스크 파이낸스 대처 강화

3) JOGMEC(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기능 강화관련 국회 법안 제출

4) 2010년 3월 검토결과 발표 예정

5) 2009년 경제긴급대책에 포함

6) 기존기금 활용 포함

자료: 경제산업성, 「早期実行プロジェクト25」, 2009.12.30 내용을 재구성

다. 기타 정책이슈

- 각료회의, 경제전망 및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발표 (2010.1.22)
 - 2009년 일본 경제는 실업률 상승, 완만한 디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6%(명목성장률 -4.3%)로 2년 연속 급감
 - 일본정부는 2010년 경제재정운영 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FY2009년 제2차 추경예산 및 FY2010 예산을 연계하여 집행할 계획
 - 세부적으로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한 경제대책의 지속 추진, 신성장전략에 의한 수요와 고용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를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증진,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금융부문과의 긴밀한 연계에 중점
 - 일본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대비 4%p 증가한 1.4%로 전망되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이 예상
 - 한편, 2009년중 경기부양책의 경제적 효과는 경제성장률 0.7% 증가 및 100만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됨

- S&P사,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처리 지연 및 중장기 성장 추세 불투명에 따른 우려로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 (2010.1.26)
 - 그간 일본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계속되어 왔고, S&P의 경우 일본에 대해 10년간 등급 조정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
 - 최근 일본의 저축률 감소 및 고령화를 감안할 때 향후 내수에 의존한 부채 소화여력이 줄어들고 재정 악화에 따른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경우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향후 부채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정긴축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현재 뚜렷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또 하나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됨

- 국가전략실,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신연금제도 검토회 신설 (2010.3.8)

- 새로운 연금제도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원으로 ‘신연금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
 - 의장: 총리
 - 의원: 부총리, 내각관방장관외 각 성 장관, 국가전략특명장관, 내각부특명장관(행정쇄신)
 - 사무국장: 국가전략실장

<참고 1> 행정쇄신위원회의 「사업구분」 평가결과 및 FY2010 예산안 반영 내용

- 행정쇄신위원회, 「사업구분」 평가 및 종합 재검토 결과 등이 FY2010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발표 (2010.1.12)
 - (진행경과) 행정쇄신회의는 예산 효율화를 목표로 2009년 10월 22일 1차 회의에서 운영방침을 결정한 이후, 「사업구분」 대상 선별, 1~2차 평가, 종합 검토 등을 거쳐 FY2010 예산안에 반영

〈표 2-Ⅲ-5〉 행정쇄신회의의 주요 내용

회차	일자	안건	회의내용
1	2009.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소개 및 의장인사 • 회의운영, 향후 진행방식 • 워킹 그룹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분 실시를 통한 세출예산 재검토에 중점/ 3개 작업반¹⁾ 설치 • 사업구분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2	2009.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킹 그룹 평가자 지명 • 사업구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분 대상사업 총 447개 선별
3	2009.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킹 그룹 평가자 추가 • 사무사업(事務事業) 종합적 재검토 • 독립행정법인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 추가안 승인 • 사업구분 평가결과 보고 (1차 사업구분 11월 11일~17일) • 사무사업 종합적 재검토 • 독립행정법인 재검토
4	2009.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분 평가결과 • 국민·공무원 의견청취 • 정부 공익법인의 검토 • 계약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 긴급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쇄신회의 향후 기본방향(안)」, 「워킹그룹 종료(안)」 승인 • 사업구분 평가결과 보고 (2차 사업구분 11월 24일~27일) • 평가결과 심의(1~2차 사업구분) • 「국민·공무원 의견청취(안)」 결정 • 「정부 공익법인 검토(안)」 심의 • 계약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 긴급실태조사 보고
5	201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분 평가결과 등 예산안 반영 현황 • 규제·제도 개혁 • 행정평가 기능의 근본적 강화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0년도 예산편성(헤세이 21년 12월 말) 반영 현황 보고 • 규제·제도 개혁 계획 보고 • 행정평가 기능의 근본적 강화 비전 보고

주: 1) 제1작업반(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법무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제2작업반(외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제3작업반(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방위성 등)임

자료: 행정쇄신회의, 「行政刷新會議 會議の記録」 내용을 재구성

- (FY2010 예산안 반영) 행정쇄신회의 「사업구분」 평가 및 종합 검토 등에 따라 확보된 3.3조엔(세출 삭감 2.3조엔, 세입증가 1.0조엔)이 FY2010 예산안에 반영됨
 - 세출의 경우, 예산요구단계에서(FY2009 당초 예산액 ⇒ FY2010 예산요구액) 약 1조 3,122억엔 및 예산요구단계부터(FY2010 예산요구액 ⇒ FY2010 당초예산액) 약 9,692억엔 삭감
 - 소관별 「사업구분」 평가결과만을 반영한 예산 내역은 FY2009 당초예산 및 FY2010 예산요구 대비 각각 104억엔, 8,380억엔 감소한 20.3조엔 규모임
 - 세입의 경우, 공익법인, 독립행정법인 등 기금의 국고반납 등과 같은 세입확보 노력으로 약 1조 269억엔의 재원 확보

<표 2-Ⅲ-6> 소관별 「사업구분」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 내역

(단위: 십억엔)

소관별	FY2009 당초예산액 (A)	FY2010 예산요구액 (A')	FY2010 당초예산액 (B)	FY2009 당초 대비 증감(B-A)	FY2010 예산요구 대비 증감(B-A')
경제산업성	774.3	804.4	774.3	0.0	-30.1
국토교통성 ¹⁾	675.5	794.1	522.7	-152.8	-271.4
내각부	38.7	27.0	21.5	-17.3	-5.5
농림수산업성 ²⁾	586.4	590.9	365.4	-221.1	-225.5
문부과학성	3,261.2	3,278.8	3,161.3	-99.9	-117.5
방위성	2,465.8	2,537.8	2,466.5	0.6	-71.3
법무성	5.7	8.0	7.3	1.6	-0.7
외무성	458.2	462.1	447.3	-10.9	-14.8
재무성	32.8	28.9	14.9	-17.9	-13.9
총무성 ³⁾	165.6	251.2	219.4	53.8	-31.8
환경성	72.2	71.5	65.8	-6.5	-5.7
후생노동성	11,786.8	12,296.2	12,246.6	459.8	-49.7
계	20,323.3	21,150.7	20,312.9	-10.4	-838.0

주: 1)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가칭) 2.2조 엔 내 통합지출 항목 제외

2)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가칭) 1,500억 엔 내 통합지출 항목 제외

3) 지방교부세 교부금 제외

자료: 행정쇄신회의, 「行政刷新会議 5次 会議資料」, 2010.1.12.

<참고 2> 신정부 출범 이후 중기재정구조 및 재정운영전략에 관한 검토 내용

□ 「예산편성방식에 관한 검토회」 논점 정리 (2009.10.19) 발췌

1. 2011년부터 다년도 탑다운(top-down)방식의 예산편성제도 실시

- ① 2011~2013년간 세입전망 및 각 분야의 세출구조와 세출삭감정책을 포함한 중기재정 구조를 책정
- ② 각 연도의 예산요구 및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구조와 각 연도의 세입전망을 기본으로 실질적인 다년도 예산 편성을 실시
- ③ 중기재정구조는 국가의 재정활동을 포괄해야 하며, 중앙 및 지방 재정관계에 대해서도 재정규율의 강화 및 안정화 도모
- ④ 이러한 전제로서 중장기적인 재정규율 내용을 포함한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실시

□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용확보에 관한 검토회」 논점 정리 (2009.12.2) 발췌

원칙 3. 신중한 경제전망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의 책정

- 시장의 관점에서 ‘무한한 재정적자 확대 ·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불안’이 최대의 리스크이며 단년도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재정수지 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필요
- 신중한 경제전망을 전제로 세입 · 세출을 전망하고 시장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세입 · 세출 측면 모두에서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 목표달성의 실효성 확보, 경제위기 등에서의 단기적인 유연성 확보 등이 필요

실행 3. ‘재정운영전략’의 책정

- 2011년도 예산 이후 신중한 경제전망에 근거하는 중장기적인 재정규율 내용을 포함한 ‘재정운영전략’을 책정하고 이와 동시에 경제상황 고려, 시기별 목표, 재정의 질적 변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
- 이를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의 명목GDP 대비 비율 등의 지표를 착안하는 동시에 미국의 「Pay-As-You-Go(PAYGO)」²⁵⁾, 영국의 「Golden Rule」²⁶⁾, 「Sustainability rule」²⁷⁾, EU의 「Sustainability Gap Indicator」²⁸⁾ 등과 같은 해외사례 참조

원칙 4. ‘중기재정구조’의 설정

- 전술한 ‘재정운영전략’의 전제로서 2011~2013년도의 세입전망 및 각 분야의 세출 구조 및

삭감을 포함하는 '중기재정구조'를 책정하고 실질적인 다년도 예산편성을 실시

- 중앙 및 지방의 재정관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조내에서 조정하여 재정규율 강화 및 안정화를 도모

□ 「예산편성의 기본방침」(2009.12.15, 각의결정) 발취

5. 예산편성과정의 쇄신

(3) 예산편성개혁

- 신정권은 예산편성·집행 프로세스 자체를 개혁하고, 중장기적인 예산의 효율화·건전화의 구조를 수립
 - 이에 따라 「예산편성 등 본연의 자세의 개혁에 대해서」(2009.10.23, 각의결정) 등에 근거하는 개혁 실현을 위해 노력
 - 특히, 정책평가나 시책의 효과와 같은 객관적인 검증을 예산편성에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국가전략실이 지침을 부여
-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다년도 「중기재정구조」를 수립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재정규율을 포함하는 「재정운영전략」을 책정하고, 재정건전화의 로드맵을 제시
 - 이 때,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① 구조적 재정적자 해소, ②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안정화를 고려하여 검토 실시

- 25) 「Pay-As-You-Go(PAYGO)」는 신규 시책이나 제도 변경에 의해 의무적 경비(의료급부, 연금 등)를 증가시키거나 감세를 행할 경우 동일연도내에 그 세출증가나 세입감소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삭감 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제도. 한편, 충분한 삭감 또는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무적 경비에 대한 일률적 삭감이 실시됨.
- 26) 「golden rule」은 경기순환에 따라 공적부문의 차입을 투자목적으로 한정하고, 투자적 지출(공공사업비, 출자금 등) 이외의 경상적 지출(사회보장비, 이자지불비용, 인건비 등)은 세입 등의 경상적 수입에 의해 조달한다는 재정준칙.
- 27) 「sustainability rule」은 경기순환에 따라 공적부문의 GDP 대비 순채무잔고를 안정적인 수준인 40% 이하로 전환시킨다는 재정준칙
- 28) 「Sustainability Gap Indicator」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산된 ①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경제수렴 기준(stock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 60%를 2050년에 달성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수치 개선폭과, ② 향후 GDP 대비 국가채무를 현시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필요로 하는 수치 개선폭의 2개 지표로 구성

〈참고 3〉 일본의 과거 중기재정구조의 논점 정리

구분	구조개혁 및 경제재정의 중기전면: (2002.1.29)	경제재정개편의 기본방침 2006: (2006.7.7)	경제재정개편의 10년 전망: (2006.11.9)	경제재정개편의 기본방침 2009: (2009.6.23)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등	<p>【중용적·지속가능한 재정으로의 전환】 2010년초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중립화,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 행정사업의 효율화, PF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구조개혁 추진을 통하여 세출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세출 억제 실시 - 중앙 및 지방의 이러한 대지를 통해 긴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 - 「개혁과 전망」 기간 동안 정부규모(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 	<p>【재정간전화 제기(07~10년초) 제기(11~06)와 유사한 정도의 재정간전화 노력을 지속하고 2011년도에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한 기초재정수지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중앙 및 지방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정자립을 추진 -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과 함께 세출억제를 기본으로 세출성장을 단행하고, 세입측면에서는 일반재원의 소요 증액을 확보하여 흑자기조를 유지 <p>【재정간전화 제기(10초~10년중단)】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를 달성한 후, 중앙 및 지방에서 수지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안정한 흑자목표 확보</p>	<p>【기초재정수지의 동향】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화로 경제 및 세입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예외불하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까지 흑자화 목표의 전제가 되었던 세입개혁은 사회보장개혁과 세입의 일체적 개혁 등을 검토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향후 「중기프로그램」에 따라 2010년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행 -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수지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당초 20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상황에 있음 	<p>【재정간전화 목표】 10년내에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하고, 이차비용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균형을 목표로 하여 수지개선 노력을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먼저 경기를 회복시켜 5년 이내에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경기대역의 부른 제외)의 GDP 대비 비율을 반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9년도 세계개편을 통해 세계의 발전개혁을 실시하고 사회보장기금의 강화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구제하여 나감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	-4.3 (2001년도)	-3.3 (2005년도)	-3.4 (2008년도)	-3.9 (2008년도)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1년도, %)	-3.8 (2002년도)	-2.8 (2006년도)	-4.2 (2009년도)	-8.1 (2009년도) (경기대책 제외시 -5.7)
GDP 대비 국가채무의 안정적 인하	<p>「개혁과 전망」 대상기간 이후에도 그 기간과 동일한 정도의 재정수지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민간수요증신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계속된다고 전제하면 2010년 초 기초재정수지가 흑자화를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의 중앙도 관리인원이 계속 되면 비슷한 시기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 	<p>【재정간전화 제기(2010초~2010년중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의 증가 억제 및 안정적 인하를 확보</p>	<p>중앙 및 지방의 GDP대비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인하를 확보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구적 중요하, 조속된 「단기(0)제기」 모두 연금수급자가 되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절한 경제재정운영을 해나갈 것임</p>	<p>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간전화를 목표로 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10년대 중반에 걸쳐 적어도 안정시키고 2020년대 초까지 안정적으로 인하</p>
기간	5년(2002년도 ~ 2006년도)	-	향후 10년전망	2008년도~2023년도
대상기간	2001년도~2006년도, 2010년도	-	2008년도~2018년도	2008년도~2023년도
시신의 전제	<p>기초연금규모가 1/2와 1/3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지출: -3% - 인건비: 인원수 -0.5% - 사회보장비용: 의료제도개혁(2001.11.29) - 물건비: -1% - 기타 일반세출: 물가상승률 	<p>향후 5년간 세출개혁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2011년까지 - 재정간전화를 전제한 명목성장률 3% - 5년간 중앙 및 지방의 세출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1.6조엔 · 공공투자: -5.6~3.9조엔 · 기타: -4.5~3.3조엔 · 합계: -14.3~11.4조엔 - 목표달성을 위한 규모(16.5조엔)과 세출삭감에 의한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계개혁으로 대응 	<p>【비교시신】 「기본방침(2006)에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소수확보/침체지속(근원 회복) - (사회보장) 사회보장가능강화(기초연금규모부담 1/2 + 차입증가) - (소비세) 유지(인상(3~7%)) - (세출) -14.3조엔 삭감+비사회보장지출 유지(-11.4조엔) 삭감+비사회보장지출 증가(물가상승률) 	<p>【중장기적 시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3.3~4.2 (2023년도) (세나리오별 전제) 0.7~1.2~1.9 (2023년도) (세나리오별 전제) -3.6 (2008년도) -3.0 (2009년도) -3.3 (2008년도) -3.3 (2009년도)
최종연도의 명목GDP 성장률(%)	3.0 (2010년도)	1.9 (2005년도)	1.3~2.9~4.1 (2018년도)	1.2~3.3~4.2 (2023년도) (세나리오별 전제)
최종연도의 실질GDP성장률(%)	1.9 (2010년도)	1.9 (2005년도)	0.6~1.2~2.2 (2018년도)	0.7~1.2~1.9 (2023년도) (세나리오별 전제)
(명목)11년도 전망	(기초연금규모부담 1/2 전제)	1.9 (2005년도)	-1.3 (2008년도)	-3.6 (2008년도)
(실질)11년도 전망	(기초연금규모부담 1/2 전제)	2.2 (2006년도)	0.1 (2009년도)	-3.0 (2009년도)
(명목)11년도 전망	(기초연금규모부담 1/2 전제)	3.2 (2005년도)	-0.8 (2009년도)	-3.3 (2008년도)
(실질)11년도 전망	(기초연금규모부담 1/2 전제)	0.0 (2002년도)	0.0 (2009년도)	-3.3 (2009년도)

본문 및 관련 자료

IV

영국 (FY2010-11: 2010. 4~2011. 3)

1. 세제개편

- 2010예산안(2010. 3. 24)에서 FY2014-15까지 세율인상을 통해 총 190억파운드의 세입 확보, 소규모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효율적인 재정지원책 마련을 골자로 관련 세제개편안 제시
 - 예산안 세제개편 내용은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으로 의회 제출(2010. 4. 1)

- (인지세) 2010.3.25 ~ 2012.3.24까지 2년간 생애첫주택구입 인지세 면제
 - 생애첫주택구입 인지세 면제 대상: 취득가 250,000파운드 이하
 - 취득가 125,000파운드 이하 인지세 면제(현행 유지)
 - 2010.4.6부터 취득가 100만파운드 이상의 주택구입에 대해 세율인상(현행 4%에서 5%로 확대)

- (법인세) 소규모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FY2010-11 소규모기업 법인세율을 FY2011-12까지 21%로 유지
 - 재정법 2009에서 소규모기업 법인세 인상(22%) 시점을 2010.4월 이후로 연기하였으나, Pre-budget 2009에서 2012.4월 이후로 인상시점을 연기함
 - 소규모기업의 세부담 감소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용 자산에 부과하는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를 2010.10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 2010.4.1부터 소규모기업의 연간투자공제 한도를 현행 5만파운드에서 10만파운드로 2배 확대
 - 2010.4.6부터 자본취득세의 주요세율 인상없이 기업가공제(entrepreneur's relief) 총 한도(lifetime limit)를 100만파운드에서 200만파운드로 확대

SECTION 2 >>

- (주류 및 담배세) 세입 증대의 일환으로 주류세 및 담배세 인상
 - 2010.3.29부터 과일주(cider)세율을 인플레이션에 추가하여 10% 실질 인상하고 맥주, 와인, 산업용주정(sprits) 등의 세율은 2% 실질 인상
 - 2010.3.24부터 담배세를 1% 실질 인상, 3,500만파운드의 세입 증가 추정

- (소득세) 고소득자 세율인상 및 세제지원 축소 예정대로 시행
 - 과세표준은 FY2009-10과 동일하고, 15만파운드 이상 소득에 대한 50%(배당소득 42.5%) 세율적용을 FY2010-11부터 시행
 - 개인소득공제액은 FY2009-10과 동일, 10만파운드 이상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공제 점진적 폐지 계획을 FY2010-11부터 시행
 - 고소득자 연금소득공제 제한 역시 2011년 4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 금융업계의 보너스 25,000파운드 초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추가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은행원천세(bank payroll tax) 예정대로 도입

- (저탄소 및 환경) 연료세, 자동차소비세, 쓰레기매립세 예정대로 인상
 - FY2010-11 연료세는 물가상승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
 -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여 리터당 2.76펜스 인상. 2010.4월 1페니, 2010.10월 1페니, 2011.1월 0.76펜스 인상
 - 2010.4.1부터 탄소배출량에 따른 과세구간의 격차 확대와 신규차량에 대한 초년도 세율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
 - 탄소배출량 141~150(g/km) 구간을 기준으로 과세구간 확대, 기준구간 세율 125파운드로 FY2009-10과 변동 없음. 초년도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
 - 기준 이하 과세율 인하, 배출량 131~140(g/km) 이하 구간 초년도 세율 0% 적용
 - 기준 이상 과세율 인상, 166~175(g/km) 구간 이상의 경우 초년도 세율을 표준세율보다 높게 설정
 - 2010.4월부터 법인차량 중 전기자동차 과세면제 및 전기 밴(van) 초년도 공제율 100% 적용
 - 2010.4월부터 5년간 법인차량 중 저탄소차량에 대한 세금을 절반으로 인하

- FY2013-14까지 매년 톤당 8파운드 인상하는 쓰레기매립세 표준세율(FY2010-11 톤당 48파운드)을 FY2014-15까지 확대 적용, 저세율(lower rate)은 FY2012-13까지 현행인 톤당 2.5파운드를 유지

2. 예산 및 결산

가. FY2010-11 예산안(2010. 3. 24)

1) 재정현황 · 예산보고서(FS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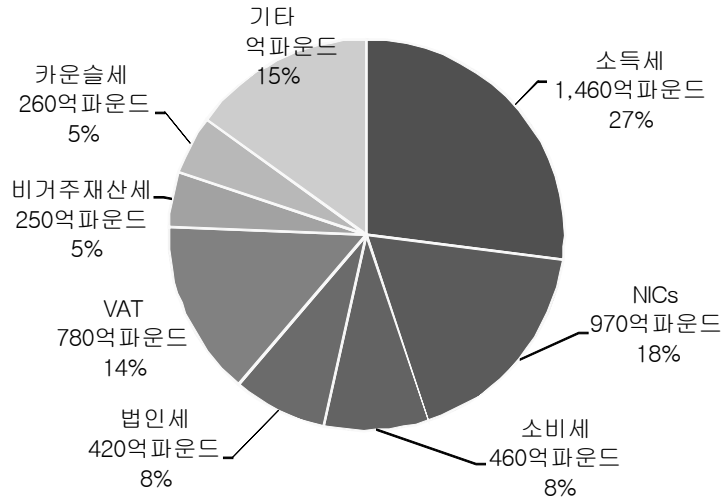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낙관적 경제성장 전망

- 2009년 경제성장률은 Pre-budget 2009 전망보다 0.5%p 악화된 -5%로 사상최저 성장률을 기록
- 재정정책 및 경기부양정책 효과로 2010년에 1.25%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이후 2011년 3~3.5%, 2012년 3.25~3.75%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2010년 2%, 2011년 1.5%, 2012년 2%로 예측
 - 4분기 기준. VAT 한시적 인하 종료 등의 효과로 2010년 1월 CPI는 3.5%까지 상승하였다가 2월 3%로 하락
- 구직수당 청구자수(JSA)는 2010년 중반 175만명으로 증가 후 2012년 말에는 125만명으로 감소 전망

□ FY2010-11 총세입은 Pre-budget 2009 예측치보다 105억파운드 증가한 5,408억파운드(GDP 대비 36.9%) 전망

- 2010.1월 신고분 소득세(경기침체기인 FY2008-09분)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3.2% 하락에 그쳤고, VAT 한시 인하조치로 인한 세입감소 규모도 예상보다 작았음
 - FY2009-10 총세입은 5,075억파운드(GDP 대비 36.1%)로 Pre-budget 2009 예측치보다 94억파운드 증가 전망
- 금융부문의 수익 상승으로 인한 법인세수 증가와 금융업종의 보너스 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도 세입예측치 상승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줌
- GDP 대비 세입비중은 FY2011-12 38.0%, FY2012-13 38.3%, FY2013-14 38.4%, FY2014-15 38.3%로 예년 수준 회복 전망
- FY2010-11 세목별 세입 비중

총 세입 : 약 5,410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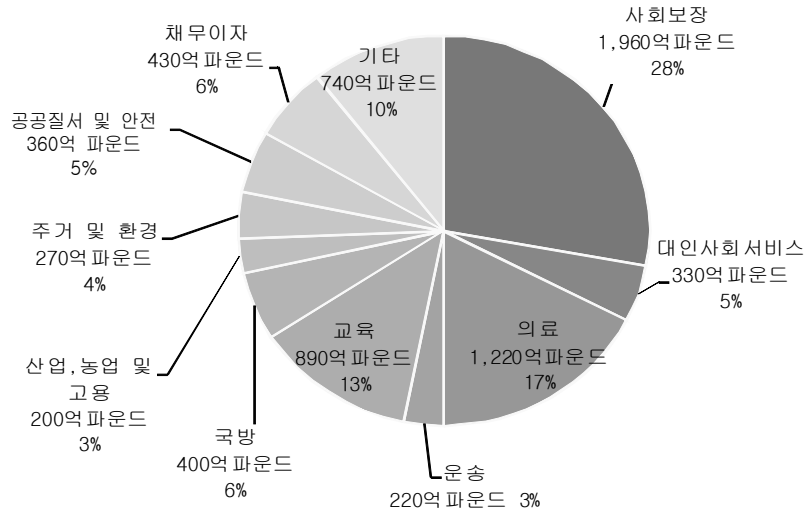
주: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총액과 각 분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HM Treasury, 『Budget 2010』 Chart 1.1

□ FY2010-11 총관리지출(TME)은 Pre-budget 2009 예측치보다 27억파운드 감소한 7,040억 파운드로 전망

- FY2009-10은 6,741억파운드로 Pre-budget 2009 예측치보다 16억파운드 감소 전망
 - FY2009-10의 경상지출은 Pre-budget 2009 예측치보다 24억파운드 낮게 전망, 그 이유는 공공부문 연금 순지출과 VAT 환급 비용 감소 예측에 있음
 - : 부처별지출한도(DEL)는 Pre-budget 예측치보다 8억파운드 증가, 법정지출성격의 연간관리지출(AME)은 24억파운드 감소 전망
- FY2010-11 TME 감소 전망은 채무이자비용 감소, AME 예비비(margin) 조정(10억파운드) 등에 기인
 - : DEL은 Pre-budget보다 7억파운드 증가, AME는 34억파운드 감소 전망
- FY2010-11 기능별 지출 비중

SECTION 2 >>

TME : 약 7,040억파운드



주: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총액과 각 분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HM Treasury, 『Budget 2010』 Chart 1.2

□ 공공부문 순차입(PSNB), 공공부문 순부채(PSND) 규모는 Pre-budget 2009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FY2009-10 1,665억파운드(GDP의 11.8%), FY2010-11 1,630억 파운드(11.1%)로 예측

– 지속적으로 차입규모를 축소하여 FY2014-15에는 GDP의 4.0%인 740억파운드로 감소 전망

– 차입의 축소 전망은 세입증가·지출감소에 따른 경상재정수지 개선 반영

: 경상재정수지를 FY2010-11에 GDP의 -9.3%에서 -8.4%로, FY2014-15에 -3.2%에서 -2.8%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규모(금융부문개입 제외)는 FY2009-10 GDP의 54.1%, FY2010-11 63.6%에서 FY2014-15 74.9%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FY2015-16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 Pre-budget에 비해 FY2010-11년 1.8%p, FY2014-15년 2.8%p 감소 전망

2) 경제·재정전략보고서(EFSR)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거시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표적화된 재정지원 등의 목표설정
 - 정부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정부(Smarter Government)’ 계획에 따라 110억파운드 예산삭감(cross-cutting savings)
 - 정책 효율화와 우선순위 재편을 통한 50억파운드 예산삭감의 구체적 방안 제시
 - FY2014-15까지 연료세, 주류세, 담배세 인플레이션 이상의 실질인상 유지
 -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 자원 확보와 세제혜택 강화, 청년일자리보장제도 기간 연장, 교통·도로정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성장지원전략 추진
 - 가계지원정책으로 1~2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연금수급가구에 겨울난방급여 추가지원, 인지세 면세 확대 등 제시

-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혁
 -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위험세(systemic risk tax)의 국제 협력체제 강화 등 원칙 수립
 - 금융기관 임금체계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은행원천세 도입을 비롯하여 보수 공개 강화 등 관련 규제 방안 마련
 - RBS, 로이드뱅크그룹에서 향후 12개월간 주택구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1,050억파운드 규모 대출
 - 이 중 410억파운드는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함

- 소규모기업(Small & Middle Enterprises)에 중점적인 기업지원방안 마련
 - Pre-budget 2009에서 발표한 납세연기서비스 유지, 법인세 인상 연기, 공자산울경감제를 예정대로 시행
 - 소규모기업의 은행대출 접근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소규모기업 신용 심사관’ 제도 신설
 - 저탄소기술을 상업화하는 소규모기업 지원 등 정부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성장

SECTION 2 >>

을 위한 재원조달(UKFG) 신설

- 민간회사인 Carbon Trust의 벤처자본 활동 4,500만파운드, 영국 혁신투자기금 1억2,500만파운드 등 포함
- 성장자본기금 포함 40억파운드 규모의 소규모기업 지원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
-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 감면의 한시적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
 - 2010. 10월부터 1년간 과세표준 6,000파운드 이하 면세, 12,000파운드 이하 감면

□ 취약계층 지원 유지 및 확대

- FY2012-13부터 2세 이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주 4파운드 인상하고, Pre-budget 2009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을 2011. 9월부터 시행
- FY2010-11 겨울난방급여 80세 이상 100파운드, 60세 이상 50파운드 추가 지급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Saving Gateway)을 2010.7월 도입
 - 저소득층 총 800만명을 대상으로 저축액 1파운드 당 정부보조 50펜스 제공
- 2011. 10월부터 지역주거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지급대상에서 상위 약 8%의 런던 고가주택임대를 제외
- 현행 6.08%인 모기지 이자의 동결 기간을 연장하여 2010.12월까지 적용
- 2010년 10월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5.93파운드(2.2% 인상) 적용
- 상속세 면제기준(325,000파운드) 동결기간을 FY2014-15까지 연장

□ 주요 공공서비스 유지와 공공서비스 효율화로 지출 절감

- Pre-budget 2009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요 일선 공공서비스는 실질적인 삭감 없이 유지
 - NHS 주요 지출은 물가연동으로 총액 증가, 교육 주요 지출은 실질 0.7% 인상
 - 경찰인력 등 공공서비스 인력 유지와 해외개발원조 규모 FY2013-14까지 유지
- FY2010-11 공공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FY2011-12부터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공공지출 삭감 등 긴축 강화
 - NHS는 FY2013-14까지 150억~200억파운드의 지출 절감을 목표로 FY2012-13까지

100억파운드 달성 계획

: 직원 생산성 향상 35억파운드, 장기환자 보호방식 변경 27억파운드, 지원부서비용 감축 및 병원자산 효과적 관리 20억파운드, 위탁(commissioning) 15억파운드 등 비용 절감

- FY2012-13까지 총 11억파운드의 교육 지출 절감 계획
- 경찰부문에서 FY2013-14까지 정보시스템향상전략 4억파운드, 근무배치전환 등 7천만파운드, 대국민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QUEST 효율화 프로그램) 5억파운드 등 지출 절감

□ 저탄소성장의 지속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투자 및 탄소배출 감축

- 저탄소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설립
 - 10억파운드의 저탄소 인프라 자산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설립하고, 향후 민간 투자 10억파운드 유치 계획
 - 재원은 저탄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제한
- 풍력제조 시설개발과 저탄소제조업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대 6천만파운드 지원
 - 저탄소분야에서 FY2015-16까지 120만개의 일자리창출 효과 기대, FY2008-09 약 91만명이 취업함
- 2020년까지 정부부처의 탄소배출을 30% 이상 감축
- 2010년 4월부터 5년간 탄소배출량 1~75CO₂/km의 저탄소 법인차량에 대한 세금 절반으로 인하

□ (참고) 2010 예산안 정책효과

SECTION 2 >>

(단위: 백만파운드)

주요정책	구분	FY2010-11	FY2011-12	FY2012-13
총재정정책 효과¹⁾		-1,415	150	705
기업지원				
자본취득세: FY2010-11부터 기업가공제한도 200만파운드로 증가	세입	-5	-75	-90
연간투자공제: FY2010-11부터 10만파운드로 증가	세입	-30	-120	-110
비거주채산세: 소규모기업 한시적 과세감면 인상	세입	-210	-205	5
비디오게임 산업 과세감면	세입	0	-40	-50
국세청: 소규모 및 중규모 기업 온라인 서비스 강화	지출	-20	-	-
소규모기업 신용 심사관(adjudicator)	지출	-5	-	-
대학 및 혁신 지원	지출	-385	-	-
운송 투자	지출	-385	-	-
BIS, DfT 지출우선순위 재조정	지출	230	-	-
DWP 지출우선순위 재조정: 청년일자리보장제도 확대 ²⁾	지출	475	-	-
가계지원				
연료세(Fuel duty)	세입	-550	0	0
ISA: FY2011-12부터 소비자물가지수(RPI) 연동	세입	0	*	-5
인지세(SDLT): 생애첫주택구입 한시적 면세	세입	-230	-290	-30
인지세(SDLT) 인상: FY2011-12부터 100만파운드 이상 5% 적용	세입	90	70	230
모기지 이차지원	지출	-165	-	-
주거급여(Housing benefit) 개혁 ³⁾	지출	0	-	-
사회보장관련 사기·오류지급 방지	지출	115	-	-
자녀세액공제(CTC): FY2012-13부터 1~2세 자녀 4파운드 추가 ⁴⁾	지출	0	-	-
근로세액공제(WTC): FY2010-11부터 적용확대(60세 이상)	지출	-10	-	-
연금수급자 가구 급여 관련: 80세이상 추가지급	지출	-600	-	-
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Saving Gateway) 지원	지출	-10	-	-
재정건전성 확보				
알코올세: FY2013-14~FY2014-15 세율인상 ⁵⁾	세입	0	0	0
과일주세: FY2010-11 세율인상	세입	15	15	15
담배세: FY2010-11~FY2014-15 세율인상	세입	35	95	155
연료세: FY2014-15 세율인상 ⁶⁾	세입	0	0	0
상속세: FY2011-12~FY2014-15 면제기준 동결	세입	0	35	110
조세회피방지 등				
리히텐슈타인 정보교환 협약	세입	40	320	140
이중조세감면을 약용한 조세회피방지	세입	0	75	80
Share Incentive Plans 약용방지	세입	20	20	20
증권거래 규정 간소화	세입	170	65	65
조세회피혐의거래 신고제도 강화	세입	25	50	50
인지세 감면 약용방지	세입	70	80	90
Mixed use assets: VAT 조치	세입	15	65	60
기부 및 신탁 세금감면: 수정분	세입	-15	-35	-60
VAT: 에너지 제품의 과세기준 공급장소(place of supply)	세입	-125	0	0

주: 1) 총재정정책 효과는 2009 Pre-budget 이후 발표된 정책을 포함. 표에 열거된 정책들은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표 수치 합계와 제시된 총재정정책규모는 일치하지 않음

2) FY2011-12년 청년일자리보장제도 확대적용 비용은 4억 5천만파운드

3) 정책예상효과는 5천만파운드

4) 정책예상 비용은 FY2012-13년에 1억 8천만파운드

5) 정책예상효과 FY2013-14년 1억 500만파운드, FY2014-15년 1억 9천만파운드

6) 정책예상효과 FY2014-15년 4억 2,500만파운드

출처: HM Treasury, 『Budget 2010』 Table 1.2

나. 추경

- FY2009-10 추경(spring) 발표 (2010. 2. 23)
 - 경상지출 약 5,024억파운드, 자본지출 약 5,181억파운드의 추경안 의회 제출
 - FY2009-10 11월 추경(2009. 11. 24)보다 경상지출 약 115억파운드, 자본지출 약 81억파운드 증액
 - 증액분 중 DEL 예비비 15억파운드(경상지출 10억파운드, 자본지출 5억파운드), AME 11억파운드, 차년도 이월금 22억파운드 요구
 - 주요 관리지출(control aggregates) 중 경상지출 약 93억파운드 증액, 자본지출 약 22억파운드 삭감
 - DEL에서 경상지출 약 44억파운드, 자본지출 약 16억파운드 증액
 - : 기업·혁신·기술부의 RfR3(교육·기술 개발 기회창출)에 약 12억파운드 증액
 - : 국방부의 RfR1(국방력 완비)에 약 14억파운드 증액 등
 - AME에서 경상지출 약 49억파운드 증액, 자본지출 약 38억파운드 삭감
 - 국민보험기금 등 직접 재원을 조달하는 중앙정부지출, 공기업 및 비부처공공기구의 경상소비지출 등은 세출예산안(추경안)의 DEL, AME에 포함되지 않음

- 세출예산법으로 승인(2010. 3. 18)
 - FY2009-10 11월 추경 증액분과 FY2008-09 초과지출분, FY2009-10 2월 추경 증액분 합계 경상지출 약 420억파운드, 자본지출 약 321억파운드 승인
 - FY2008-09 경상지출 약 239억파운드 초과지출분, FY2009-10 증액분의 총액 변동 없음
 - FY2009-10 11월 추경 증액분은 통합기금법(Consolidated Fund Act 2009. 12. 16)으로 총액 승인

다. 결산

- FY2009-10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서(end of year fiscal report)는 Pre-budget 2010과 함께 발표함(통상 11월)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²⁹⁾

-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승인(2010. 2. 10)
 - 주요 이행사항
 - FY2010-11~FY2015-16까지 공공부문의 GDP 대비 순차입 비중이 전년도 비중보다 낮아지도록 함
 - FY2013-14 공공부문 순차입 GDP 비중을 FY2010-11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킴
 - FY2015-16 공공부문 순부채 GDP 비중을 FY2014-15 비중보다 낮아지도록 함
 - 경과·이행 보고서
 - 이행사항의 경과를 예산안 경제·재정전략보고서 또는 Pre-budget 보고서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회 제출
 - 보고서 내용과 형식에 대한 규정은 재정안정화 준칙(The code for fiscal stability: 2010.1 업데이트)에 따름
 - 보조입법(행정명령 : The Fiscal Responsibility Order 2010)을 함께 제출, 현재 의회 계류중
 - FY2013-14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목표치를 5.5% 이하로 명시
- 중기재정계획(FY2011-12 ~ FY2014-15)
 - 세입 확보와 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을 통해 재정책임법의 목표 달성 전망
 - FY2014-15 경상세입의 GDP 비율은 FY2009-10 추정치에 비해 2.2%p 증가, FY2014-15 경상세출 비율은 FY2009-10 추정치에 비해 3.2%p 감소 계획
 - 공공부문 순투자 및 순부채 비중을 지속적으로 억제

29) 영국 정부는 2010년 1월 28일 EU에 중기재정계획(Convergence Programme for the UK)을 제출하였으나, 2010년 3월 24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중기재정계획 및 전망치를 업데이트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중기재정계획은 2010 예산안에 포함된 중기재정전망 및 현재 진행상황을 토대로 작성함.

〈표 2-Ⅳ-1〉 영국 공공부문 중기재정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FY 2008-09	FY2009-10 추정	전 망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경상예산							
세입(A)	533.5	507.5	541.0	582.0	621.0	660.0	699.0
(GDP, %)	(37.2)	(36.1)	(36.9)	(38.0)	(38.3)	(38.4)	(38.3)
세출(B)	563.7	604.6	644.0	662.0	682.0	703.0	725.0
(GDP, %)	(39.3)	(43.0)	(44.0)	(43.2)	(42.1)	(40.9)	(39.8)
감가상각(C)	18.7	19.5	20.0	21.0	22.0	23.0	24.0
(GDP, %)	(1.3)	(1.4)	(1.4)	(1.4)	(1.4)	(1.4)	(1.3)
경상재정수지 (D=A-B-C)	-48.9	-116.6	-124.0	-102.0	-84.0	-67.0	-51.0
(GDP, %)	(-3.4)	(-8.3)	(-8.4)	(-6.6)	(-5.2)	(-3.9)	(-2.8)
자본예산							
총투자(E)	65.9	69.5	60.0	51.0	48.0	45.0	47.0
(GDP, %)	(4.6)	(4.9)	(4.1)	(3.3)	(3.0)	(2.6)	(2.6)
공제감가(F)	-18.7	-19.5	-20.0	-21.0	-22.0	-23.0	-24.0
(GDP, %)	(-1.3)	(-1.4)	(-1.4)	(-1.4)	(-1.4)	(-1.4)	(-1.3)
순투자(G=E+F)	47.2	50.0	40.0	29.0	26.0	22.0	23.0
(GDP, %)	(3.3)	(3.6)	(2.7)	(1.9)	(1.6)	(1.3)	(1.3)
순차입(H=G-D)	96.1	166.5	163.0	131.0	110.0	89.0	74.0
(GDP, %)	(6.7)	(11.8)	(11.1)	(8.5)	(6.8)	(5.2)	(4.0)
공공부문순부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617.0	776.6	952.0	1095.0	1218.0	1320.0	1406.0
(GDP, %)	(43.8)	(54.1)	(63.6)	(69.5)	(73.0)	(74.5)	(74.9)
일반정부기준 순차입	96.7	171.5	164.0	132.0	111.0	91.0	77.0
(GDP, %)	(6.7)	(12.2)	(11.2)	(8.6)	(6.9)	(5.3)	(4.2)
일반정부기준 순부채	796.9	1004.1	1179.0	1319.0	1438.0	1535.0	1618.0
(GDP, %)	(55.5)	(71.4)	(80.5)	(86.0)	(88.7)	(89.2)	(88.7)

자료: UK Treasury, 『Budget 2010』 Table C3, Table C4

- FY2014-15까지 지출 총 380억파운드 감축, 세입 총 190억파운드 인상 계획

SECTION 2 >>

〈표 2-Ⅳ-2〉 2010 예산안 지출감축, 세입확보 계획

지출 삭감	공공부문 지출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및 공공부문 연금개혁 등 FY2012-13까지 공공부문에서 200억파운드 삭감 ○ FY2011-12, FY2012-13 공공부문의 임금상승률을 1% 이하로 통제하여 연간 34억파운드의 지출 억제 ○ 공공부문 연금의 고용주 기여제한을 통해 FY2012-13부터 연간 10억파운드 절감 ○ 5년 이내에 공무원(런던) 15,000명 인원감축
	정책우선도가 낮은 50억파운드 지출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제도 및 법률구조 개혁 3억 6천만파운드 ○ 주택정책 3억4천만파운드, 지역개발청 3억파운드 ○ 아동·학교·가족부(DCSF) 3억 5천만파운드 ○ 교통할인(노인, 장애인 등)제도 개선 1억 8천만파운드 ○ 해외출장비 등 직원수당 삭감 및 폐지 1,300만파운드 ○ 주택급여 3,500만파운드, 지역사회부(CLG) 1억 6천만파운드 등
	복지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유인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복지제도 개혁으로 향후 5년간 총 12억파운드 삭감
	FY2012-13까지 공공부문 및 중앙정부 효율화로 110억파운드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억파운드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해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교·가족부(DCSF) 6억 5천만파운드 - 국방부(MoD) 5억 5천만파운드 - 국세청(HMRC) 2억 3,600만파운드 - 노동·연금부(DWP) 4천만파운드 등 ○ 나머지 30억파운드는 컨설팅, 홍보, IT 프로젝트, 공공부문임금 삭감과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달성
	정부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자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을 2011년 4월까지 마련하여 자산운영비용을 연간 50억파운드 절감하고 2020년까지 자산처분을 통해 200억파운드 절감
세출 인상	고소득자 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0-11부터 고소득자 소득세 50% 추가세율 적용, 10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의 인적공제 제한 ○ FY2011-12부터 13만파운드 이상 연금공제 축소, NICs 기여금 1% 인상
	연료세, 주류 및 담배세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4-15까지 매년 인플레이션에 추가하여 연료세 리터당 1페니 인상 ○ FY2014-15까지 주류(2%, 10%) 및 담배세(1%) 실질 인상
	조세회피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회피방지정책 입법화를 통해 15억파운드 세입 증대 ○ FY2012-13까지 추가로 40억파운드 확보 예상

자료: UK Treasury, 『Budget 2010』에서 관련내용 발췌 정리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예산안 2010의 지속적 성장촉진 정책
 -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UKFG)' 개시로 소규모기업 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
 - RBS와 로이드뱅크그룹을 통해 소규모기업에 신규대출 410억파운드 확보
 - 납세연기서비스 유지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비거주재산세 감면 한시적 확대, 연간 투자공제와 기업가공제 한도 2배 인상 등 세제지원 강화
 - 기술 및 혁신에 대한 투자
 - 비디오게임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계획
 - 대학 현대화기금 2억 7천만파운드 투입, 2010년 9월에 추가 2만개의 교육훈련(student places) 개시
 - 10억파운드 규모의 녹색투자은행 신설, 가속개발구역(Accelerated Development Zone) 프로그램에 1억 2천만파운드 투입, 교통 및 지방도에 대한 추가 1억파운드 재원마련, 도로네트워크 구축에 2억 5천만파운드 지원 등 인프라 투자
 - 2012. 3월까지 청년일자리보장제도 확대 시행에 4억 5천만파운드 지원

다. 기타 정책이슈

1) 기업지원 정책

- 약 3,000개 소규모기업에 7억파운드 대출 승인(2010. 2. 2)
 - Pre-budget 2008에서 2008~2011에 걸쳐 소규모기업의 자금유통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을 통한 40억파운드 대출지원 발표
 -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기업 지원정책 실적
 - 13억파운드 규모의 기업금융보증제도(Enterprise Finance Guarantee Scheme)를 통해 7,500여개 기업이 약 7억 6,300만파운드를 지원받음
 - 7,400만파운드의 기업자본기금(Capital for Enterprise Fund)을 통해 소규모기업의 투자형평성 제고

SECTION 2 >>

- 납세연기서비스를 통해 16만개 이상 소규모기업에 총 45억파운드의 세금납부 부담을 분산

2) 가계지원 정책

- 2010.4월부터 어린이신탁펀드에 장애아동 추가지원 (2010. 3. 18)
 - 장애아동에 대해 연간 100파운드 추가 지원, 중증 장애아동은 연간 200파운드 추가 지원
 - 약 4만명의 중증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약 9만명의 장애아동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됨

3) 조세회피방지

- 조세회피방지정책 입법화를 통해 15억파운드 세입 증대, FY2012-13년까지 추가로 40억 파운드 확보 예상 (2010. 3. 24 예산안 2010)
 - 조세회피 적발시 부과하는 가산세 인상, 조세회피혐의거래 대상으로 규정된 특성 (hallmarks)에 '추가소득세율(50%) 적용 회피'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세회피혐의거래 신고제도(DOTAS) 강화
 - 해외탈루 적발시 가산세 최대 200% 부과 및 정보교환 협약 체결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과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보교환 협약 체결, 약 9억 4천만파운드 확보 예상
 - 추가로 도미니카(Dominica), 그레나다(Grenada), 벨리즈(Belize)와 정보교환 협약 추진중
 - 스톡옵션제도(Company Share Option Plan: CSOP)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CSOP에 자회사 주식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
 - CSOP 조세감면한도는 종업원 1인당 3만파운드 유지
 - 그 외 인지세 감면을 악용한 조세회피방지대책 발표, 보험료세 회피방지 등 즉시효력을 가진 다수의 입법조치 발표

4) 공공서비스 개선

- 새로운 Moneymadeclear(재정상담) 무료 서비스 개시(2010. 3. 11)
 - 인터넷과 전화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긴급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대인 서비스 실시
 - Pre-budget 2009(2009. 12. 9)에서 Moneymadeclear 서비스에 FY2010-11까지 2천만파운드의 정부재원 투입과 향후 1억파운드 규모의 지원을 발표함

5) 아동빈곤대책

- 아동빈곤 퇴치를 위한 2020 장기전략(Ending child poverty: mapping the route to 2020) 발표 (2010.3.24)
 - 2020년까지 빈곤아동 비율을 상대적 빈곤 10% 이하, 절대적 빈곤 5% 이하로 축소시키는 등 장기적 목표 제시
 -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빈곤아동의 향후 소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 아동의 교육, 건강 등 주변환경개선 전략과 함께 부모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취업 및 기술훈련, 재정적 지원을 병행
 - 청소년 교육·직업훈련 지원, 무료급식 지원, 모성지원 일시보조금(190파운드) 지급, 주거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정부대책 추진
 - 2010년 말까지 400억파운드의 주거개선사업 시행(현재까지 사업 92% 완료), 2011년까지 2억 3,500만파운드를 투자하여 놀이시설 등 개선
 - 장기전략으로 영유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의 학생책임지도제 강화, 교육·직업훈련 확대, 부모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목표 제시

SECTION 2 >>

- 빈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pupil premium’ 도입-자민·보수당 선거공약 (2010. 3. 2)³⁰⁾
 - ‘pupil premium’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교육불이익 승인 방식으로 공립학교에 일정한 초과재원을 분배하는 제도
 - 재원마련방식에 있어 보수·자민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함
 - 자민당(Liberal Democrat Party): 평균소득 이상인 가구에 대한 세금공제 축소와 다른 분야의 지출삭감을 통해 별도 재원마련
 -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중앙정부의 단일한 재원마련공식에 의해 지원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정부가 대체, 학교예산 5% 이상 삭감과 예산증액제한(15%)으로 5년 이상의 재원마련(2010년 기준 연간 7,500만파운드)을 주장

6) 기타 조세정책

- (자원개발 지원) 천연가스 발생지(gas field) 조세감면 확대 (2010. 1. 27)
 - 서(西)서틀랜드제도 천연가스 발생지별 연간 최대 1억 6천만파운드 조세감면 시행
 - 개발 후 5년 이상 조세감면을 적용하고 최대 감면액은 8억파운드로 설정
 - 진행중인 발생지 개발(Laggan/Tormore 프로젝트)이 성공할 경우 연간 최대 3억 2천만파운드 조세감면 예상
 - 보조입법(행정명령 : The Field Allowance for New Oil Fields Order 2010)으로 승인 (2010.3.4)

30) 출처: Institute for Fiscal Study(IFS, <http://www.ifs.org.uk/>)

V

프랑스 (FY2010: 2010. 1~2010. 12)

1. 세제개편

- 금융기관 종사자 보너스에 대한 과세³¹⁾(2010년 3월 10일)
 - 1차 수정예산안(PLFR)의 내용을 원안 그대로 반영하여 입법
 - 대상: 금융기관 종사자 중 회사의 리스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및 이들을 관리하는 자
 - 기준: 기본급을 제외하고 연 27,500유로 초과 보수에 대하여 50% 세율로 과세
 - 스톡옵션 등 유가증권 형태인 경우 지급일 시가 기준

- EU 국가 간 서비스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 변경³²⁾ (2010년 1월부터)
 - 목적: 서비스 산업의 경쟁 왜곡 방지, 부가가치세 관련 시스템의 선진화 및 간소화, 조세회피 방지
 - 내용
 - 종전: 설령 다른 EU 국가에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프랑스에 부가가치세 납부
 - 개정: 소비자 소재지인 국가에 부가가치세 납부. 단, 공급자, 소비자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며, 공급자(개인 또는 법인)의 국적에 따라 국가간 청산 절차가 수반됨
 - 법적 근거: EC의 Directive 및 규정³³⁾에 의거하였으며(FY2009년 12월 16일), 이것이 프

31) FY2010 1차 수정예산(LFR: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10) (2010. 3), Article 2,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1943745&fastPos=2&fastReqId=477209322&categorieLien=id&oldAction=rechTexte>

32) www.impots.gouv.fr

33) 2008/8/EC(서비스 관련 세제 개편), le règlement no. 143/2008 (회원국 간 정보교환 관련 규정), Directive 2008/117/EC (EC 내 거래 관련한 조세회피 방지), le règlement no. 37/2009 (le

SECTION 2 >>

랑스 법³⁴⁾에 반영되었고(2009년 12월 30일) 2010년 중에 le code général des impôts 2010에 통합될 예정

→ 이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 거래한 외국 기업에 대한 환급절차가 필요. 해당 기업이 자국의 관련 부서에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하면 그것이 프랑스의 La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GFIP)으로 전달되어 이루어짐

règlement no. 1798/2003의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적 협력에 대한 내용 수정) 등
34) FY2010 본예산(LFI: Loi de Finance Initiale pour 2010) Article 102.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1557902&fastPos=1&fastReqId=1453912826&categorieLien=id&oldAction=rechTexte>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FY2010 1차 수정예산안(PLFR, 2010년 1월 29일 발표)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2010년 2월 25일, 찬성 186: 반대 153)되어 1차 수정예산(LFR)이 발표됨(2010년 3월 10일)
 - 미래투자계획: 4개분야(고등교육, 연구개발투자, 중소기업 및 산업투자, 지속가능발전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에 350억유로 투여³⁵⁾

- 본예산(LFI) 및 1차 수정예산안(PLFR)과 비교한 1차 수정예산(LFR) 분석 (일반회계)
 - 재정수지 분석
 - 당초 1차 수정예산안(PLFR)에서는 본예산(LFI)의 수입 및 지출 규모 조정
 - 이에 대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입은 1차 수정예산안(PLFR)에 비해 약 9천만유로 감소한 약 33억유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지출은 약 3억 6천만유로 줄어든 약 340억유로 증가로 최종 결정됨
 - 이는 수입 면에서 기타세입 증가 여력이 1차 수정예산안(PLFR) 전망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지출 면에서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관련 지출 규모가 삭감되었기 때문
 - 이에 따라, 일반회계 재정수지와 총재정수지 역시 각각 약 309억유로, 약 319억 유로 악화된 약 1,527억, 약 1,490억유로 적자를 시현할 전망

35)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1호 참고

SECTION 2 >>

〈표 2-V-1〉 FY2010 예산과정에서의 재정지표 변화

(단위: 백만유로)

	본예산 (A)	수정예산안 조정규모 (B)	수정예산 조정규모 (C)	조정규모 차이 (C-B)	최종 (A+C)
수입 ¹⁾	270,219	3,425	3,335	-90	273,554
지출	392,368	34,291	33,931	-360	426,299
일반회계 재정수지	-122,149	-30,866	-30,596	270	-152,745
특별회계 재정수지	4,779	-1,000	-1,000	0	3,779
총재정수지	-117,369	-31,866	-31,596	270	-148,965

주: 1) 세금 환급분 제외

자료: 본예산(LFI) 및 1차 수정예산(LFR)

○ 재정수입 분석

- 당초 1차 수정예산안(PLFR)에서는 일부 재정수입 항목에 대해 본예산(LFI)보다 긍정적으로 전망,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의회 심의를 거친 1차 수정예산(LFR)에서는 세입 증가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즉, 1차 수정예산안(PLFR)이 기타세입에서 1억 2천만유로의 추가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데 비해, 1차 수정예산(LFR)은 3천만 유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봄
- 전체적으로 본예산(LFI)보다 약 21억유로 증가한 2,594억유로의 재정수입을 전망

〈표 2-V-2〉 FY2010 1차 수정예산(LFR)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구분	본예산 (A)	수정예산안 조정규모 (B)	수정예산 조정규모 (C)	최종 (A+C)
세입 (1) ¹⁾	252,062	1,214	2,318	254,380
세외수입 (2)	15,035	1,017	1,017	16,052
소계 (1+2)	267,097	2,231	3,335	270,432
기금 (3)	3,122	0	0	3,122
총재정수입 (1+2+3)	270,219	2,231	3,335	273,554

주: 1) 세금환급분 제외

○ 미션/프로그램별 지출³⁶⁾ 분석

- 당초 1차 수정예산안(PLFR)에서 본예산(LFI)의 미션/프로그램별 지출의 규모를 조정
- 이에 대한 의회 심의 결과, 1차 수정예산(LFR)에서 최종 결정된 추가 승인 규모는 약 350억유로, 불승인 규모는 약 18억유로이며, 미션/프로그램별 조정 규모는 상이(〈표 2-V-3〉 참고)
 - 1차 수정예산안(PLFR)의 조정안과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³⁷⁾에 대한 추가 승인 규모가 3억 6천만유로 삭감된 21억 4천만유로로 확정된 것 외에는 변동사항 없음
 - 본예산(LFI)와 비교해 보면, 환경친화·지속가능개발, 산업 및 기업 지원, R&D 및 고등교육 관련 미션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추가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차 수정예산안(PLFR) 및 1차 수정예산의 미래투자계획 관련 기초 변화를 반영

(특별회계)

- 본예산(LFI)의 특별회계 수입은 약 766억유로, 지출은 722억유로(원조, 산업/무역 지원 및 자금운용 관련 수지 제외)
- 이에 대해 1차 수정예산(LFR)에서 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에 총 29억 4천만유로 추가 지원. 그러나 이 역시 1차 수정예산안(PLFR)보다 3억 6천만유로 감소한 규모임

36) 〈표 2-V-1〉의 일반회계 지출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기금지원 공제, EU 지원금 및 세금환급분 재산입 등)

37) 〈표 2-V-3〉의 산업 및 기업지원 세부항목. 표에는 1차 수정예산안(PLFR)과 1차 수정예산(LFR)의 차이는 생략

SECTION 2 >>

〈표 2-V-3〉 FY2010 1차 수정예산(LFR) 미션별 지출규모

(단위: 백만유로)

미션	본예산 (A)	수정예산 조정분 (B)	최종 (A+B)
외교	2,624	-14	2,611
일반공공행정	2,596	-15	2,581
농림수산업	3,610	434	4,044
공공보조(저소득층 및 이민자 지원)	3,515	-23	3,491
퇴역군인 지원	3,431	-2	3,428
위원회 및 감독기관	571	0	571
문화	2,924	-3	2,922
국방	37,145	-57	37,088
국가정책방향 (정책통합·자유 및 권리보호·EU 내 프랑스 지위 확보 등)	553	-5	548
환경친화·지속가능개발	10,144	3,487	13,630
산업 및 기업 지원	1,934	6,622	8,556
공적금융(국채이자상환, 보증 및 연금 등)	44,157	496	44,653
교육	60,816	485	61,302
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11,564	-59	11,505
이민자 및 난민 통합	557	0	557
법무부	6,844	-25	6,819
언론	1,143	-14	1,129
해양개발	2,023	0	2,023
위기대응정책	4,102	0	4,102
균형발전정책	376	-7	369
국가기관	1,018	0	1,018
비상대비	59	0	59
R&D 및 고등교육	24,764	21,775	46,539
은퇴자 지원	5,727	0	5,727
지방재정 지원	2,624	0	2,624
세금환급 및 면세	94,208	-1,194	93,014
건강복지	1,198	-13	1,185
치안	16,384	-28	16,356
시민안정(자연재해 등)	456	-4	452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12,291	-61	12,230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855	-7	848
노동 및 고용	11,403	494	11,897
건설 및 주택	7,806	477	8,283
합계	379,421	32,737	412,158

자료: FY2010 본예산(LFI) 및 1차 수정예산(LFR)

나. 추경

- 그리스 재정위기 지원을 위한 2차 수정예산(PLFR) 발표 (2010년 4월 21일). 상세 내용은 <3. 정책적 이슈, 다. 기타 정책이슈> 참고

다. 결산

- FY2009 프랑스 결산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FY2010-FY2013 재정안정화계획의 전년도 평가 및 통계청 국가재정통계³⁸(Comptes nationaux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 année 2009, 2010년 3월 31일)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개괄
 - (재정수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FY2009 재정적자는 약 1,448억유로로 GDP 대비 7.5%
 - FY2009년 647억유로(GDP 대비 3.3%)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경제위기로 인해 수입이 감소(▲4.3%p)하고 지출이 증가(3.8%p)한 재정상황을 반영
 - 그러나 FY2010-FY2013 재정안정화계획(2010년 2월)의 추정치인 GDP 대비 ▲7.9%보다는 개선된 수치임
 - 이는 당시 예상보다는 재정수입 상황이 나은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었기 때문
 - (국가부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FY2009 국가부채는 약 1조 4,890억유로로 GDP 대비 77.6%임
 - FY2009년 1조 3,151억유로(GDP 대비 67.5%)에 비해 약 1,739억유로 증가한 것으로, FY2008의 전년 대비 증가폭인 약 1,062억유로보다도 큰 폭임
 - 군비지출과 위기로 인한 자동차산업 관련 지원 및 사회보장기금 관련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가 주요 요인
 - 반면, FY2010-FY2013 재정안정화계획의 추정치인 GDP 대비 77.4%와 거의 일치

38) 예산안보다 범위가 넓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예산 및 공공부문을 포괄하며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을 준수

SECTION 2 >>

※ 이에 앞서 FY2010-FY2013 재정안정화계획은 FY2009-FY2012 재정안정화계획 (2008년 12월 발표)과 비교하여, FY2009 이후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가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추정(전망)한 바 있음(〈표 2-V-8〉 참고). 그러나 적어도 FY2009 재정수지에 한해서는 지표가 악화되지 않았음

○ (수입) FY2009 수입은 약 9,223억유로로 전년 대비 감소(▲4.3%)

– 경제위기 및 위기대응정책으로 인해 조세수입, 특히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세입이 큰 폭(전년 대비 ▲16.6%)으로 감소했기 때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감소했으며 사회보장기금수입은 증감없음

○ (지출) FY2009 지출은 약 1조 678억유로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는 등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사회보장지출이 전년 대비 5.7% 증가하여 FY2008 전년 대비 3.6%에 비해서도 높은 변화율로 증가. 특히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한 지출증가는 전년 대비 9.9%에 달함

– 반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상환부담은 감소(▲15.1%)

〈표 2-V-4〉 FY2009 재정지표 기관별 실적치 및 전망치

(단위: 십억유로, %)

연도	FY2008		FY2009				증감 (A/B)
	통계청 (실적)		통계청 (실적)		FY2009-2012 계획 (추정)	FY2010-2013 계획 (추정)	
기관/자료	통계청 (실적)		통계청 (실적)		FY2009-2012 계획 (추정)	FY2010-2013 계획 (추정)	통계청
구분	절대액(A)	GDP 대비	절대액(B)	GDP 대비	GDP 대비	GDP 대비	
총수입	963.9	49.5	922.4	48.1	49.6	47.7	-4.3
총지출	1,028.9	52.8	1,067.8	55.6	53.5	55.6	3.8
재정수지	-64.7	-3.3	-144.8	-7.5	-3.9	-7.9	123.8
국가부채	1,315.1	67.5	1489	77.6	69.1	77.4	13.2

자료: 통계청, FY2009-2012 재정안정화계획, FY2010-2013 재정안정화계획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EU 지역의 회원국은 매년 12월 1일까지 유럽 경제금융이사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COFIN)에 중기 재정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을 보고하게 되어 있음³⁹⁾
 - 프랑스의 경우 2010년 2월 2일 자료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4. EU 국가의 재정안정화 참고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2009-2010 위기대응정책 (Plan de Relance)⁴⁰⁾ 집행실적 및 향후 계획
 - 2010년 3월 31일 현재 총 388억유로 중 약 333억유로 집행
 - 2010 본예산에서 명시한 지출 중심으로 현행 정책 수단을 연장, 잔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

39)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sgp/index_en.htm

40) 『재정동향』 제1호, pp.176~177 참고

SECTION 2 >>

〈표 2-V-5〉 위기대응정책 2009년 집행실적 및 2010년 계획

	2009 집행실적 (2010년 2월 3일 현재) ¹⁾	2010 집행계획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사회보장부담금 감면 정책으로 약 85만여개 고용 창출 고용촉진기금(FISO) 통한 약 8억 5천만유로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HO 고용촉진보조금 기한 연장 (2010년 6월 30일까지) 고용촉진기금(FISO) 14억유로 지원 (2011년까지 총 27억유로 지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36억~41억유로 규모의 투자 지원으로 총 1,500여개 프로젝트가 확립되고 이 중 750여개는 만료 서비스부문 공기업에 25억유로 지원 부가가치세 보전 정책(FCTVA) 통해 총 540억유로 예산 중 420억유로를 투입, 15,540여 건 혜택 기업 연구개발 세제혜택, 세금환급 등에 150억유로 이상 투입, 당초 계획이었던 92억유로를 훨씬 상회 제로금리대출 63,523건에 총 23억유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 위한 제로금리대출 2배 확대
사회적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연대은행(OSEO) 통해 38억유로 이상을 16,837 여개 사업체에 지원 신차교체 지원 통해 60여만대의 신차 판매효과, 또한 저소득층 관련 세제혜택 및 보조금으로 30억유로 지원 13만여 채의 공공지원 주택(social housing) 건설 51백만 가구에 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RSTA 연장, 2억 8천만 유로 투입 공공지원 주택 지속 추진

주: 위기대응부, 위기대응정책 집행실적 핵심요약 (Exécution du Plan de Relance, Chiffres clés-Synthese) (2010. 3)
http://www.relance.gouv.fr/IMG/pdf/03.02.10_CHIFFRES_CLES_-_Point_d_etape_du_plan_de_relance.pdf
 자료: 위기대응부서 홈페이지, <http://www.relance.gouv.fr/index.php>

□ 국가총산업전략 (États Généraux de l'Industrie) 발표⁴¹⁾ (2010년 3월 4일)

- 대통령 주재로 국가총산업전략을 마련, 사회 각계를 포괄하는 경제사회조약을 확립, 이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마련
 - 2008년 금융위기가 실물부문과 분리된 경제발전모델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에서 출발
 - 정부(산업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관련 각 사회주체가 망라되어 실무진 구성
 - 주요 대상 산업은 자동차, 항공, 정보통신, 의료, 농업비즈니스 산업임

41) 대통령궁, 국가총산업전략 결의(Conclusion des Etats Generaux de l'Industrie) (2010. 3), http://www.industrie.gouv.fr/liste_index/archives_actus.html

<표 2-V-6> 국가총산업전략(ÉGI)

목표	- 다음 4개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 • 산업생산 25% 증가 • 장기산업고용 지속 • 지속가능한 무역수지 흑자로의 전환 • 유로지역 산업 부가가치의 2% 이상 달성	
	산업 프로젝트 추진	• 국가산업컨퍼런스 개최 • 유로 차원의 산업협정 추진 • 원산지 표시 책임 강화 • '산업주간' 설정 • 교육과 산업의 연계 강화 • 기업지배구조(공기업)를 통한 산업정책 역할 강화
전략	고용 및 노동경쟁력 강화	• 산업구조 재편과 고용 강화 • 시니어-주니어 연결 통한 산업관련지식의 효과적 전달 • 고용 및 경쟁력 강화 정책 통합 관리 • 평가방법 개선 및 공적 지원 조건의 효과 극대화
	산업구조 공고화	• 전략부문간 위원회 구성 • 하위계약 중재자 선정을 통한 부당계약 방지 • 지역산업구조관련 프로젝트 공모
	기업혁신 및 기업경쟁력 강화	• 녹색산업대출지원 • 규제 단순화 • 중소기업 관련 정보 및 지원 절차 통합 • 대학생 창업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세제혜택 유지 • 특히 획득 촉진을 위한 유인책 마련 • 투자기금 설립
	산업금융지원	• 저축 및 신용제공 • 위의 신용제공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방안 마련 • 위의 신용제공에 대한 금융위기 위험관리

□ 제 9차 경쟁력 클러스터(Pôles de compétitivité) 지원⁴²⁾ (2010년 3월 8일)

-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연구개발분야 프로젝트를 심사 및 지원
- 총 226개 프로젝트 중 75개가 선발되어 총 910억유로 규모로 진행, 이 중 지방정부가 580억유로 정도를 부담
- 이번 심사 및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약 300억유로 규모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

42) <http://www.minefe.gouv.fr/actus/10/1003.php>

다. 기타 정책이슈

□ 그리스 재정위기 타개현황 및 프랑스의 입장⁴³⁾

- 유럽연합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 유럽중앙은행, IMF는 4월 21일 현재 그리스 재정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 IMF는 총 120억유로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
- 유로지역 재무부 장관들은 이미 IMF 지원 부분을 포함하여 최대 약 300억유로를 차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5월 15일경 공동서명에 이르는 일정을 가지고 있음
- 국가별 지원 비중은 유럽중앙은행 자본금 출연 비중에 따르며, 이에 따라 프랑스는 63억유로(20.97%)를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이를 반영한 2차 수정예산안(PLFR)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2010년 4월 21일)
 - 그리스의 자본시장 접근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 중 39억유로의 지출을 올해 안에 집행하도록 배정

43) www.minefe.gouv.fr 및 FY2010 2차 수정예산안(PLFR: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0) (2010. 4),
http://www.performance-publique.gouv.fr/fileadmin/medias/documents/ressources/PLFR2010/PLFR2010_2.pdf

4. EU 국가의 재정안정화⁴⁴⁾

가. 경제전망

- 2009년 경제현황: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성장률은 ▲2.25%이나, EU 전체적인 성장률이 ▲4.0%인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
 -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효과 및 가계소비가 양호한 편이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산업 생산 역시 2, 3분기 동안 0.3%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판매도 호조를 보임

- 2010년 경제전망: 2010년 성장률은 1.4%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가계소비는 물가가 안정되는 환경 속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고 등 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주거용 부동산 투자 또한 금융환경 개선과 정부지원(제로 금리 대출)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노동시장 환경은 고용이 지연되는 등 저조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1-2013년 경제전망: 2011-2013년 연평균 성장률이 2.5%일 것으로 전망. 그러나 잠재 성장률과의 격차는 2013년에 이르러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
 -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임금소득 및 저축률이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낮고 정부의 적자감축 노력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긍정적으로 작용
 - 국내외의 수요 증대 및 정부의 각종 투자지원과 세제혜택으로 기업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이는 사업소세 폐지, 연구개발 관련 세제혜택, 미래투자계획 등을 포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회복이 지연되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장기화되는 경우, 2011-2013 연평균 성장률이 2.25%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44) FY2010-FY2013 재정안정화계획 (Programme de stabilite de la france 2010-2013) (2010년 2월 2일), http://www.budget.gouv.fr/themes/finances_etat/pdf/programme_stabilite_2010-2013.pdf

〈표 2-V-7〉 2010-2013 거시경제전망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2013 (평균)
GDP 성장률	-2.25	1.4	2.5
국내수요(재고제외)	-0.4	0.9	2.2
가계소비	0.7	1.4	2.9
정부지출	2.0	1.4	-0.3
총고정자본	-5.8	-1.3	3.6
총고정자본 (비금융회사포함)	-7.6	0.6	4.8
자본스톡비율	-1.7	0.5	0.2
대외수요	-0.1	0.0	0.0
수출	-11.1	3.7	6.0
수입	-9.9	3.6	5.7
GDP 디플레이터	1.0	1.1	1.7
가계소비 디플레이터	-0.2	1.3	1.7
비농업부문 명목임금	-0.8	0.3	4.5
비농업부문 인당실질임금(가계소비 디플레이터 조정)	2.0	0.6	2.1
비농업부문 고용	-2.6	-1.6	0.7

자료: FY2010-2013 재정안정화계획

나. 중기재정목표

- FY2010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8.2%,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5.8%로 이전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 2009년에 비해 경기 호전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세 개정 및 미래투자계획 지출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한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됨
 - 다만, 미래투자계획(350억유로 규모)은 대부분 국채발행 및 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 이므로 이로 인한 재정악화는 FY2010년에 국한되고 규모도 약 20억~25억유로에 불과 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른 국채발행으로 인한 이자상환부담 역시 다른 지출항목 감축으로 보완할 계 획
 - 경제위기대응정책 역시 본예산(LFI)에서 승인된 약 41억유로뿐만 아니라 전년 이월 된 약 13억유로가 추가되어 운용될 예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FY2011년 이후 재정수지를 연평균 1.4%p씩 개선하여 2013년에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인 GDP 대비 ▲3.0% 달성을 목표로 함
- 이는 경제위기대응정책 등 단기적인 재정정책이 FY2010년에 만료되고, 향후 지속적인 지출통제전략을 유지하며, 각종 구조개혁 및 경쟁력 제고 정책과 경기 호전 덕택으로 세입이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초

〈표 2-V-8〉 재정안정화계획 FY2009-FY2012와 FY2010-FY2013의 비교

(단위: %(성장률) 또는 GDP 대비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09-FY2012 재정안정화계획						
성장률	1	0.2-0.5	2	2.5	2.5	-
재정수지	-2.9	-3.9	-2.7	-1.9	-1.1	-
구조적 재정수지	-2.4	-2.7	-1.4	-0.7	0	-
국가부채	66.7	69.1	69.4	68.5	66.8	-
FY2010-FY2013 재정안정화계획						
성장률	0.4	-2.3	1.4	2.5	2.5	2.5
재정수지	-3.4	-7.9	-8.2	-6	-4.6	-3
구조적 재정수지	-3.1	-5.8	-5.8	-4	-2.8	-1.6
국가부채	67.4	77.4	83.2	86.1	87.1	86.6

자료: FY2009-2012 재정안정화계획 및 FY2010-2013 재정안정화계획

다. 목표달성전략

1) 수입

- 프랑스는 이미 조세부담률이 높은 편(FY2009 현재 48.1%⁴⁵⁾)으로, 단순한 세입 증가를 전략으로 삼기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입) 구조 개편에 중점
- 2013년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4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FY2011-2013에는 세입의 탄력도가 1.1까지 증가하여 세

45) 통계청, Information Rapides, No. 88 (2010.3), <http://www.insee.fr/fr/indicateurs/ind37/20100331/Apu.pdf>

수 확보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 기업(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 관련 세제개편, 탈세방지노력 등을 세부 전략으로 채택, FY2010 예산에 반영
 - 이미 사업소세를 폐지한 바 있으며, 탄소세 역시 헌법위원회의 변경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세제개편 의지가 큼
- (사회보장) FY2010 사회보장예산 수입은 1.2%로 다소 저조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역시 경기회복과 함께 FY2011-2013 동안에는 연평균 4.2%의 증가율일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 세수 기반을 고려할 때 큰 증가율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경제 상황을 위와 같이 가정했을 때 FY2011-2013 동안 연 0.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2) 지출

- (중앙정부) FY2010 1.2%, FY2011 1.5%, FY2012 1.75%로 지출을 통제하여 중기 재정목표를 달성할 예정
 - FY2010 역시 경제위기 대응 및 미래투자계획 관련 지출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출, 특히 복지성 지출은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통제하여 실질(real term) 증가가 없도록 하는 “zéro volume” 원칙 준수, 고령화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
 - 5월 중 2차 적자감축회의*를 통해 FY2011-2013 3개년 예산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중기 지출 통제 및 적자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
 - 적자감축회의(Conférence sur le déficit, 2010년 1월 28일)는 대통령 주재하에 수상, 국회의장, 상원의장, 관련 중앙부처장 및 지방정부 관계자, 사회보장기금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적자 현황 및 심각성을 논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 부 장관에게 적자감축계획 및 세부담완화 계획을 주문
 - 은퇴예정자의 후임 대체를 하지 않고, 사업 상호간 지출 삭감을 시행하는 등의 전

락을 방침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물가상승률로 제한된 지출증가폭 내에서도 연금 및 부채상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예정

□ (중앙정부 산하기관) 예산부 장관 등이 지난 2009년 12월 발표한 새로운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은퇴예정자 비대체 등) 절감을 중심으로 기관 및 정부-기관 간 상호 노력을 통해 지출억제

□ (사회보장) FY2010 지출증가율은 3.8%로 예상되며, FY2011-2013 연평균 지출증가율은 노동시장 개선 및 건강보험지출 개혁을 통해 3.1%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의료부문: FY2010 증가율은 3%, FY2011-2013 연평균 증가율은 3%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병의원, 환자 및 보건의에 관한 법률(la Loi de Hôpital, patients, santé et territoires)에 의거한 효율성 증대 및 지속적인 의약품 관세 및 단가 조정을 피하고, 병의원 및 재활시설 이용비 인상(1일 2유로)

- 고령화 부문: FY2009-2010 증가율 평균은 4.2%, FY2011-2013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예상

-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에 PAGYO 방식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최종안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

- 기타 사회보장 부문: 가족 및 주거수당은 FY2010 1.8%, FY2011-2013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실업보험지출은 FY2009에 18.5%로 급증했던 것이 노동시장이 개선됨에 따라 FY2010에는 안정될 것임. 또한 FY2011-2013에는 연평균 ▲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방정부) 역시 제한된 지출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의 명확화 및 권한의 투명화,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및 조직 효율화를 전략으로 하고 있음. 일부 수당 지출은 연말에 만료될 예정임

-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차 적자감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3) 구조개혁 및 재정준칙

- (구조개혁) 1) 노동시장개혁(2010 주요국 예산안 참조) 2)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지원 3) 정부정책개혁보고서(RGPP)에 의거한 세부담 경감 4) 미래투자계획 5) 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등에 의한 경제 전반의 생산비용 감소 및 경쟁력 제고
 - 경제분석회의(Conseil d'analyse économique)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GDP의 1.5%를 고등교육에 투자(미래투자계획 350억유로를 모두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경우)할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성장률이 0.4%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재정준칙)
 -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Eric Woerth (전) 예산부 장관이 독일과 같은 재정관리원칙(지방재정 포함) 및 실행방안 마련중(1차 적자감축회의 결의내용)
 - S2의 개선: 적자 수준과 그에 대한 자원조달의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S2 지수가 FY2009년 5.2%p(경제위기대응정책 제외)에서 2013년 1.6%p로 개선될 것을 목표로 함

〈표 2-V-9〉 재정건전성 지수(S2)

(단위: GDP 대비 %p)

시작연도	S2	초기상태 효과	고령화 효과
FY2009	5.2	3.4	1.8
FY2013	1.6	-0.2	1.8

자료: FY2010-2013 재정안정화계획

VI

독일 (FY2010: 2010. 1~2010. 12)

1. 세제개편

□ 변동사항 없음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연방하원은 2010년 예산안을 위한 제1독회를 진행, 연내 신규차입은 858억유로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 (2010년 1월 19일)
 - 신규차입 중 435억유로는 조세수입 감소로 발생한 적자해소를 위해 마련,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233억유로,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102억유로 등 총당
 - 독일 재무부 장관은 또한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의 개정 (아래 ※참조)은 향후 출구전략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밝힘

※ 독일 기본법(Grundgesetz) 개정의 주요내용 일부

- 독일은 재정건전화 및 연방·주·지방정부의 재정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독일 헌법인 기본법(Basic Law-Grundgesetz)을 2009년 7월 개정
 - 기본법 제109조(연방 및 지방의 예산운용)의 추가내용 : “연방 및 지방정부의 예산은 차입을 통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단, 경기침체 시 경제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는 차입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 및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차입을 늘릴 수 있다. 중기 균형재정의 달성을 위해 연방은

연간 차입규모를 GDP 대비 0.3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기본법 제115조(차입)의 추가내용 : “실질차입 규모가 허용되는 차입규모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통제계정(control account 또는 equalization account)에서 관리될 것이며 이 계정의 잔고는 GDP의 1.5%를 넘을 수 없다. 이 계정의 잔액이 GDP의 1%를 넘을 경우에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 기본법 제143d조 : “기본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신규 규정은 2011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주정부는 2020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 기본법 제109a조(안정화위원회) :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정화위원회(Stability Council)가 설립되며, 이를 통해 연방 및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관리되고, 이들 정부의 재정상황은 매년 검토 및 보고되어야 하며 안정화위원회의 결정 사안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 연방하원은 2009년 9월에 진행된 의회선거로 인해 예산안을 예년보다 지연된 3월 5일자로 통과시켰으며 신규차입금은 802억유로로, 당초 예상보다 56억유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2010년 3월 8일)

- 2010년 연방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3억유로 감소한 2,393억유로이며 이는 조세 외 수입의 감소에서 비롯됨
- 연방 지출규모는 3,195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시장 개선에 따라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아프가니스탄 내 군대 및 민간지원을 위해 2010년 연방예산 중 총4억 3,620만유로가 투입
-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금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4억 2천만유로를 독일의 연방예산을 통해 지급할 예정
- 고용시장이 개선됨에 따라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 할당될 예산은 당초보다 32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ArbeitslosengeldII)는 4억유로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임

<표 2-Ⅵ-1> 2010년 독일 연방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지출	
재정지출	325.4
2009년 대비 (%)	+11.3
변동액	-5.9
신규 지출	319.5
2009년 대비(%)	+9.3
투자지출	28.691
변동액	-398
신규 투자지출	28.293
수입	
조세수입	211.887
변동액	-
기타 수입	27.713
변동액	-300
신규 기타수입	27.413
차입	85.8
변동액	-5.6
신규차입	80.2
신규차입 중 구조적 차입	66.593
GDP 대비(%)	2.77

자료: 독일 재무부

□ 연방 상원이 통과시킨 2010년 연방예산안의 연간 총재정지출은 3,195억유로에 해당하며 그 중 노동과 사회보장지출이 1,432억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10년 3월 26일)

SECTION 2 >>

〈표 2-Ⅵ-2〉 독일 연방정부 2010년 예산지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분야	예산 할당액
노동 및 사회보장(Arbeit und Soziales)	143.2
독일연방 부채(Bundesschuld)	38.9
국방(Verteidigung)	31.1
교통건설 및 도시개발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26.3
재무 일반(Allgemeine Finanzverwaltung)	10.1
경제 및 기술(Wirtschaft und Technologie)	6.1
교육 및 연구(Bildung und Forschung)	10.9
가족(Familie)	6.5
기타(Sonstige)	30.3
보건(Gesundheit)	16.1
합계	319.5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 3월

나. 추경

□ 변동사항 없음

다. 결산

- 2009년 연방결산이 잠정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신규차입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341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측 (2010년 1월 19일)
 - 투자 및 상환펀드(Investitions- und Tilgungsfonds)와 금융시장 안정화펀드(Sonderfonds Finanzmarktstabilisierung)에 해당하는 2009년 차입규모는 각각 61억유로 및 266억유로임
 - 일반인 차량구입 등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0.4%가량 증가
 - 2009년 독일 연방·주·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합계는 772억유로, GDP 대비 3.2%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럽 안정 및 성장협약에서 규정한 3% 범위를 상회

-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적자규모를 약 0.5%p씩 감소시켜야 함
- 2016년까지 독일연방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로 낮추기 위해 적자규모를 연 100억유로씩 감소시켜 나가야 함

□ 2009년 독일정부의 세입규모는 4,848억유로를 상회하며 이는 전년 대비 306억유로 또는 5.9% 가량 감소

- 주요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 대비 19.1% 감소, 부가가치세 0.6% 상승, 에너지세 1.5% 상승(이 중 천연가스세는 25.7% 상승), 담배세 1.5% 하락, 토지세 15.2% 하락, 상속세도 4.6% 감소함
- 연방·주·지방정부의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정부 총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5.9% 하락한 수치

〈표 2-VI-3〉 독일 정부형태별 세입 규모

(단위: 백만유로, %)

정부형태	2009	2008	전년 대비 변동액	전년 대비 변동률
연방정부	227,996	239,180	-11,184	-4.7
유럽연합	20,501	23,081	-2,580	-11.2
주정부	207,119	221,921	-14,803	-6.7
지방정부	29,265	31,316	-2,051	-6.5
합계	484,880	515,498	-30,618	-5.9

자료: 독일 재무부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연방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4개년에 걸친 연방·주·지방정부 및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및 세금혜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연간보조금 규모는 295억유로로 전년 대비 60억유로 증가 (2010년 1월 13일)
 - 독일 정부는 2009년 세제감면혜택의 시행으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전년 대비 120억유로 이상 늘림
 - 2010년 보조금은 총 244억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재정지원이 68억유로만큼 하락
 - 세제혜택은 증가하여 2010년에 총 177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7년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
- 독일 내각은 유럽 경제금융이사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에 제출할 성장에 입각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ätsprogramm) 발표, 다가오는 2013년까지 국가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까지 낮출 계획 (2010년 2월 9일)
 - 자세한 내용은 <4. EU국가의 재정안정화> 참조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정책이슈

- 2010년 3월 25~26일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성장에 기반을 둔 EU2020 전략(EU2020 Strategy)에서 제시한 5가지 목표를 지지했으며, 앞으로 각 회원국은 아래 목표에 부합한 정책 실시 약속(2010년 3월 25/26일)
 - 1) 빈곤문제 개선 2) 취업률을 취업연령 해당자의 75%까지 끌어올림 3) 온실가스 감

축,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 촉진, 에너지 효율화 개선 4) 학교 중퇴 비율 감소 및 고등 교육 비중 확대 5) 유럽연합 GDP의 3%는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투자

- 독일은 R&D에 GDP의 3%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 비중을 2015년까지 GDP 대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

○ EU정상회의 중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최후 수단으로 사용될 긴급 대안을 마련

- IMF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한편 유럽연합 국가의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진 쌍방 대출 형태의 재정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때의 지불금은 유럽중앙은행의 심사를 거치게 됨

□ 4월 열린 EU재무장관 회의 중 그리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 발표(2010년 4월 11일)

- 유럽연합은 IMF와 협력하여 총 3년에 걸쳐 지원자금을 마련, 올해 지원액은 총 300억 유로에 해당되며 독일정부는 이 중 28%인 84억유로를 지원
- 연방정부는 향후 그리스에 지원할 재정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는 그 규모가 900억유로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4. EU국가 재정안정화

가.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독일정부는 1월 현재 2010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상하며 내수증가 및 해외수요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가 성장 촉진에 기여해 2013년까지 연 0.5%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1.0%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활성화의 기대로 내수증가 전망
 - 2010년 잠재성장률은 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망하며 2013년에는 1.5%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고용시장) 2010년 연간 고용인원은 4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8.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수출) 2009년 연간 수출이 14.7% 감소한 데 반해 2010년에는 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3.4%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2-VI-4〉 2009년~2013년 독일 거시경제 전망

(단위: 연간 증감률)

	2008년 수치	2008	2009	2010	2011~2013
실질GDP성장률	110.26	0.4	-5.0	1.4	2
명목GDP (10억유로)	2495.80	2.8	-3.7	2.0	3
개인소비지출	102.94	0.4	0.4	-0.5	1
수출	168.73	2.9	-14.7	5.1	3
수입	147.12	4.3	-8.9	3.4	2.5
내수 (재고 불포함)	-	1.2	-0.9	0.5	1.5
고용인구 (국내/100만명)	40,279	1.4	-0.1	-1.0	0.5
실업률(%)	-	7.2	7.6	8.3	8

자료: German Stability Programme, Jan. 2010, 재무부

나. 중·장기 재정목표

1) 재정지출 및 수입

- 연방정부는 교육 및 연구 부문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0억유로에 해당되는 자금을 투입, 주정부는 2015년까지 동 분야 지출이 GDP 대비 10%가 되도록 함
- 제2차 경기부양책의 투자 및 상환펀드(Investitions-und Tilgungsfonds)의 부채는 향후 독일연방은행의 수익을 통해 상환해 나갈 예정이며 금융시장 안정화펀드(Finanzmarktstabilisierungsfonds)를 통해 2010년 말까지 금융기관에 보증지원 4,000억 유로, 자본지원금 800억유로 투입
- 정부는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세금완화 정책 등을 추진, 2010년부터 그 규모가 240억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 2010년 1월 1일 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을 통해 자녀혜택 제공 및 수당 지급
 - 경기부양책으로 기본공제액을 두 차례에 걸쳐 170유로씩 인상, 기본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2009년에는 31억유로, 2010년에 58억 유로 규모의 조세부담 경감
 - 시민부담 경감법(Bürgerentlastungsgesetz)으로 2010년부터 시민들의 부담은 총 100억유로가량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 지출은 늘어날 것임
-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정부는 예산관련 법조항을 개정했으며 이는 2011년부터 적용될 것임
 - 국가재정은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주기적인 변동에 의한 재정상황은 전체적인 주기를 고려하여 결과를 판단함
 - 국가에 경기침체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허용되나 초과지출에 대한 상환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연방예산의 초과지출은 통제계정에서 관리함

SECTION 2 >>

2) 독일정부의 재정추이

- 2010년 독일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p 이상 악화된 GDP 대비 5.5%로 내수 및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정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감소시킬 것임

〈표 2-Ⅵ-5〉 독일 일반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0년 1월 기준	0.0	-3.2	-5.5	-4.5	-3.5	-3
2009년 1월 기준	0.0	-3	-4	-3	-2.5	-

자료: German Stability Programme, Jan. 2010, 재무부

- 2009년 연방정부의 특별기금이 포함된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1.7%였으나 2010년에는 경기부양책의 실시로 GDP 대비 3.5%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1%의 재정적자를 보인 주·지방정부 역시 2010년에는 GDP 대비 2%로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09년 사회보장기금의 재정적자(실업보험기금의 비용 상승 및 실업보험분담률의 수입 감소로 연방노동청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롯)는 2010년에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균형재정 달성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2-Ⅵ-6〉 독일 정부형태별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방정부 및 특별기금 ¹⁾	-0.6	-1.7	-3.5	-2.5	-2	-1.5
주·지방정부	0.3	-1.0	-2	-2	-1.5	-1.5
사회보장기금	0.3	-0.5	-0	-0	-0	-0
일반정부	0.0	-3.2	-5.5	-4.5	-3.5	-3

주: 1. GDP 대비 0.5%p로 반올림된 수치

1) 연방철도기금, 보상기금, 상속부채에 관한 상환기금, ERP특별기금, 금융시장 안정화기금, 투자및상환기금, 보육 특별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자료: German Stability Programme, Jan. 2010, 재무부

- 2009년 세수규모는 GDP 대비 23.5%였으나 2010년에도 세금완화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GDP 대비 22.5%로 하락할 전망
- 2010년 사회보장 개인분담금은 실업보험 분담률의 축소와 건강보험 및 장기노인요양보험의 개인분담률 상승으로 인해 전년과 비슷한 GDP 대비 17% 기록
 - 2011년에는 GDP 대비 16.5%로 전망

〈표 2-Ⅵ-7〉 세입 및 사회보장 개인분담금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입	23.7	23.5	22.5	22	2	22.5
사회보장 분담금	16.4	17.1	17	16.5	16.5	16.5
세입+사회보장분담금 (2010년 1월 기준)	40.1	40.6	39	38.5	39	39
2009년 1월 기준	40.2	40	39	39	39.5	-

자료: German Stability Programme, Jan. 2010, 재무부

-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2009년 정부지출은 GDP 대비 47.6%로 전년 대비 4%p가량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의 지속적 시행으로 지출은 GDP 대비 48%를 육박할 것으로 예측

〈표 2-Ⅵ-8〉 독일 일반정부 지출규모 추이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0년 1월 기준	43.7	47.6	48	47	46	45
2009년 1월 기준	44.0	46.5	46.5	45.5	45.5	-

자료: German Stability Programme, Jan. 2010, 재무부

- 자동안정화장치의 시행은 2009년 구조적 재정적자를 전년 대비 3%p 이상 악화시켰으며 2010년에는 GDP 대비 4.5%가 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구조적 재정적자를 매년 GDP 대비 평균 0.5%p 이상 줄여나가 2013년까지 적자를 2.5%까지 낮출 계획

<표 2-VI-9> 구조적/명목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GDP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	-1	-1.5	-4.5	-4	-3	-2.5
일반정부 순차입/순대출 (GDP 대비 %)	0.0	-3.2	-5.5	-4.5	-3.5	-3
실질 GDP (전년 대비 증감)	1.3	-5.0	1.4	2	2	2

자료: German Stability Programme, Jan. 2010, 재무부

- 독일정부 부채규모는 2009년 GDP 대비 72.5%를 기록했으며 2010년은 순차입 규모가 커지면서 4%p 증가한 76.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향후 부채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82%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

<표 2-VI-10> 독일정부 부채규모 추이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0년 1월 기준	65.9	72.5	76.5	79.5	81	82
2009년 1월 기준	65.5	68.5	70.5	71.5	72.5	-

자료: German Stability Programme, Jan. 2010, 재무부

3)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 독일 인구의 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지출은 2007년 GDP 대비 10.4%에서 2060년 12.8%까지 증가할 전망
 - 지출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촉진, 노인연금 조정, 퇴직연령 연장 등을 시행할 계획
 - 노령인구의 증가로 2007년부터 2060년까지 보건 분야 지출은 GDP 대비 1.4%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같은 기간의 교육지출은 0.4%p 감소할 것으로 보임

다. 목표달성전략

1) 성장촉진을 위한 주요 개혁과제

-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료주의 문화를 지양
- 연방정부는 경쟁규제 통제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을 개정해 개별가격의 도입, 경쟁유도를 위한 법안 마련, 정부조달 관련 법조항의 간소화 등에 주력
- 연방정부는 에너지 공급관련 지침을 마련 및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에너지 효율화, 저장기술, 바이오연료 등 개발

2)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혁

- 법령에 근거한 건강보험 개인 부담률이 제2차 경기부양책에 의해 2009년 7월부터 0.6%p 감소, 사회보장시스템 안정법(Sozialversicherungs-Stabilisierungsgesetz)에 의거하여 일시적인 대책으로 감소된 수입은 예산기금으로 충당
 - 2010년 건강보험기금 총세수규모는 157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장기노인요양보험법(Pflege-Weiterentwicklungsgesetz)을 통해 장기요양제도를 개선시켜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회보장을 통해 재정충당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내 전문부서를 마련하여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재정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며 요양을 돕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 2009년 노동시장정책기구 재정비에 관한 법(Gesetz zur Neuausricht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의 시행으로 2006년 6.5%였던 실업보험 개인분담률을 2010년 말까지 2.8%로 감소, 이는 연간 총 300억유로에 해당하는 규모
- 연방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연금보험시스템의 재정적인 안착을 통해 2020년에 부담률이 20%, 2030년에는 2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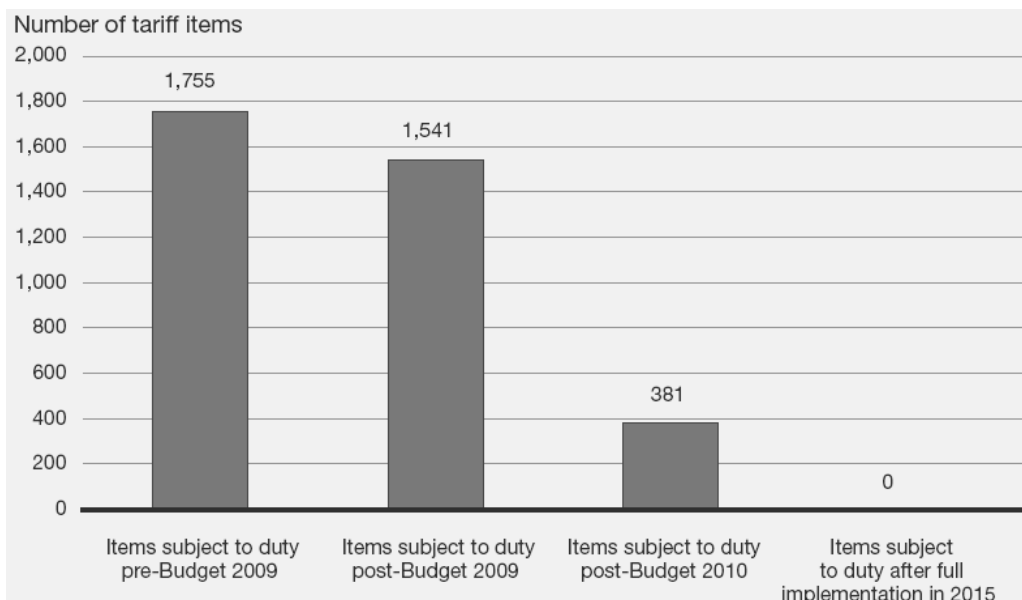
캐나다 (FY2010-11: 2010. 4~2011. 3)

1. 세제개편

- 법인세율(federal general corporate income tax rate) 인하
 - 법인세율은 2007년 기준 22.12%(부가세포함)에서 2010년 18%로 낮추고 2012년에는 15%까지 인하할 계획임

- 제조업 대상 장비 및 기계류의 관세 폐지
 - 2010년 3월 5일까지 1,541개의 주요 관세 대부분이 폐지되며 향후 2015년 1월 1일까지 모두 폐지될 예정

[그림 2-VII-1] 관세 폐지 계획



- 광물탐사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제도를 통한 광산업 지원 1년 연장
 -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였던 광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을 2011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 개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분배, 의료비 세액공제, 장학금 과세면제,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등에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음
 - 양육권을 공유하는 경우 혜택의 분배 방식 변경
 - 현행 규정상에서는 부양자녀에 대해 적절한 1인만이 자녀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과 보육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받을 수 있음
 - *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0캐나다달러의 보조금 지급
 - 현재,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두 명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에 지급받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편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한 명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므로,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 비해 편부모 가정이 불리할 수 있음
 - 예산안에서는 편부모 가정의 경우 보조금을 부 혹은 모의 소득에 포함하거나 피부양자(dependant)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 중 선택 가능
 - 2010예산안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모가 공유하는 경우, 적절한 2인이 보조금 혜택을 분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성형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과세면제 대상의 명확화
 - 중등과정 이후(post-secondary) 과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장학금, 연구비, 학비보조금에 대한 과세면제가 2006년 도입되었음
 - 예산안에서는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2년제 과정(diploma),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을 위한 장학금은 과세 면제임을 확실히 하고 박사 이후 과정의 연구비는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임
 - 장학금 과세면제 금액은 적절한 교육과정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제한함
 - 자선단체의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 개정

SECTION 2 >>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선단체는 매년 다음 ①, ②의 합계액을 자선활동에 지출하여야 함
 - ① 기부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자선단체 간에 이전된 금액을 합한 금액의 80%
 - ② 자선프로그램 및 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25,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자산의 3.5%
- 이번 예산안에서는 ①의 요건(Charitable Expenditure Rule)은 폐지하고 ②의 요건에서 기준금액을 100,000캐나다달러로 인상함
- 종업원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
 - 기존에는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행사가 차이는 종업원 급여(employment benefit)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됨
 - 과세대상 급여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업원 단계에서 과세대상 급여액의 50%를 stock option deduction으로 공제할 수 있고 고용주 단계에서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주식 대신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고용주도 100% 공제할 수 있고 종업원도 50%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예산안에서는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주식으로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종업원 단계에서만 50% 공제를 허용하고,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100% 공제하는 대신 종업원의 경우 100%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표 2-Ⅶ-1〉 스톡옵션에 의한 종업원 급여의 과세처리

	고용주 단계	종업원 단계
Employee stock option plans	비공제	50% 공제
Stock option cash outs		
현행	전액 공제	50% 공제
개정안(선택권 없는 경우)	전액 공제	전액 과세소득
개정안(선택권 있는 경우)	비공제	50% 공제

자료: 캐나다 재무성, Budget 2010 Leading the Way on Jobs and Growth, 2010. 3. 4. p. 355

□ 사업소득 과세의 변동사항

-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 제도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이용 및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연료의 사용 등 청정에너지생산설비 및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50% 가속상각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비용공제 대상에 다음의 설비를 추가함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열회수설비(heat recovery equipment), 지역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공급설비(distribution equipment)

□ 국제조세의 변동사항

-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에 의해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자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과세대상인 자산의 범위에서 다음 자산을 제외하였음
 - 법인의 주식,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기타 지분, 캐나다의 자원, 산림자원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Budget 2010 (2010.03.04)

- (경제전망) 2010년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2.6%, 실업률은 8.5%를 기록할 전망
 - 경기부양정책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2010년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하고, 향후 2011년 3.2%, 2012년 3.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10년 실업률은 8.5%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하나, 향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고용환경도 개선되어 2014년에는 6.6%로 감소할 전망

- (재정전망) FY2010-11 총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총지출(프로그램지출 및 이자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전망
 - (총세입) 경기회복에 힘입어 FY2010-11 총세입은 2,31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로 전년 대비 8.1% 증가할 전망
 - GDP 대비 총세입은 FY2011-12 14.8%, FY2014-15 15.2%로 소폭 증가할 전망
 - (총지출) FY2010-11 프로그램지출은 2,492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 313억캐나다달러로 총지출은 2,805억캐나다달러 전망
 - 프로그램지출은 경기부양 2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로서 FY2010-11 GDP 대비 15.6%이며 FY2011-12 14.3%, FY2012-13 13.8%, FY2014-15 13.2%로 계속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 FY2010-11 재정적자는 492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3.1%로 전망
 - 향후 재정수지 균형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재정적자는 계속 감소할 전망: 재정적자 크기는 FY2011-12 276억캐나다달러, FY2012-13 175억캐나다달러, FY2014-15 18억캐나다달러로 예상

- (부채) FY2010-11 총부채는 5,667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35.4% 수준으로 전망
 - GDP 대비 부채 비율은 FY2011-12 35.2%, FY2012-13 34.4%에서 점차 낮아져 FY2014-15에는 31.9%로 전망

〈표 2-Ⅶ-2〉 Budget 2010의 재정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총세입	2,331	2,139	2,313	2,490	2,665	2,827	2,965
프로그램 지출	2,079	2,378	2,492	2,414	2,452	2,514	2,577
이자지출	310	299	313	353	389	398	406
총지출	2,388	2,677	2,805	2,767	2,840	2,912	2,983
재정수지	-58	-538	-492	-276	-175	-85	-18
부채	4,637	5,175	5,667	5,943	6,119	6,203	6,221
총세입	14.6	14.0	14.4	14.8	15.0	15.2	15.2
프로그램 지출	13.0	15.6	15.6	14.3	13.8	13.5	13.2
이자지출	1.9	2.0	2.0	2.1	2.2	2.1	2.1
재정수지	-0.4	-3.5	-3.1	-1.6	-1.0	-0.5	-0.1
부채	29.0	33.9	35.4	35.2	34.4	33.3	31.9

□ (예산기조) Budget 2010은 ‘Leading the Way on Jobs and Growth’ 제목하에 고용과 성장에 중점을 두었음

○ Budget 2010에는 경기부양 2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면서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수지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음

□ (세입) FY2010-11 총세입은 전년 대비 174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313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14.4%

○ (개인소득세) FY2010-11 개인소득세는 1,170억캐나다달러(GDP 대비 7.3%)로 전년 대비 88억캐나다달러 증가

– 경기회복과 함께 개인소득세가 점차 증가하여 FY2014-15에는 1,506억캐나다달러까지(GDP 대비 15.2%) 증가할 전망

○ (법인세) FY2010-11 법인세는 255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6%)로 전년 대비 32억캐나다달러 증가

–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경기회복과 더불어 증가하여 FY2014-15 332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7%)까지 증가할 전망

SECTION 2 >>

- (재화 및 용역세) FY2010-11 재화 및 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 Tax)는 27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7%)로 전년 대비 15억캐나다달러 증가
 - 향후 FY2014-15 337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7%)에 이를 전망
- (고용보험) FY2010-11 고용보험관련 수입은 176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1%)로 전년대비 10억캐나다달러 증가
 - FY2014-15 고용보험수입은 26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를 기록할 전망

〈표 2-Ⅶ-3〉 세입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조세수입(Tax Revenues)							
개인소득세	1,160	1,082	1,170	1,245	1,333	1,419	1,506
법인세	295	223	255	289	295	316	332
기타소득세	63	49	55	59	64	69	70
총소득세(A)	1,518	1,354	1,480	1,594	1,693	1,803	1,908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57	258	273	288	305	321	337
관세	40	34	34	35	37	38	41
기타소비세	100	101	103	103	103	103	104
총소비세(B)	398	393	410	427	444	463	483
총조세수입(C=A+B)	1,916	1,747	1,889	2,020	2,137	2,266	2,391
고용보험(D)	169	166	176	200	226	252	266
기타세입(E)	246	226	248	270	303	308	308
총세입(F=C+D+E)	2,331	2,139	2,313	2,490	2,665	2,827	2,965
개인소득세	7.3	7.1	7.3	7.4	7.5	7.6	7.7
법인세	1.8	1.5	1.6	1.7	1.7	1.7	1.7
재화 및 용역세	1.6	1.7	1.7	1.7	1.7	1.7	1.7
총조세수입	12.0	11.4	11.8	12.0	12.0	12.2	12.2
고용보험	1.1	1.1	1.1	1.2	1.3	1.4	1.4
기타세입	1.5	1.5	1.5	1.6	1.7	1.7	1.6
총세입	14.6	14.0	14.4	14.8	15.0	15.2	15.2

- (프로그램지출) FY2010-11 총프로그램지출은 전년 대비 114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492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15.6%
- (노후혜택) FY2010-11 노후혜택(Elderly Benefits)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17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67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노령인구 증가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인해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FY2014-15에는 452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0-11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226억캐나다달러일 전망
 - 이러한 고용보험 지출 증가는 평균 임금의 상승으로 최대 보장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
 - 향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FY2011-12부터 실업이 감소하여 FY2014-15 고용보험 관련 지출은 18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아동보조금) FY2010-11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은 127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4억캐나다달러 상승
 - 이러한 아동보조금 지출 증가는 Budget 2009에서 발표한 캐나다 자녀세금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및 국가아동혜택(National Child Benefit) 확대 때문이며, 이는 향후 계속 상승하여 FY2014-15에는 135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Health and Social Programs) 지출은 FY2010-11 371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14억캐나다달러 증가
 - 향후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이 확대되어 FY2014-15에는 447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도시 및 커뮤니티 지원)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Cities and Communities) 지원은 FY2009-10 이래 20억캐나다달러를 유지

SECTION 2 >>

〈표 2-Ⅶ-4〉 프로그램지출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사람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후혜택(Elderly benefits)	334	350	367	386	407	429	452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163	224	226	196	188	184	184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	119	123	127	132	134	134	135
소계(A)	616	697	720	714	729	748	771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건강 및 사회복지프로그램(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333	357	371	387	407	427	447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52	161	164	168	177	186	195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30	-27	-29	-31	-33	-35	-37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10	20	20	20	20	20	20
기타	0	03	43	19	0	0	0
소계(B)	465	514	568	563	571	598	624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02	398	394	337	336	328	321
Capital amortization	41	44	46	49	51	53	54
기타발생비용(Other operating expenses)	206	208	215	229	242	252	258
Operating expenses subject to freeze	449	518	549	522	524	535	548
소계(C)	998	1,168	1,204	1,137	1,152	1,167	1,182
총프로그램지출(A+B+C)	2,079	2,378	2,492	2,414	2,452	2,514	2,577
사람에 대한 주요 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3.8	4.6	4.5	4.2	4.1	4.0	3.9
기타 정부 주요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2.9	3.4	3.5	3.3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6.2	7.6	7.5	6.7	6.5	6.3	6.1
총프로그램지출	13.0	15.6	15.6	14.3	13.8	13.5	13.2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FY2009-10부터 6년 동안 총 175.8억캐나다달러를 절감할 계획으로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다음 3가지 주요내용을 발표
 - FY2010-11에 2개년 계획인 Canada's Economic Action Plan(CEAP)의 2차년도분을 실행하고 예정대로 2011년 3월부터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는 출구전략 시행
 - 프로그램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마다 정책 목표를 세우고 시행
 - 국방 관련 지출에서 FY2012-13부터 3년간 총 25.3억캐나다달러 삭감
 - 해외원조에 대해서 FY2011-12부터 4년간 44.9억캐나다달러 삭감
 - 행정부의 기능 및 경상비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검토를 통해 낭비 재원을 줄이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시킴
 - 정부는 행정기능 및 비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FY2010-11부터 5년간 68억캐나다달러를 절감할 예정
 - 모든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전략 검토하여 FY2010-11부터 5년간 12.6억캐나다달러를 절감할 예정
 - 과세체계 개선과 세제상 허점 방지 등을 통해 FY2009-10부터 6년간 총 25.1억캐나다달러 절감을 목표

〈표 2-Ⅶ-5〉 Budget 2010의 지출 삭감 계획

(단위: 억캐나다달러)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총계
국방				5.3	10.0	10.0	25.3
해외원조			4.4	8.7	13.4	18.4	44.9
정부 행정비용		3.0	9.0	18.0	18.0	20.0	68.0
2009 전략검토(strategic reviews)		1.5	2.5	2.9	2.9	2.9	12.6
Tax System과 세제상의 허점 제거	0.2	3.6	4.4	5.0	5.7	6.3	25.1
총계	0.2	8.1	20.3	39.8	49.9	57.6	1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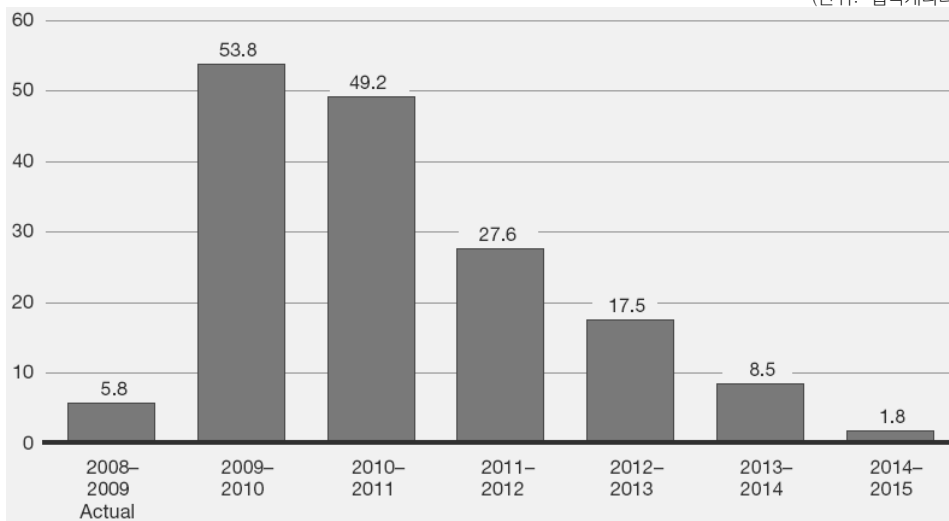
SECTION 2 >>

□ 캐나다 정부는 위와 같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FY2009-10 재정적자 538억캐나다달러를 FY2011-12에는 절반 수준인 276억캐나다달러로 감축할 계획이며 향후 FY2014-15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설정

○ GDP 대비 프로그램지출은 FY2009-10 15.6%에서 FY2014-15 13.2%로 줄어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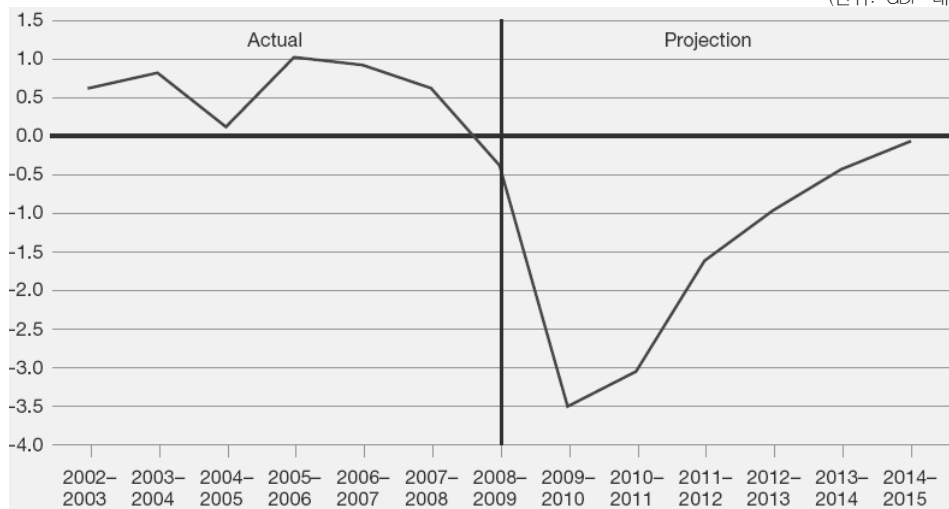
[그림 2-VII-2] 재정적자(Federal Budgetary Deficit)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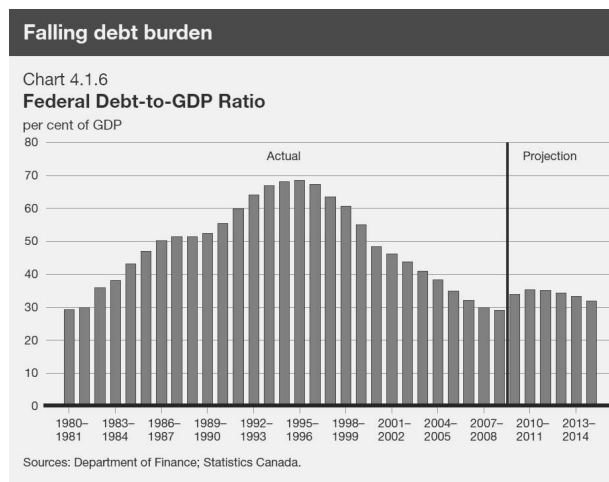
[그림 2-VII-3] GDP 대비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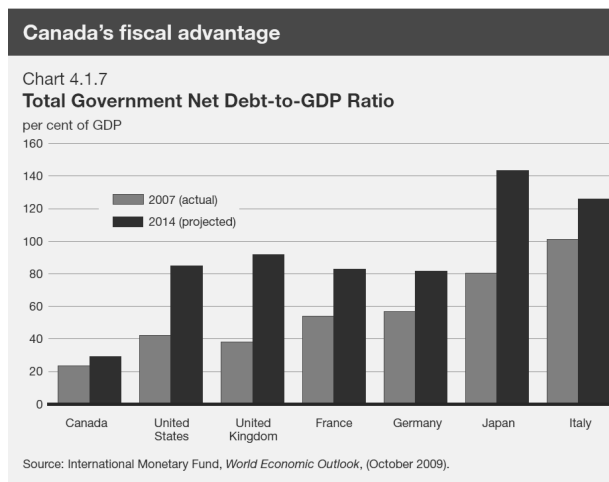


- GDP 대비 부채비율은 FY2010-11 35.4%에서 FY2011-12 35.2%로 감소한 후, FY2014-15에는 31.9%까지 감소할 전망
- 캐나다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G7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2014년에도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그림 2-VII-4]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림 2-VII-5] GDP 대비 순부채 비율 비교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경기부양 2개년 계획 (Budget 2010에 포함된 CEAP(Canada Economic Action Plan) 5차 경기부양보고서)

- FY2010-11 연방정부는 CEAP의 2차년도 경기부양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총 191.5억캐나다달러를 투입할 예정
- 캐나다 국민의 세금 부담 경감 조치로 31.8억캐나다달러 투입
 - 개인소득세 경감으로 19.5억캐나다달러, 보육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s) 및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지원 확대로 3.1억캐나다달러, 근로소득세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확대로 5.8억캐나다달러, 고령자의 세금 혜택으로 3.4억캐나다달러 투입
 - 실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41.7억캐나다달러 지원
 - 캐나다 근로자들에게 혜택 강화로 15.5억캐나다달러, 교육기회 확대에 9.9억캐나다달러, 낮은 고용보험요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s) 유지에 16.3억캐나다달러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77.0억캐나다달러 지원
 - (기반시설) 지역발전에 40.4억캐나다달러, 캐나다 원주민 기반시설 구축에 2.9억캐나다달러, 연방 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2.7억캐나다달러 등을 지원
 - (주택건설) 임대주택에 10.5억캐나다달러 투자
 - 미래 경제 구축을 위하여 18.8억캐나다달러 지원
 - 대학의 기반시설 개선에 10억캐나다달러, 연방 실험실 개선에 1.6억캐나다달러,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조성에 3.4억캐나다달러 지원
 - 산업 및 커뮤니티(Industries and Communities) 지원으로 22.3억캐나다달러 투입
 - (산업) 컴퓨터 구입에 대한 자본투자충당금(Capital Cost Allowance) 면세혜택에 3.6억, 중소기업에 2.0억, 문화산업에 1.8억, 농업분야에 1.5억, 임업에 1.1억, 관광업에 0.7억, 조선업에 0.3억캐나다달러 지원
 - (커뮤니티) 지역 발전을 위해 7.5억캐나다달러, 캐나다 원주민과 파트너십 강화에 1.9억캐나다달러 지원

〈표 2-Ⅶ-6〉 경기부양정책 효과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 분	2009-10	2010-11	Total
•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세금 부담 경감	30.2	31.8	62.0
• 실업자에게 혜택	28.5	41.7	70.2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83.1	77.0	160.1
• 미래 경제 구축	21.4	18.8	40.2
•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	117.7	22.3	140.0
총연방정부 경기부양지출(Total federal stimulus measures)	280.9	191.5	472.4
지방의 경기부양(Assumed provincial and territorial actions)	84.4	59.8	144.2
총경기부양 지출(Total Economic Action Plan stimulus)	365.3	251.3	616.6

□ 캐나다 정부는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2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2010년 1월까지 총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10년 말까지 2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2010년 말까지 분야별로 1차산업 및 공공사업(primary and utilities)에 5,000개, 건설업에 50,000개, 제조업에 37,000개, 서비스업에 129,000개 일자리 창출 계획

〈표 2-Ⅶ-7〉 경기부양 효과를 통한 고용창출 목표

(단위: 개)

산업	2010년 1월	2010년 말
1차산업 및 공공사업 (primary and utilities)	3,000	5,000
건설	29,000	50,000
제조	32,000	37,000
서비스	67,000	129,000
총계	130,000	220,000

다. 기타 정책이슈

□ FY2010-11에 2,510억캐나다달러 차입 계획(채무관리전략에 대한 『Debt Management Strategy』 발표 (2010.03.04 예산안의 Annex 3)⁴⁶). 차입 예상금액은 FY2009-10에 비해 약

간 낮은 수치임

- FY2010-11에 차입 규모는 2,510억캐나다달러로 재무부 증권(Treasury bills)을 이용해 1,500억캐나다달러, 채권(Bonds) 판매로 950억캐나다달러, 소매부채(retail debt) 거래로 20억캐나다달러 등을 조달할 예정
 - 예산은 Refinancing Needs(Treasury Bill에 1,780억캐나다달러, Bonds에 350억캐나다달러 등)에 2,200억캐나다달러, Financial Source/Requirement에 450억캐나다달러 배분 예정임
 - 이로 인해 FY2010-11 캐나다 국가부채는 150억캐나다달러 증가할 것임
- 예정된 금액과 실제 모금, 소비된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FY2010-11 Debt Management Report⁴⁷⁾를 통해 공개될 것임

□ FY2010-11 『Debt Strategy』에 채무전략 발표 (2010.03.04 예산안의 Annex 3)

- FY 2010-11 채무전략은 캐나다 정부의 목표와 필요에 맞도록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함
- 채무구조에 있어서는 적당한 금융상품(채무도구)을 이용해 안정적이고 위험구조가 균형화된 채무구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국채 거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과 재무부 증권의 비율조정 및 시장과의 공조(market consultation, communication)가 필요함

46) 『Debt Management Strategy』는 재무부에서 매년 발행되며 재정관리법에 의해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

47) 2011년 가을 국회 회기 때 발표될 예정임.

VIII

호주 (FY2009-10: 2009. 7~2010. 6)

1. 세제개편

□ 변동사항 없음

2. 예산, 결산, 추경예산안

가. 예산

□ 『FY2010-11 Budget』은 2010년 5월에 발표 예정임

나. 결산

□ 『FY2009-10 Final Budget Outcome』은 2010년 9월 말에 발표 예정임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해당사항 없음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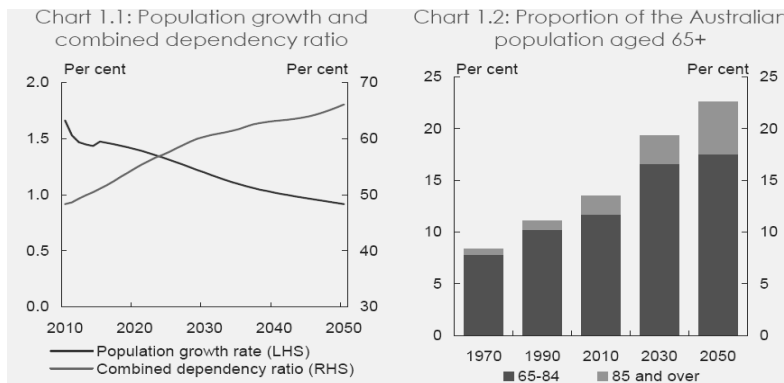
다. 기타 정책이슈

1) 향후 40년 동안 호주정부가 직면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Intergenerational Report 2010 – Australia to 2050 : Future challenges”⁴⁸⁾ 발표(2010. 2. 1)

□ (인구증가와 고령화) 연간 인구증가율은 점차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인구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

- 향후 4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2%로 이전 40년(1970~2010년)의 1.4%에 비해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호주인구는 현재 2,200만명에서 2050년에는 3,950만명으로 추계
-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 13.5%에서 2050년에는 22.6%에 달하고 85세 이상의 인구는 1.8%에서 5.1%로 급증
 - 2010~2050년 동안 유년인구(0~14세)는 45%,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44% 증가하는 반면, 고령인구(65~84세)는 2배, 초고령인구(85세 이상)는 4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
- 노인(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70년에는 7.5명, 2010년 5명, 2050년에는 2.7명으로 점차 감소

[그림 2-Ⅷ-1] 인구증가와 고령화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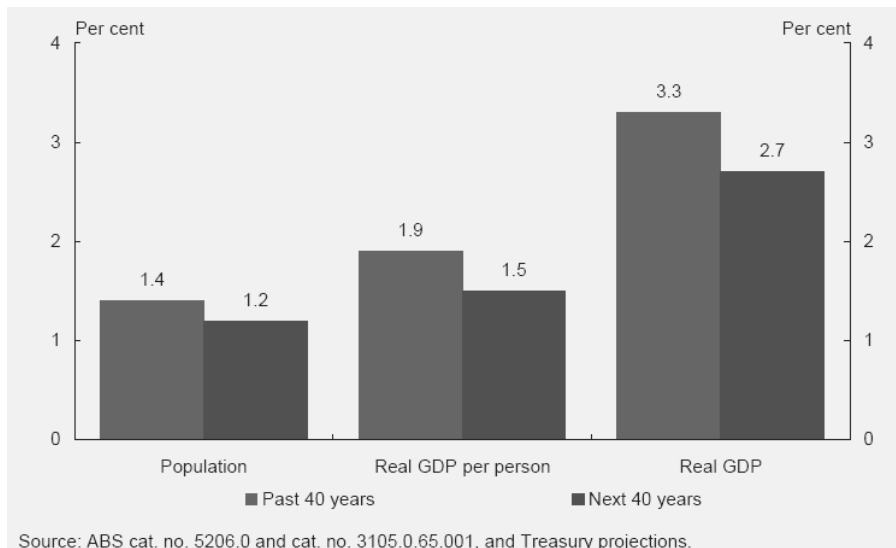


자료: Intergenerational Report 2010

48) 공정예산헌장법 1998(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따라 인구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40년에 걸친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법 제정 이후 5년 내에 발간해야 하며 동 보고서는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보고서임.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노동인구비율의 하락으로 노동참여율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됨
 - 향후 4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7%로, 지난 40년간 경제성장률 3.3%에 비해 0.6%p 감소
 - 지난 40년 동안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1.9%였으나 향후 40년 동안은 1.5%로 0.4%p 둔화될 것으로 전망
 - 15세 이상 인구의 노동참여율은 2049-50연도에 61%로, 현재 65%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2-Ⅷ-2] 기간별 경제성장률 및 1인당 경제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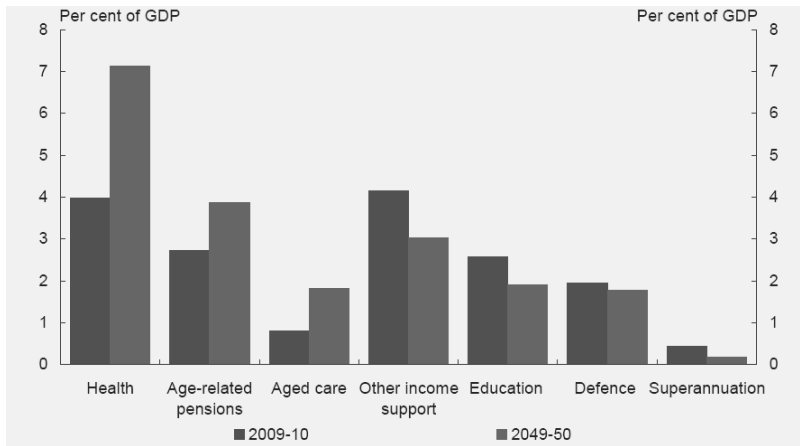
자료: Intergenerational Report 2010

- (고령화의 재정적 영향) 고령화로 인해 보건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고령화 및 보건분야 지출 증가로 총정부지출이 FY2015-16에 GDP 대비 22.4% 수준에서 FY2049-50에 27.1%로 4.7%p 확대
 - 정부지출 중 보건 및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 지출하는 비중이 현재 1/4 수준에서 FY2049-50에는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SECTION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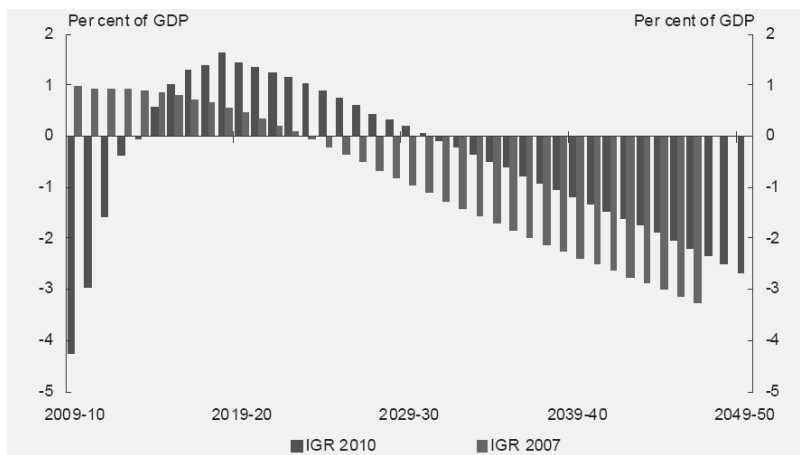
- Fiscal gap은 FY2049-50에 GDP 대비 2.75% 적자로 전망
 - 이는 2007년도 *Intergenerational report*에서 전망한 수준(GDP 대비 -3.25%)보다 개선된 수치로 정부의 재정전략과 예상보다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점진적인 것에 기인
 - 정부의 지출억제전략을 통해 영구적으로 GDP 대비 1%의 구조적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그림 2-Ⅷ-3] 부문별 정부지출 추계



자료: *Intergenerational Report 2010*

[그림 2-Ⅷ-4] fiscal gap 전망



주: fiscal gap은 총정부수입에서 총정부지출을 차감한 것임(이자 제외)

자료: *Intergenerational Report 2010*

- **(기후변화와 환경)** 기후변화는 호주 환경에 심각한 위협요인 중 하나로서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호주정부는 기업 및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탄소배출량을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탄소저감계획(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을 발표
 - 기후변화 이외에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감소도 환경적 위협요인 중 하나이므로 수질 관리의 개선에 주력

- **(호주정부의 정책방향)**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및 재정 부담이 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5가지의 개혁정책을 마련
 - ①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 : 높은 생산성 증가를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기술 및 인프라 기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성 개선
 -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정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까지 5만개의 대학을 추가로 건립하고, 71만 여개의 직업교육 및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교육개혁 수행
 - 도로, 철도, 항만 등 호주의 핵심 인프라 개선을 위해 FY2009-10 예산 중 220억호주달러를 배정
 - 혁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우수연구에 대한 지원, 기업 혁신 등 FY2009-10 현재 86억호주달러 규모의 혁신전략을 수행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의 불확실성에도 현명하게 대처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을 견실하게 관리
 - ② **인구증가 및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 검토** : 인구학적 변화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정부는 이를 대비하여 중요한 조치들을 이미 시행
 - 향후 5년 동안 640억호주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병원 및 보건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시설 및 의학연구기관 확충 등 보건인프라를 위해 32억호주달러 지출
 - 연금 소득심사를 개정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인구고령화로 연금지급액 증가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연금수령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공정하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을 수행

- 개인소득세 감세 및 보육비용 환급 등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Productive Ageing Package)을 마련하여 노동참여를 제고

③ **인구학적 변화에 대비한 예산 관리** : 위에서 언급한 생산성 제고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전략을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해결책으로 제시

- 인프라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투자는 조세부담의 증가없이 세입 및 중기 재정전망을 호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예산이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로 제한하는 재정전략으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조절

④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 지원** : 기후변화는 호주 환경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므로 효과적인 정책들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호주정부는 탄소저감계획 및 신재생에너지목표계획 등을 도입하여 저오염 경제국가로의 전환 도모
-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그램과 태양광발전소 건립 프로그램 등 저탄소기술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청정에너지계획에 45억호주달러를 투자
- 또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에너지효율주택정책에 향후 4년 동안 30억호주달러를 지원

⑤ **사회통합 촉진** : 정부의 사회통합계획(social inclusion agenda)을 통해 모든 호주인이 사회·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본 개발에 주력

2) 금융위기 이후 실시했던 금융기관간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보증 및 예금보증계획(Guarantee of Large Deposits) 정책을 종료 (2010. 2. 7)

□ 정부는 호주 금융권이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을 2010년 3월 31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

- 동 정책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호주 은행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제 3 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I. 미 국 (2010년 3월 기준)

II. 일 본 (2010년 2월 기준)

III. 영 국 (2010년 3월 기준)

IV. 프랑스 (2010년 2월 기준)

V. 독 일 (2010년 3월 기준)

VI. 캐나다 (2010년 2월 기준)

VII. 호 주 (2010년 1월 기준)

I

미국 (2010년 3월 기준, FY2010: 2009.10.1~2010.9.30)

1. 수입 및 세출 동향

-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재정적자는 약 7,170억달러로 전년 대비 2,398억달러(25.1%) 감소
 - 재정수입은 3.6% 감소하였으나, 재정지출이 14.2% 축소되어 전년에 비해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
 - 재정지출이 FY2009 3월(누계)보다 감소하였으나 FY2008 3월(누계)에 비해서는 14.6% 증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 FY2011 예산안에서는 경제상황 호전 및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FY2010 이후 수입 증대와 재정수지 개선 전망

SECTION 3 >>

〈표 3-I-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8 ¹⁾		FY2009 ¹⁾		FY2010 ¹⁾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1 (추정) ²⁾
	3월	누계 (2007.10 ~2008.3)	3월	누계 (2008.10~ 2009.3)	3월	누계 (2009.10 ~ 2010.3)	변동분	%	
총재정수입	178,889	1,146,042	128,957	989,834	153,358	953,896	-35,938	-3.6	2,567,181
예산(on-Budget)	120,913	828,565	71,507	670,517	103,165	648,716	-21,801	-3.3	1,893,113
예산 외(off-Budget) ³⁾	57,976	317,477	57,450	319,317	50,193	305,179	-14,138	-4.4	674,068
총재정지출	227,028	1,457,441	321,230	1,946,632	218,745	1,670,885	-275,747	-14.2	3,833,860
예산	177,070	1,230,323	267,146	1,698,694	162,696	1,401,780	-296,914	-17.5	3,255,667
예산 외	49,958	227,118	54,084	247,938	56,049	269,105	21,167	8.5	578,193
재정수지	-48,140	-311,399	-192,273	-956,799	-65,387	-716,990	239,809	-25.1	-1,266,679
예산	-56,158	-401,758	-195,639	-1,028,178	-59,531	-753,064	275,114	-26.8	-1,362,554
예산 외	8,018	90,359	3,365	71,379	-5,856	36,074	-35,305	-49.5	95,875
총재원조달 규모	48,140	311,399	192,273	956,799	65,387	716,990	-239,809	-25.1	1,266,679
채무	76,304	289,652	253,534	1,026,310	352,933	739,470	-286,840	-27.9	1,200,671
재무부 operating cash 감소, 증가(-)	-35,111	29,098	-42,503	102,782	-176,714	56,763	-46,019	-44.8	200,000
기타	6,947	-7,352	-18,757	-172,294	-110,832	-79,244	93,050	-54.0	-133,992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10.2월 OMB에서 발표한 FY2011 예산안에 근거한 수치

3) 사회보장기금과 우편서비스기금은 법에 의해 연방예산에서 '예산 외(off-budget)'로 구분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8.3월, 2009.3월, 2010.3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FY2010 3월(누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59억달러(3.6%) 감소한 9,539억달러
 -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세, 법인세 및 사회보험 관련 세입이 FY2008 3월(누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
 - 전년동기 대비 개인소득세 약 362억달러(8.4%), 법인세 약 23억달러(4.0%),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off-budget) 약 141억달러(4.4%) 감소
 - 유산세 및 증여세도 FY2009 3월(누계)에 비해 약 28억달러(22.8%) 감소

〈표 3-I-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8 ¹⁾		FY2009 ¹⁾		FY2010 ¹⁾		전년대비 증감(누계기준)	
	3월	누계 (2007.10 ~ 2008.3)	3월	누계 (2008.10 ~ 2009.3)	3월	누계 (2009.10 ~ 2010.3)	변동분	%
개인소득세	56,705	503,605	41,227	429,701	59,503	393,506	-36,195	-8.4
법인세	32,569	129,470	3,392	56,236	8,578	53,969	-2,267	-4.0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수입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ff-budget)	57,976	317,477	57,450	319,317	50,193	305,179	-14,138	-4.4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n-budget)	15,906	98,014	15,632	98,531	13,081	90,665	-7,866	-8.0
실업보험	353	11,138	338	10,059	693	10,780	721	7.2
기타퇴직연금	325	2,091	324	2,077	318	2,046	-31	-1.5
소비세	5,500	31,494	4,994	28,701	6,782	29,588	887	3.1
유산세 및 증여세	2,405	13,491	1,919	12,106	2,829	9,344	-2,762	-22.8
관세	2,070	13,642	1,522	12,185	1,942	11,632	-553	-4.5
기타 재정수입	5,079	25,621	2,159	20,919	9,438	47,184	26,265	125.6
총재정수입	178,889	1,146,042	128,957	989,834	153,358	953,896	-35,938	-3.6
예산	120,913	828,565	71,507	670,517	103,165	648,716	-21,801	-3.3
예산 외	57,976	317,477	57,450	319,317	50,193	305,179	-14,138	-4.4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8.3월, 2009.3월, 2010.3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0 3월(누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2,757억달러(14.2%) 감소한 1조 6,709억달러를 기록
 - 상업 및 주택금융(housing credit) 분야 지출이 4,986억달러(133.2%) 급감
 - 운용수익 및 환수금 등으로 인한 세입요인(receipt option) 증가로 지출이 마이너스로 나타남
 - 나머지 분야는 대체로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행정 20.6%, 지역개발 19.9%, 농업 12.7% 지출 감소
 -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54.0%, 소득보장지출 27.7%, 보건 16.1%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에너지 1695.9%, 과학, 우주, 기술 21.5%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도 증가

<표 3-I-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8 ¹⁾		FY2009 ¹⁾		FY2010 ¹⁾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3월	누계 (2007.10~ 2008.3)	3월	누계 (2008.10~ 2009.3)	3월	누계 (2009.10~ 2010.3)	변동분	%
국방	46,568	306,685	51,674	331,652	63,869	349,982	18,330	5.5
외교	1,671	13,865	2,165	17,358	3,409	22,759	5,401	31.1
과학, 우주, 기술 일반	2,060	11,236	2,286	11,948	2,663	14,511	2,563	21.5
에너지	775	241	241	218	1,043	3,915	3,697	1695.9
천연자원 및 환경	2,357	15,155	2,310	16,413	3,425	19,310	2,897	17.7
농업	1,489	19,994	1,625	21,504	3,647	18,778	-2,726	-12.7
상업 및 주택금융	-566	611	54,419	374,250	-105,949	-124,383	-498,633	-133.2
교통	5,883	35,743	5,504	38,049	6,471	42,302	4,253	11.2
지역개발	1,807	12,411	2,180	15,417	2,269	12,356	-3,061	-19.9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6,796	45,867	7,111	45,598	12,383	70,230	24,632	54.0
보건	22,558	137,614	33,463	156,194	32,564	181,412	25,218	16.1
메디케어	20,768	185,552	23,499	206,290	39,159	218,479	12,189	5.9
소득보장	36,961	217,873	52,521	271,669	65,904	345,423	73,754	27.1
사회보장	51,690	302,076	56,103	324,176	58,331	347,427	23,251	7.2
보험	4,147	41,551	4,354	46,191	9,828	53,820	7,629	16.5
법무행정	3,896	22,720	4,032	23,844	4,684	27,512	3,668	15.4
일반행정	2,358	8,906	2,801	10,728	1,639	8,514	-2,214	-20.6
순이자지급	21,299	126,345	19,926	94,824	19,280	105,732	10,908	11.5
상계계정수입	-5,489	-47,005	-4,983	-59,690	-5,873	-47,194	12,496	-20.9
합계	227,028	1,457,441	321,230	1,946,632	218,745	1,670,885	-275,747	-14.2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7.10월, 2008.10월, 2009.10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0.3.31일 기준 공공채무⁴⁹⁾는 전년 대비 14.8%(1조 6,462억달러) 증가한 12조 7,731억 달러
 - 주로 시장성 채권 및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증가에 기인
 - 중기채(시장성)가 전년 3월에 비해 약 1조 4,812억달러(48.0%), 장기채 1,418억달러(22.9%) 증가, 단기채는 9.3% 감소
 -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2,901억달러
 - 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4조 4,831억달러 기록

49) 공공채무는 재무성이 발행한 채권으로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표 3-I-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8.3.31			'09.3.31			'10.3.31			전년대비 증감					
	비정부부 소유 채무	정부부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 소유 채무	정부부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 소유 채무	정부부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 소유 채무		정부부 소유 채무		합계	
										변동분	%	변동분	%	변동분	%
시정성:	4,712,865	19,696	4,732,361	6,242,353	23,768	6,266,121	7,733,561	23,481	7,757,041	1,491,208	23.9	-287	-1.2	1,490,920	23.8
단기채(T-Bills)	1,153,879	4,509	1,158,388	2,027,691	5,874	2,033,566	1,838,020	5,458	1,843,478	-189,671	-9.4	-416	-7.1	-190,087	-9.3
중기채(T-Notes)	2,513,108	979	2,514,087	3,084,283	604	3,084,887	4,563,766	2,291	4,566,057	1,479,483	48.0	1,687	279.3	1,481,170	48.0
장기채(T-Bonds)	571,738	92	571,830	617,628	2,921	620,548	788,781	3,605	762,386	141,153	22.9	684	23.4	141,838	22.9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473,940	116	474,056	512,751	369	513,120	572,994	205	573,199	60,243	11.7	-164	-44.4	60,079	11.7
Federal Financing Bank	0	14,000	14,000	0	14,000	14,000	0	11,921	11,921	0	-	-2,079	-14.8	-2,079	-14.8
비시정성:	621,451	4,083,782	4,705,233	591,190	4,269,630	4,860,821	566,508	4,459,574	5,016,082	-34,682	-5.9	189,944	4.4	155,260	3.2
Domestic Series	29,995	0	29,995	29,995	0	29,995	29,995	0	29,995	0	0.0	0	-	0	0.0
Foreign Series	4,886	0	4,886	5,986	0	5,986	4,886	0	4,886	-1,100	-18.4	0	-	-1,100	-18.4
R.E.A. Series	1	0	1	1	0	1	1	0	1	0	0.0	0	-	0	0.0
Slate and Local overnment Series	286,344	0	286,344	240,096	0	240,096	208,494	0	208,494	-31,602	-13.2	0	-	-31,602	-13.2
United States Savings Securities	195,425	0	195,425	193,975	0	193,975	190,293	0	190,293	-3,682	-1.9	0	-	-3,682	-1.9
Government Account Series	99,903	4,083,782	4,183,685	119,543	4,269,139	4,388,682	121,558	4,459,081	4,580,640	2,015	1.7	189,942	4.4	191,957	4.4
Hope Bonds	-	-	-	0	492	492	0	492	492	0	-	1	0.1	1	0.1
Other	4,897	0	4,897	1,594	0	1,594	1,281	0	1,281	-313	-19.6	0	-	-313	-19.6
합계	5,334,116	4,103,479	9,437,594	6,833,543	4,293,398	11,126,941	8,290,069	4,483,054	12,773,123	1,456,525	21.3	189,657	4.4	1,646,182	14.8

자료: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of the U.S.(Dept. of Treasury), 2008.3월, 2009.3월, 2010.3월

II **일본 (2010년 2월 기준, FY2009-10: 2009. 4~2010. 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09.4월부터 2010.2월까지 일반회계 재정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53.2% 감소한 4조 850 억엔을 기록
 - 재정지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19.2% 증가하였으나, 재정수입이 지출 증가보다 큰 폭으로 증가(30.2%)하여 재정적자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수입 증가는 정부채권발행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세입은 감소

- 특별회계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45.4% 크게 감소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2009 예산액
	2월	누계 (2007.4~2008.2)	2월	누계 (2008.4~2009.2)	2월	누계 (2009.4~2010.2)	누계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입	3,668	55,373	8,915	57,730	6,243	75,164	17,434	30.2	102,558
재정지출	3,454	64,936	3,635	66,463	4,497	79,249	12,786	19.2	107,069
수지	214	-9,563	5,280	-8,734	1,746	-4,085	4,648	-53.2	-4,511
〈특별회계〉									
재정수입	28,597	346,510	25,024	333,935	25,928	318,187	-15,748	-4.7	381,673
재정지출	16,673	314,003	19,238	312,990	16,897	306,740	-6,249	-2.0	378,566
수지	11,924	32,508	5,786	20,946	9,031	11,447	-9,499	-45.4	3,107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2월 말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2월(누계)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0.2% 증가한 75조 1,640억엔 규모
 - 조세 및 인지수입은 19조 5,140억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21.8% 감소
 - － 경기회복을 위한 2009 세제개편으로 법인세가 큰 폭(76.3%)으로 감소
 - 정부채권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68.6% 크게 증가
 - － 2010.2월 정부채권 신규 발행규모는 4조 5,510억엔, 누적 발행규모는 45조 6,790억엔에 이름

- 2010.2월(누계) 특별회계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한 318조 1,870억엔
 - 국채정리기금이 전년동기에 비해 10조 1,640억엔(5.7%) 감소
 - 재정투융자 8.7%(2조 9,550억엔), 외국환자금 73.5%(1조 2,230억엔), 노동보험 14.2%(1조 950억엔) 감소

SECTION 3 >>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 (2010년 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FY2009 예산액
	2월	누계 (2007.4~ 2008.2)	2월	누계 (2008.4~ 2009.2)	2월	누계 (2009.4~ 2010.2)	누계기준	%	
조세 및 인지수입	2,022	26,696	5,753	24,942	1,600	19,514	-5,428	-21.8	36,861
조세	1,923	25,795	5,660	24,119	1,514	18,722	-5,397	-22.4	35,791
소득세	1,177	9,763	1,482	9,663	936	8,425	-1,238	-12.8	12,764
법인세	190	6,570	2,775	5,291	67	1,251	-4,039	-76.3	5,175
상속세	142	868	153	886	123	749	-138	-15.5	1,280
소비세	217	4,544	731	4,508	247	4,296	-212	-4.7	9,381
주세	13	818	120	788	13	767	-21	-2.6	1,420
담배세	26	569	73	531	22	516	-16	-2.9	817
휘발류세	-	1,123	107	935	10	1,393	458	48.9	2,663
석유가스세	1	8	1	7	1	7	-1	-6.7	13
항공기연료세	1	53	7	51	1	49	-3	-4.9	83
석유석탄세	33	243	45	256	-	250	-6	-2.3	480
전원개발촉진세	0	203	28	203	0	188	-15	-7.4	330
자동차중량세	66	415	61	412	53	362	-50	-12.1	631
관세	55	610	77	581	40	464	-117	-20.2	744
톤세	1	7	1	7	1	6	-1	-11.5	10
토지세	0	0	0	0	0	0	0	-61.3	-
구세(旧税)	0	0	0	0	0	0	0	1.3	-
인지수입	98	901	93	822	85	792	-31	-3.7	1,070
국영기업수입	1	15	1	14	1	14	0	-2.4	16
정부자산매각수입	12	219	14	218	14	109	-109	-50.0	240
국유재산매각	12	189	6	100	7	71	-29	-29.1	192
회수금 등 수입	0	30	8	118	7	38	-80	-67.7	48
기타수입	53	3,490	71	2,755	77	5,337	2,582	93.7	11,986
국유재산이용수입	4	62	4	65	3	66	1	1.9	75
납부금	23	1,365	21	399	21	363	-36	-8.9	1,023
기타	26	2,063	46	2,292	53	4,908	2,616	114.2	10,888
정부채권발행(公債金)	1,580	21,986	3,075	27,089	4,551	45,679	18,590	68.6	53,455
전년도 잉여금수입	-	-	-	2,711	-	4,511	1,800	66.4	-
총계	3,668	55,373	8,915	57,730	6,243	75,164	17,434	30.2	102,558

주: -는 데이터 없음, 0은 10억엔 미만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2월 말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2010년 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FY2009 예산액
	2월	누계 (2007.4~2 008.2)	2월	누계 (2008.4~2 009.2)	2월	누계 (2009.4~2 010.2)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3,954	35,153	3,920	35,527	3,881	36,223	695	2.0	52,042
등기	7	174	7	172	6	160	-12	-6.8	177
지진재보험	5	52	4	53	5	54	1	1.8	68
국채정리기금	11,135	188,683	7,822	178,534	11,385	168,370	-10,164	-5.7	182,107
재정투융자 ¹⁾	2,062	34,640	2,819	33,802	663	30,847	-2,955	-8.7	45,858
외국환자금	1,000	1,634	502	1,663	30	440	-1,223	-73.5	3,420
특정국유재산정비	0	189	0	184	1	143	-41	-22.5	123
에너지대책	74	1,890	42	1,668	50	1,775	107	6.4	2,504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10	142	10	143	16	183	40	27.6	189
노동보험	205	7,606	182	7,681	1,087	6,587	-1,095	-14.2	7,884
선원보험	5	61	7	58	-	55	-3	-4.5	54
연금	9,441	67,685	9,131	66,563	8,285	65,890	-673	-1.0	76,549
식량안정공급	57	902	47	1,178	41	1,172	-5	-0.5	3,660
국영토지개발사업 ²⁾	26	243	-	-	-	-	-	-	-
농업공제재보험	1	71	2	69	0	83	15	21.3	119
삼림보험	0	11	0	11	0	10	-1	-5.0	11
국유임야사업	61	436	70	408	81	443	35	8.5	487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15	1	14	1	13	-1	-7.1	26
무역재보험	2	835	6	203	0	140	-63	-31.1	212
특허	11	254	10	278	9	279	1	0.4	290
사회자본정비사업 ³⁾	534	5,655	439	5,590	383	5,198	-392	-7.0	5,762
자동차안전 ⁴⁾	5	180	3	136	4	122	-14	-10.2	130
계	28,597	346,510	25,024	333,935	25,928	318,187	-15,748	-4.7	381,673

주: 1) 산업투자자재정융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영토지개발사업이 2008년 일반회계화 됨

3) 도로정비, 치수, 항만정비, 공항정비, 도시개발자금융통이 2008년 사회자본정비사업으로 통합

4) 자동차손해배상보험사업, 자동차검사등록은 2008년 자동차안전으로 통합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2월 말

3. 소관별 세출동향

- 일반회계 2010.2월(누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79조 2,490억엔
- 2010.1월 경기부양을 위한 에코포인트제도 실시에 대한 자원배정 등으로 경제산업성, 환경성의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산업성의 지출 누계는 1조 8,840억엔으로 전년대비 227.7% 크게 증가
 - 환경성의 지출 누계는 2,590억엔으로 전년 대비 239.2% 증가
 - 경제산업성, 환경성과 함께 에코포인트 재원이 배정된 국토교통성의 경우도 세출이 전년 대비 29.3%(1조 900억엔) 증가
 - 위 부성을 제외하고 후생노동성과 총무성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짐
 - 전년 대비 세출 증가가 후생노동성 31.6%(5조 9,450억엔), 총무성 19.4%(3조 430억엔)에 이름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2010년 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FY2009 예산액
	2월	누계 (2007.4~ 2008.2)	2월	누계 (2008.4~ 2009.2)	2월	누계 (2009.4~ 2010.2)	누계 기준	%	
황실비	0	3	0	3	0	3	0	-1.3	7
국회	8	104	8	103	8	104	1	0.9	146
재판소	21	267	22	276	21	264	-12	-4.2	336
회계검사원	1	17	1	14	1	13	0	-0.9	17
내각	3	41	3	37	4	41	5	12.3	104
내각부	41	390	43	407	40	400	-7	-1.8	3,566
총무성	42	14,544	31	15,714	24	18,757	3,043	19.4	20,348
법무성	50	570	42	555	44	563	8	1.4	764
외무성	53	595	38	588	60	642	55	9.3	1,013
재무성	376	15,519	137	15,325	122	16,137	812	5.3	23,378
문부과학성	272	4,538	242	4,530	271	4,830	300	6.6	6,589
후생노동성	1,911	18,145	2,368	18,826	2,729	24,771	5,945	31.6	29,401
농림수산성	112	1,815	131	1,827	148	1,977	150	8.2	3,576
경제산업성	61	640	43	575	293	1,884	1,309	227.7	2,873
국토교통성	171	3,844	216	3,717	405	4,807	1,090	29.3	9,373
환경성	7	65	7	76	21	259	182	239.2	583
방위성	324	3,839	305	3,889	305	3,795	-94	-2.4	4,995
재정지출(합계)	3,454	64,936	3,635	66,463	4,497	79,249	12,786	19.2	107,069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2월 말

- 특별회계 2010.2월 지출(누계)은 전년 대비 2.0%(6조 2,490억엔) 감소
 - 국채정리기금의 지출 감소 규모가 7조 540억엔(4.7%)으로 가장 크고, 재정투융자 지출 감소 규모가 2조 1,390억엔(6.7%)을 기록
 - 연금지출은 2조 7,730억엔(4.0%) 증가한 71조 3,640억엔에 달함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 (2010년 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FY2009 예산액
	2월	누계 (2007.4~2008.2)	2월	누계 (2008.4~2009.2)	2월	누계 (2009.4~2010.2)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24	49,271	22	49,634	579	50,484	849	1.7	51,856
등기	10	116	11	116	10	117	1	1.2	171
지진재보험	0	0	0	0	0	0	0	-10.1	68
국채정리기금	3,872	151,410	5,265	149,227	4,139	142,172	-7,054	-4.7	181,287
재정투융자 ¹⁾	1,943	32,495	2,728	31,874	581	29,735	-2,139	-6.7	44,525
외국환자금	41	570	26	522	10	169	-353	-67.6	1,643
특정국유재산정비	1	16	6	32	1	16	-16	-50.8	76
에너지대책	46	1,983	31	2,018	35	1,970	-47	-2.4	2,598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10	112	11	113	10	116	4	3.4	207
노동보험	423	6,109	426	6,185	476	5,929	-256	-4.1	7,660
선원보험	5	46	5	46	-	48	2	3.6	54
연금	9,953	68,038	10,332	68,591	10,648	71,364	2,773	4.0	76,431
식량안정공급	73	1,177	39	1,391	43	1,125	-266	-19.1	3,660
국영토지개발사업 ²⁾	17	185	-	-	-	-	-	-	-
농업공제재보험	4	42	3	38	3	57	19	50.3	109
삼림보험	1	4	0	2	0	1	-1	-53.2	5
국유임야사업	64	447	76	426	87	455	30	7.0	542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13	1	12	1	11	-2	-13.2	16
무역재보험	0	4	1	15	0	12	-3	-21.8	212
특허	6	80	7	86	7	88	2	2.9	125
사회자본정비사업 ³⁾	173	1,790	244	2,607	263	2,825	219	8.4	7,249
자동차안전 ⁴⁾	4	93	3	55	3	45	-10	-18.3	71
계	16,673	314,003	19,238	312,990	16,897	306,740	-6,249	-2.0	378,566

주: 1) 산업투자자재정융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영토지개발사업이 2008년 일반회계화 됨

3) 도로정비, 치수, 항만정비, 공항정비, 도시개발자금융통이 2008년 사회자본정비사업으로 통합

4) 자동차손해배상보험사업, 자동차검사등록은 2008년 자동차안전으로 통합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2월 말

4. 국가채무 동향

□ 2009년 12월 31일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871조 5,104억엔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

- 국채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705조 3,039억엔 규모
 - 정부채권은 5.8% 증가한 반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채권은 7.2% 감소
 - 정부채 중에서도 특히 1년 미만 단기채 증가가 두드러짐(32.5% 증가)
 - 중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의 경우 36.4% 감소하였음
- 정부보증채무는 작년 12월 말에 비해 0.2% 감소한 46조 3,452억엔 규모

〈표 3-Ⅱ-6〉 중앙정부채무(12월 31일 기준)

(단위: 억엔)

구분	2007	2008	2009	전년 대비 증감	
	12월	12월	12월	증감액	%
국채	6,786,416	6,815,656	7,053,039	237,383	3.5
정부채권	5,345,145	5,454,542	5,772,775	318,233	5.8
장기(10년 이상)	3,544,854	3,587,723	3,690,146	102,423	2.9
중기(2~5년)	1,525,256	1,594,698	1,721,987	127,289	8.0
단기(1년 미만)	275,035	272,121	360,641	88,520	32.5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	1,410,434	1,332,614	1,236,850	-95,764	-7.2
장기(10년 이상)	897,750	938,261	985,906	47,645	5.1
중기(2~5년)	512,684	394,353	250,943	-143,410	-36.4
교부채권(Subsidy bond)	5,654	5,249	4,463	-786	-15.0
출자채권 등	24,862	22,930	18,198	-4,732	-20.6
기타 채권 ¹⁾	321	321	20,754	20,433	6365.4
차입금	570,366	562,470	564,745	2,275	0.4
장기(1년 초과)	218,387	210,729	214,111	3,382	1.6
단기(1년 이하)	351,979	351,740	350,635	-1,105	-0.3
재정어음(Financing Bills)	1,023,269	1,088,779	1,097,320	8,541	0.8
총계	8,380,050	8,466,905	8,715,104	248,199	2.9
정부보증채무	479,214	464,247	463,452	-795	-0.2

주: 1) 기타 채권의 경우 연도별로 상이함. 2007년 일본국유철도 청산사업단 채권승계 국채, 2008년은 석유채권승계 채권, 2009년은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 위기대응업무 채권과 일본고속도로 보유·채무상환계획 승계 채권의 합계수치임

1.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장기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가 보유한 채권과 국내 차입금을 포함함
3. 헤세이 22년(2010년) 3월 말 자료는 헤세이 22년 5월 10일 공표 예정

자료: 일본 재무성, 국채 및 차입금 및 정부보증채무 현황 - 헤세이 19년, 20년, 21년 각 연도 12.31 기준

Ⅲ 영국 (2010년 3월 기준, FY2009-10: 2009. 4~2010. 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공공부문 재정상태는 경기침체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 공공부문 2009.4월~2010.3월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16.4% 증가한 1,076억파운드에 달함
 - 2010년 3월 재정적자는 148억파운드로 전년 3월보다 28억파운드 증가
 - 2010.3.31 기준 순부채규모는 8,900억파운드로 GDP의 62.0%를 기록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3월	누계 (2007.4~ 2008.3)	3월	누계 (2008.4~ 2009.3)	3월	누계 (2009.4~ 2010.3)	누계 기준	%
재정수지	-3.8	-4.6	-12.0	-49.7	-14.8	-107.6	-57.9	116.4
순차입	11.4	33.7	20.1	86.9	23.5	152.8	65.9	75.9
순부채	621.6		742.3		890.0		147.7	19.9
GDP 대비 순부채	43.0		52.9		62.0		9.1%p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Last update, 2010.4.21)

- 중앙정부의 FY2009-10 3월 누계기준 재정적자는 1,109억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630억파운드(131.6%) 증가
 -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5.3% 감소한 반면, 지출은 6.8% 증가해 재정수지 악화
 - 순투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73억파운드(16.6%) 증가한 510억파운드를 기록
 - 순차입규모도 1,619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76.7% 크게 증가

SECTION 3 >>

〈표 3-Ⅲ-2〉 중앙정부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3월	누계 (2007.4~ 2008.3)	3월	누계 (2008.4~ 2009.3)	3월	누계 (2009.4~ 2010.3)	누계 기준	%
재정수입 ¹⁾	43.1	510.4	38.4	495.4	39.8	469.2	-26.2	-5.3
생산물과세(VAT포함)	14.4	175.8	12.8	167.6	14.6	167.5	-0.1	-0.1
소득세 및 재산세	16.0	208.1	13.4	200.8	13.4	178.7	-22.1	-11.0
기타과세	1.1	13.3	1.2	12.7	1.1	12.2	-0.4	-3.5
사회보장기여금	9.7	95.4	9.2	96.6	9.2	95.7	-0.9	-1.0
이자 및 배당금	1.3	10.0	1.2	9.7	0.9	6.8	-2.8	-29.3
기타 재정수입	0.6	7.7	0.7	8.0	0.7	8.3	0.3	3.3
재정지출	45.2	510.1	47.3	536.8	52.3	573.4	36.6	6.8
이자	1.0	30.0	1.0	30.5	2.4	30.9	0.3	1.1
순사회복지급여	10.9	140.7	12.8	153.6	14.1	167.3	13.7	8.9
기타 재정지출	33.3	339.4	33.4	352.7	35.8	375.2	22.6	6.4
감가상각	-0.5	-6.1	-0.5	-6.5	-0.6	-6.8	-0.3	3.8
재정수지	-2.6	-5.8	-9.5	-47.9	-13.0	-110.9	-63.0	131.6
투자 ²⁾	8.8	39.0	8.5	50.2	9.2	57.7	7.5	14.9
less Depreciation	0.5	6.1	0.5	6.5	0.6	6.8	0.3	3.8
순투자	8.3	32.9	8.0	43.7	8.6	51.0	7.3	16.6
순차입	10.9	38.7	17.4	91.6	21.6	161.9	70.3	76.7

주: 1) 재정수입에 대한 정의는 영국 재무부에서 공표한 바를 따름(상속세 포함)

2) 투자 = 자본형성 + 토지순취득 + 순투자보조금 - 자본자산매각

투자 FY2007-08은 ONS에 항목 없음. '투자 = 순투자 + less Depreciation'으로 산출.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2. 세목별 세입동향

- FY2009-10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감면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5.3%(262억파운드) 감소
 - 소득세는 1,408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8.4% 감소, 사회보장기여금은 957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 감소에 그침
 -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2010.2월에 정부예상에 비해 합계 10억파운드 증가
 - 법인세입은 379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9.5% 감소, 부가가치세는 819억파운드로 4.1% 감소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3월	누계 (2007.4~ 2008.3)	3월	누계 (2008.4~ 2009.3)	3월	누계 (2009.4~ 2010.3)	누계 기준	%
생산물과세	14.4	175.8	12.8	167.6	14.6	167.5	-0.1	-0.1
부가가치세	7.7	89.9	6.3	85.4	7.4	81.9	-3.5	-4.1
소득세 및 재산세	16.0	208.1	13.4	200.8	13.4	178.7	-22.1	-11.0
소득세 ¹⁾	13.9	158.8	12.4	153.7	11.9	140.8	-12.9	-8.4
법인세 등 ²⁾	2.1	49.3	0.9	47.1	1.4	37.9	-9.2	-19.5
기타 과세(tax)	1.1	13.3	1.2	12.7	1.1	12.2	-0.4	-3.5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9.7	95.4	9.2	96.6	9.2	95.7	-0.9	-1.0
이자 및 배당금	1.3	10.0	1.2	9.7	0.9	6.8	-2.8	-29.3
기타 재정수입(receipts)	0.6	7.7	0.7	8.0	0.7	8.3	0.3	3.3
재정수입	43.1	510.4	38.4	495.4	39.8	469.2	-26.2	-5.3

주: 1) 가구기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법인의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포함

2) 주로 법인세와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임. 기타 소득세 포함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09-10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5,734억파운드 규모

○ 사회복지급여 지출은 전년 대비 8.9%(137억파운드) 증가한 1,673억파운드를 기록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3월	누계 (2007.4~ 2008.3)	3월	누계 (2008.4~ 2009.3)	3월	누계 (2009.4~ 2010.3)	누계 기준	%
이자	1.0	30.0	1.0	30.5	2.4	30.9	0.3	1.1
순사회복지급여	10.9	140.7	12.8	153.6	14.1	167.3	13.7	8.9
기타 재정지출	33.3	339.4	33.4	352.7	35.8	375.2	22.6	6.4
재정지출	45.2	510.1	47.3	536.8	52.3	573.4	36.6	6.8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4. 국가채무 동향

- FY2009-10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1,528억파운드 규모로 전년 대비 75.9% 증가
 - 3월 한달간 235억파운드의 순차입 발생, 전년 3월보다 34억파운드 증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차입규모는 전년 대비 각 76.7%, 29.2% 증가한 반면, 공기업의 순차입규모는 60.8% 감소

- 공공부문 순부채규모는 GDP 대비 62.0%로 전년 대비 9.1%p 증가
 - GDP 대비 순부채규모는 FY2007-08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임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3월	누계 (2007.4~ 2008.3)	3월	누계 (2008.4~ 2009.3)	3월	누계 (2009.4~ 2010.3)	누계 기준	%		
재정수지	-3.8	-4.6	-12.0	-49.7	-14.8	-107.6	-57.9	116.4		
순투자	7.6	29.2	8.1	37.2	8.7	45.2	8.0	21.6		
순 차 입	공공부문(A+B)	11.4	33.7	20.1	86.9	23.5	152.8	65.9	75.9	
	정부(A)	중앙정부	10.9	38.7	17.4	91.6	21.6	161.9	70.3	76.7
		지방정부	0.3	-0.1	2.0	4.7	2.1	6.1	1.4	29.2
	합계	11.2	38.6	19.5	96.3	23.8	168.0	71.7	74.4	
공기업(B)	0.2	-4.8	0.6	-9.4	-0.3	-15.1	-5.7	60.8		
순국가채무	621.6		742.3		890.0		147.7			
GDP 대비 국가채무	43.0		52.9		62.0		9.1%p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IV

프랑스 (2010년 2월 기준, FY2010: 2010.1~2010.12)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1월~2월까지 재정수지는 218억유로 적자로 전년 대비 33.0% 개선
 - 일반회계 재정지출(누적)은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22.9% 증가하여 재정수지 개선
 -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예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2009년 2월의 재정수입(누적)이 경기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급감한 것을 반영
 - 2010년 재정수지는 약 1,490억유로 적자 전망(Ⅱ. 주요국의 재정동향 참고)
 - 특별회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48.1%, 2008년(2월 누적) 대비 41.9% 크게 개선됨

〈표 3-Ⅳ-1〉 중앙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Md€))

구분	2008		2009		2010		전년 대비 증감	
	2월	누계 (2008.1 ~2월)	2월	누계 (2009.1 ~2월)	2월	누계 (2010.1 ~2월)	누계 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지	-13.0	-16.5	-21.1	-25.4	-10.8	-18.1	7.3	-28.8
재정지출 (대금상환 및 감세 제외)	34.1	57.5	35.4	57.5	30.2	57.5	0.0	0.0
재정수입 (대금상환 및 감세 별도)	21.1	41.0	14.2	32.1	19.4	39.4	7.3	22.9
특별회계 재정수지	-3.4	-6.4	-3.3	-7.1	-1.8	-3.7	3.4	-48.1
지방정부에 대한 선불	-3.6	-7.2	-3.9	-7.9	-1.4	-3.3	4.6	-58.4
재정수지	-16.3	-22.8	-24.4	-32.6	-12.6	-21.8	10.8	-33.0

주: 2월 수치는(2월 누계 - 1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10.02.28, 2010.01.31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2월까지 누계기준 세입은 전년 대비 62억유로(20.0%) 증가한 373억유로
 - 2009년 기업지원을 위한 환급확대정책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00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일정수준 회복
 - 법인세는 2009년 2월(누적)에 비해 83.9% 크게 증가
 - : 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2008.12.4)으로 2009~2010에 걸쳐 법인세 환급의 확대 시행, 법인세입이 적자상태로 표현됨
 -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15.1% 증가

〈표 3-Ⅳ-2〉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유로 (Md€))

구분	2008		2009		2010		전년 대비 증감		2010 전망치
	2월	누계 (2008.1~ 2월)	2월	누계 (2009.1~ 2월)	2월	누계 (2010.1~ 2월)	누계 기준	%	
세수	20.6	40.3	13.5	31.1	18.7	37.3	6.2	20.0	254.4
소득세	9.0	12.0	9.5	12.5	9.1	12.2	-0.3	-2.5	48.9
법인세	0.2	0.5	-4.6	-5.2	-0.7	-0.8	4.3	-83.9	34.9
TIPP ¹⁾	1.3	2.5	1.4	2.3	1.2	1.9	-0.4	-17.6	14.5
부가가치세	8.4	21.9	5.7	19.1	8.0	22.0	2.9	15.1	126.5
기타	1.7	3.3	1.5	2.4	1.1	2.1	-0.3	-13.2	29.5
세외수입	0.4	0.7	0.6	0.9	0.4	1.7	0.9	97.8	16.1
소계	21.0	41.0	14.1	32.0	19.1	39.0	7.1	22.1	270.4
기타 수입	0.1	0.1	0.1	0.1	0.3	0.4	0.3	195.0	3.1
총 재정수입	21.1	41.0	14.2	32.1	19.4	39.4	7.3	22.9	273.6

주: 1)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Taxe intérieure sur les produits pétroliers: TIPP)

1. 2월 수치는 (2월 누계 - 1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8~2010 각 년도 1, 2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년 2월 누계기준 세출은 전년 대비 43억유로(10.3%) 감소한 375억유로
 - 인건비가 38억유로(19.0%), 투자비 14억유로(89.0%) 감소

-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에 사업소세 개편 보상금이 추가되면서 2010년 2월 (누적) 보조금은 전년 대비 27.6% 증가
 - 2010년 1월부터 사업소세 개편에 따른 보상으로 매월 약 27억유로 지급

〈표 3-IV-3〉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유로 (Md€))

구분	2008		2009		2010		전년 대비 증감	
	2월	누계 (2008.1 ~2월)	2월	누계 (2009.1 ~2월)	2월	누계 (2010.1 ~2월)	누계 기준	%
세출	22.7	44.2	21.1	41.8	19.3	37.5	-4.3	-10.3
예비비	0.0	0.9	0.0	1.0	0.0	1.0	0.0	-0.5
인건비	9.9	20.6	10.9	20.2	8.1	16.3	-3.8	-19.0
운용비	2.7	4.9	2.2	5.1	2.8	5.5	0.4	8.8
국채이자	0.2	3.3	0.1	3.1	0.0	2.9	-0.2	-5.1
투자비	0.4	1.2	0.8	1.6	0.2	0.2	-1.4	-89.0
이전비 ¹⁾	9.5	13.3	7.0	11.0	8.3	11.6	0.6	5.8
재정운용비용	0.0	0.0	0.0	0.0	0.0	0.0	-	-
미래투자프로그램 지출	-	-	-	-	0.0	0.0	-	-
보조금(PSR)	11.4	13.3	14.3	15.7	10.9	20.0	4.3	27.6
지방정부보조금	6.6	8.5	11.2	11.2	4.4	8.8	-2.4	-21.1
사업소세 개편(폐지)에 따른 보상금	-	-	-	-	2.7	5.3	5.3	-
EU보조금	4.7	4.7	3.1	4.5	3.8	5.9	1.4	31.0
총재정지출	34.1	57.5	35.4	57.5	30.2	57.5	0.0	0.0

주: 1) 이전비(Dépenses d'intervention)에는 가계이전비, 기업이전비,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소송비용이 포함됨

1. 표에서 0은 단위 미만 값, -는 데이터 없음

2. 2월 수치는 (2월 누계 - 1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8~2010 각 연도 1, 2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0년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채는 1조 1,640억유로로 전년 대비 12% 증가
 - 1년 미만 단기채권이 전년 대비 500억유로(32%) 증가로 가장 큰 상승폭
 - 4% OAT(2060, 4. 25) 등 50년 장기채권(benchmark bond) 50억유로 신규 발행

〈표 3-Ⅳ-4〉 중앙정부 국채현황

(단위: 십억유로 (Md€))

구분	2008	2009	2010	전년 대비 증감	
	2008.2.29.	2009.2.28.	2010.2.28.	증감액	%
중앙정부국채	945	1,041	1,164	123	12
OAT/장기채권(10~50년)	658	687	744	57	8
BTAN/중기채권(2~5년)	195	197	212	15	8
BTF/단기채권(1년 미만)	92	157	207	50	32
평균만기기간	7년 63일	6년295일	6년292일		

자료: Agence France Trésor(채무담당기관)의 월간보고서(Monthly Bulletin No.233) 2008~2010 각 연도 3월호

V

독일 (2010년 3월 기준, FY2009: 2009.1.1~2009. 12. 31)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3월 (누계기준) 재정적자는 279억유로로 전년 대비 60.3% 크게 증가
 -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4.9% 증가
 - 재정수입 중 세수는 전년 대비 7.4% 감소, 이는 2010년 연방예산안에서 세입의 7.0% 감소 전망과 유사한 규모임
 - 연방노동국(Federal Labour Office) 인력 증원, 건강보험기금 확충(보험료 인하 대응조치), 우체국공무원연금 연방보조금 산식 변경으로 재정지출 증가

〈표 3-V-1〉 연방정부 재정

(단위: 십억유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추정)
	3월	누계1) (2008.1-3월)	3월	누계1) (2009.1-3월)	3월	누계1) (2010.1-3월)	변동분	%	
재정지출	18.1	76.6	20.4	78.0	21.4	81.9	3.8	4.9	319.5
재정수입	21.7	58.8	24.2	60.7	22.1	54.0	-6.7	-11.1	238.9
세수	17.1	49.6	16.4	49.3	17.3	45.7	-3.6	-7.4	211.9
재정수지	3.6	-17.8	3.8	-17.4	0.6	-27.9	-10.5	60.3	-80.6

주: 1) 잠정치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2~3월, 2009.2~3월, 2010.2~3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1~3월까지 연방정부 총재정수입은 약 540억유로로 전년보다 67억유로(11.1%) 감소
 - 3월까지 조세수입은 457억유로로 전년보다 36억유로(7.4%) 감소, 이 중 소득세 및 법인세가 22억유로(11.1%) 감소하여 가장 큰 비중 차지
 - 낮은 소득세율과 성장촉진법(Growth Acceleration Act)에 따른 자녀수당(child benefit) 인상으로 소득세(원천징수분)가 전년보다 11.7%(15억유로) 감소
: 2009.3월에 비해 원천소득세에서 지출되는 자녀수당은 3억유로(10.1%) 증가
 -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의 세금부담경감 조치 등으로 법인세는 전년 대비 55.6% (12억유로) 크게 감소
 - 2010.3월(누계)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27.1%(약 31억유로) 감소
 -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의 연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기타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임
: 2010년부터 중앙은행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 및 상환기금” 채무 상환에 배정

SECTION 3 >>

〈표 3-V-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추정)
	3월	누계 (2008.1 -3월)	3월	누계 (2009.1 -3월)	3월	누계 (2010.1 -3월)	변동분	%	
I. 조세수입	17,040	49,559	16,408	49,320	17,304	45,687	-3,633	-7.4	211,887
공통세:	15,777	44,343	15,182	43,652	14,215	41,004	-2,648	-6.1	171,884
소득세 및 법인세	8,838	20,425	8,583	20,449	8,292	18,202	-2,247	-11.1	73,391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분)	4,365	12,562	4,375	12,986	3,877	11,465	-1,521	-11.7	53,083
소득세(연말정산분)	1,220	1,567	1,635	1,262	2,480	2,616	1,354	107.3	10,179
소득세(분리과세분)	365	1,545	125	1,598	296	1,403	-195	-12.2	5,343
소득세(이자원천징수분)	360	2,379	275	2,403	220	1,743	-660	-27.5	5,060
법인세	2,528	2,372	2,171	2,199	1,420	976	-1,223	-55.6	3,595
부가가치세	6,938	23,849	6,599	23,201	5,918	22,756	-445	-1.9	97,274
수입부가가치세	2	70	2	3	4	46	43	1433.3	1,219
에너지세	3,041	4,668	2,982	4,777	2,780	4,446	-331	-6.9	39,400
담배세	1,127	2,547	1,046	2,365	1,266	2,462	97	4.1	13,590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1,434	3,192	1,382	3,191	1,263	2,856	-335	-10.5	10,950
보험세	679	4,540	644	4,502	744	4,496	-6	-0.1	10,450
전기세	519	1,547	538	1,560	640	1,498	-62	-4.0	6,350
자동차세	-	-	-	-	809	2,345	-	-	8,240
주세	166	627	139	594	130	527	-67	-11.3	2,082
커피세	68	232	67	225	70	238	13	5.8	1,010
추가 주정부 교부금	-3,603	-3,603	-3,445	-3,445	-3,188	-3,188	257	-7.5	-12,694
GNP 연계 EU예산 출자금	-1,327	-5,449	-1,257	-4,896	-799	-6,475	-1,579	32.3	-22,030
부가가치세 연계 EU예산 출 자금	-316	-1,578	-332	-1,659	-76	-687	972	-58.6	-1,930
단거리 대중교통을 위한 주정부 지원	-556	-1,669	-565	-1,694	-573	-1,719	-25	1.5	-6,877
자동차세 및 HGV 통행료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	-	-	-	0	-2,248	-	-	-8,992
II. 기타 수입	4,714	9,246	7,794	11,346	4,717	8,274	-3,072	-27.1	27,037
경제활동 수입	3,507	3,953	3,619	3,799	3,510	3,866	67	1.8	4,279
이자수입	62	159	45	250	10	82	-168	-67.2	395
차관수익 및 민영화 수입	267	810	236	770	318	958	188	24.4	4,147
총재정수입	21,754	58,805	24,203	60,667	22,021	53,961	-6,706	-11.1	238,924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2~3월, 2009.2~3월, 2010.2~3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1~3월까지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전년에 비해 38억유로(4.9%) 증가한 약 819억유로
 - 사회보장 및 전쟁배상금 지출이 전년 대비 13.9%(56억유로) 크게 증가한 반면, 교통 및 통신 11.0%, 금융 9.3%, 교육 및 문화 6.0%, 공공서비스 4.3% 감소
 - 실업보험 지출이 2010.3월까지 35억유로로 사회보장 지출 증가를 주도

- (참고) 2차 경기부양책(2009.2월)의 '투자 및 상환펀드'에 2010년 3월까지 74억유로 집행
 -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투자 및 상환펀드 총 204억유로 조성, 연방예산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배기가스기준 충족 신차구입 보조금(car-scraping bonus)에 48억유로, 주 및 지방정부의 미래지향적 투자에 약 17억유로, 연방의 투자에 약 8억유로
 - 투자 및 상환펀드 채무상환을 위해 독일 중앙은행 수익금에서 6억유로 배정

SECTION 3 >>

〈표 3-V-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추정)
	3월	누계 (2008.1 ~3월)	3월	누계 (2009.1 ~3월)	3월	누계 (2010.1 ~3월)	변동분	%	
일반공공서비스	3,465	12,584	3,987	13,794	4,140	13,200	-594	-4.3	54,219
경제협력 및 개발	233	1,665	371	1,930	337	1,684	-246	-12.7	6,000
국방	2,120	7,472	2,356	8,048	2,236	8,077	29	0.4	31,188
연방행정	457	1,447	558	1,597	489	1,509	-88	-5.5	6,258
세무행정	242	675	296	823	324	903	80	9.7	3,944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711	2,374	1,075	2,812	839	2,642	-170	-6.0	15,402
연방 교육 및 훈련 보조	83	384	100	432	110	441	9	2.1	1,382
R&D	391	894	528	1,017	505	1,199	182	17.9	9,124
사회보장, 전쟁관련 배상금	11,239	39,933	11,978	40,229	13,897	45,834	5,605	13.9	173,074
사회보장	6,227	24,186	6,290	24,459	6,426	24,968	509	2.1	78,088
실업보험	632	1,896	0	0	1,695	3,525	3,525	-	7,927
기초실업급여 :실업급여 II	2,823	8,486	3,014	8,626	3,074	9,014	388	4.5	38,311
실업급여 II, 주택 및 난방보조	330	990	303	857	262	817	-40	-4.7	3,400
주거보조	31	98	55	134	75	227	93	69.4	791
육아양육비	77	256	391	1,186	417	1,204	18	1.5	4,485
전쟁연금 및 대상자 복지	189	683	203	657	185	603	-54	-8.2	1,908
보건, 환경, 체육	54	189	91	218	73	220	2	0.9	1,414
주택,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77	275	76	252	79	284	32	12.7	2,034
주택	57	222	48	206	55	233	27	13.1	1,286
식품, 농업, 임업 및 에너지, 수자원 공급, 무역, 서비스	192	2,475	218	2,043	236	2,185	142	7.0	7,100
지역발전	52	193	65	134	46	118	-16	-11.9	684
석탄채굴	0	1,817	0	1,375	0	1,319	-56	-4.1	1,351
보증	60	125	25	73	48	237	164	224.7	2,050
교통, 통신	544	2,003	649	2,010	577	1,788	-222	-11.0	12,351
도로(지방운송재정법 제외)	273	766	297	688	294	703	15	2.2	6,335
영리기업, 부동산 일반 및 자본자산	703	1,513	1,237	3,027	1,256	3,325	298	9.8	16,374
연방 철도기금	0	93	437	1,082	429	1,074	-8	-0.7	5,330
구 독일연방철도/독일국영철도회사 (Deutsche Bahn AG)	166	385	242	794	240	662	-132	-16.6	4,328
금융 일반	1,177	15,281	1,099	13,640	303	12,377	-1,263	-9.3	37,532
이자지출	1,101	14,724	1,024	13,204	224	12,135	-1,069	-8.1	36,751
총재정지출	18,165	76,628	20,411	78,026	21,401	81,856	3,830	4.9	319,500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2~3월, 2009.2~3월, 2010.2~3월

4. 국가채무 동향

-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2010.2.28 기준 연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1조 691억유로를 기록
 - 재무부할인채권이 전년에 비해 390억유로(66.6%), 연방재무부중기채권은 150억유로(13.0%), 특별연방채권 120억유로(7.0%) 증가
 - 연방채권 발행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60억유로(10%) 증가한 6,042억유로

〈표 3-V-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08.02.29	'09.02.28	'10.02.28	전년대비 증감	
				변동분	%
물가연동국채(Index Linked Bonds)	15,000	22,000	29,000	7,000	31.8
연방채권(Federal bonds) ¹⁾	591,218	598,218	604,204	5,986	1.0
특별연방채권(Special federal bonds)	166,000	171,000	183,000	12,000	7.0
연방저축채권(Federal savings bonds)	10,161	9,523	9,429	-94	-1.0
연방재무부중기채권(Federal treasury notes)	115,000	115,000	130,000	15,000	13.0
재무부할인채권(Treasury discount paper)	35,495	58,585	97,628	39,043	66.6
연방재무부단기채권(Treasury financing paper) ²⁾	2,316	2,109	790	-1,319	-62.5
독일정부일일채권(German government day-bond)	0	3,443	2,353	-1,090	-31.7
Loans against borrowers' notes	14,902	13,140	12,679	-461	-3.5
Treuhand medium-term notes	205	51	51	0	0.0
Other intra-annual credit-market funds	0	2,100	-	-2,100	-100.0
합계	950,297	995,170	1,069,135	73,965	7.4

주: 1) 재정적자 보전용 장기국채, 10년 및 30년 만기

2) 1년 및 2년 만기 연방재무부중기채권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3월, 2009.3월, 2010.3월

VI

캐나다 (2010년 2월 기준, FY2008-09: 2008.04~2009.0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09.4~2010.2월 재정수지는 2009.2월(누계) 13억캐나다달러(CAD) 흑자에 비해 크게 악화된 405억CAD 적자를 기록, 전년 대비 3200% 재정수지 악화
 - 경기부양책(Canada's Economic Action Plan)으로 인한 적자는 180억CAD로, 재정적자 405억CAD의 약 44%를 차지
 -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9%(169억CAD) 감소한 1,958억CAD로 대부분의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임
 - 프로그램지출은 고용보험지출과 정부간이전지출 확대, 자동차산업지원으로 전년 대비 14.4%(264억CAD) 증가

〈표 3-VI-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2월	누계 (2007.4~ 2008.2)	2월	누계 (2008.4~ 2009.2)	2월	누계 (2009.4~ 2010.2)	변동분	%
예산(발생주의)								
재정수입	22,336	218,652	19,635	212,673	20,388	195,768	-16,905	-7.9
재정지출								
프로그램 지출	-16,667	-175,465	-16,533	-182,850	-19,034	-209,230	-26,380	14.4
이자지출	-2,649	-30,561	-2,285	-28,515	-2,256	-27,064	1,451	-5.1
재정수지(a)	3,020	12,626	817	1,308	-902	-40,526	-41,834	-3,198.3
예산외(b)	-2,261	2,385	-14,638	-82,662	-1,959	-25,649	57,013	-69.0
필요/잉여 자원규모(a+b=c)	759	15,011	-13,821	-81,354	-2,861	-66,175	15,179	-18.7
순재원조달 규모(d)	220	-31,211	15,982	108,731	-782	37,631	-71,100	-65.4
순현금수지 변화분(c+d)	979	-16,200	2,161	27,377	-3,643	-28,544	-55,921	-204.3
기말 현금수지		5,003		38,616		16,487	-22,129	-57.3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2월, 2010.2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2월(누계) 재정수입은 1,958억CAD로 전년동기에 비해 169억CAD(7.9%) 감소
 - (개인소득세) 실업률 상승과 근로소득우대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 주택개조세액공제(Home Renovation Tax Credit) 등 조세감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6.9%(73억CAD) 감소
 - (법인세) 세금환급 증가를 반영, 전년동기 대비 16.6%(46억CAD) 감소
 - (GST) 소비부진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한 226억CAD를 기록

〈표 3-VI-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누계기준)	
	2월	누계 (2007.4~ 2008.2)	2월	누계 (2008.4~ 2009.2)	2월	누계 (2009.4~ 2010.2)	변동분	%
조세수입								
소득세	15,789	143,357	13,304	138,766	13,506	126,162	-12,604	-9.1
개인소득세	9,637	101,584	9,667	105,495	8,982	98,216	-7,279	-6.9
법인세	5,690	36,478	3,180	27,429	4,172	22,869	-4,560	-16.6
비거주자	462	5,295	457	5,842	352	5,077	-765	-13.1
소비세	2,909	40,875	2,510	36,810	3,291	35,122	-1,688	-4.6
GST (Goods and services tax)	1,802	28,020	1,443	23,841	2,192	22,584	-1,257	-5.3
에너지세			436	4,735	432	4,770	35	0.7
수입관세	310	3,530	327	3,720	297	3,187	-533	-14.3
기타 소비세 ¹⁾	797	9,325	304	4,514	370	4,581	67	1.5
총조세수입	18,698	184,232	15,814	175,576	16,797	161,284	-14,292	-8.1
고용보험료	1,859	14,681	1,911	14,850	1,956	14,739	-111	-0.7
기타 수입	1,779	19,739	1,910	22,247	1,635	19,745	-2,502	-11.2
총재정수입	22,336	218,652	19,635	212,673	20,388	195,768	-16,905	-7.9

주: 1) FY2007/08는 판매 및 소비세(Sales and excise taxes)와 항공여행객안전부과금(Air Travellers Security Charge) 항목을 합산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2월, 2010.2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2월 (누계기준)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1.8%(249억CAD) 증가한 2,363억CAD를 기록
 - (프로그램지출) 2,092억CAD로 전년 대비 14.4%(264억CAD) 증가
 - 노인인구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이 전년대비 13.4%(74억CAD) 증가
 - 2009.4월 발표한 가스세 이전(gas tax transfer) 100% 인상을 비롯해 보건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이 전년 대비 9.6%(41억CAD) 증가
 - 자동차산업 지원, 인프라 기금 확대, 근로자 및 학생 지원 등 기타 이전지출이 전년 대비 43.6%(102억CAD) 크게 증가
 - 국영기업 및 부처별 운영비용 상승으로 기타 프로그램지출이 전년 대비 7.6%(47억CAD) 증가
 - (이자지출) 이자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한 271억CAD를 기록

<표 3-VI-3> 연방정부 재정지출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2월	누계 (2007.4~ 2008.2)	2월	누계 (2008.4~ 2009.2)	2월	누계 (2009.4~ 2010.2)	변동분	%
이전지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노인급여	2,700	29,179	2,845	30,451	2,942	31,728	1,277	4.2
고용보험급여	1,347	12,896	1,739	14,140	2,341	19,882	5,742	40.6
자녀수당	960	10,912	955	10,957	1,031	11,372	415	3.8
소계	5,007	52,987	5,539	55,548	6,314	62,982	7,434	13.4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 지원								
CHT(Canada Health Transfer)	1,799	19,668	1,885	20,743	2,084	22,760	2,017	9.7
CST(Canada Social Transfer)	831	9,011	880	9,678	905	9,954	276	2.9
소계	2,630	28,679	2,765	30,421	2,989	32,714	2,293	7.5
재정이전	1,267	13,565	1,292	14,336	1,301	14,892	556	3.9
지역사회	12	748	15	871	166	1,841	970	111.4
Quebec주 CHT, CST 운영비용 대체 지급 ¹⁾	-248	-2,778	-277	-2,783	-231	-2,471	312	-11.2
소계	3,661	40,214	3,795	42,845	4,225	46,976	4,131	9.6
기타 이전지출								
농업 및 농식품	226	2,148	56	1,485	-10	1,408	-77	-5.2
외교·통상	430	2,512	314	2,761	467	2,878	117	4.2
보건	135	1,845	131	2,003	156	2,290	287	14.3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	134	1,638	133	2,135	214	2,966	831	38.9
인디언 및 북부지역 개발	342	4,402	354	4,543	396	4,717	174	3.8
산업	165	1,755	153	1,918	528	2,708	790	41.2
기타	932	7,601	727	8,439	644	16,467	8,028	95.1
소계	2,364	21,901	1,868	23,284	2,395	33,434	10,150	43.6
이전지출 소계	11,032	115,102	11,202	121,677	12,934	143,392	21,715	17.8
기타 프로그램 지출								
국영기업	528	6,467	585	6,999	890	8,070	1,071	15.3
국방	1,614	16,062	1,591	16,859	1,591	17,616	757	4.5
부처별 사업비	3,493	37,834	3,155	37,315	3,619	40,152	2,837	7.6
기타 프로그램 지출 소계	5,635	60,363	5,331	61,173	6,100	65,838	4,665	7.6
총프로그램 지출	16,667	175,465	16,533	182,850	19,034	209,230	26,380	14.4
이자지출	2,649	30,561	2,285	28,515	2,256	27,064	-1,451	-5.1
총재정지출	19,316	206,026	18,818	211,365	21,290	236,294	24,929	11.8

주: 1) 다른 주정부와 다르게 Quebec주에서는 CHT와 CS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에서는 현금 대신 연방 개인소득세율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지출로 표기. 원명칭은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2월, 2010.2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0.2.28 기준 연방정부의 비금융자산을 차감한 누적 채무는 5,042억CAD로 전년 대비 10.5% 증가
 - 자산과 부채를 합한 순채무규모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5,662억CAD
 - 2009.4~2010.2월까지의 순재원조달규모는 376억CAD 기록

〈표 3-VI-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CAD, %)

구분	'08.2.29	'09.2.28	'10.2.28	전년 대비 증감	
				변동분	%
부채					
미지급 부채 계정	106,955	106,368	106,240	-128	-0.1
이자부 부채					
만기 전 채무					
자국통화표시 채권					
시장성 채권	254,134	284,999	359,811	74,812	26.2
Treasury bills	110,874	188,536	173,675	-14,861	-7.9
Retail debt	13,105	12,454	11,923	-531	-4.3
기타	1,044	523	454	-69	-13.2
소계	379,157	486,512	545,863	59,351	12.2
외국통화표시 채권	9,528	10,886	9,209	-1,677	-15.4
이중통화 스왑 채평가 계정	-3,581	3,044	-2,717	-5,761	-189.3
미상각 채권 할인액/할증액	-6,340	-5,153	-4,864	289	-5.6
자본리스와 관련한 채무	3,519	4,139	4,160	21	0.5
만기 전 채무 소계	382,283	499,428	551,651	52,223	10.5
연금 및 기타 채무					
공공부문 연금	137,315	139,525	142,912	3,387	2.4
기타 근로자 및 보훈급여	47,543	50,210	53,825	3,615	7.2
기타 채무	5,747	5,792	6,094	302	5.2
연금 및 기타 채무 소계	190,605	195,527	202,831	7,304	3.7
이자부 부채 소계	572,888	694,955	754,482	59,527	8.6
총부채	679,843	801,323	860,722	59,399	7.4
금융자산					
현금 및 미수금 계정	78,222	113,681	97,274	-16,407	-14.4
외국환 계정	40,988	52,007	48,787	-3,220	-6.2
차관, 투자 및 선급금(순 급여)	49,672	120,339	148,460	28,121	23.4
총금융자산	168,883	286,027	294,521	8,494	3.0
순채무	510,961	515,296	566,201	50,905	9.9
비금융자산	56,583	58,978	61,965	2,987	5.1
연방정부 채무(누적 적자)	454,378	456,318	504,236	47,918	10.5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8.2월, 2009.2월, 2010.2월

VII

호주 (2010년 1월 기준, FY2009-10: 2009.7~2010.6)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09.7~2010.1월 예산적자는 약 331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132.5% 증가
 -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 증가로 적자폭 확대
 -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8.3% 증가
 - FY2009-10 반기재정보고서(MYEFO) 1월(누계) 전망치와 비교하면 재정수입은 약 5억호주달러 증가, 지출은 53억호주달러 감소
 - 미래기금(Future Fund)을 포함한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332.9% 증가한 271억호주달러

- 2010.1월 누계기준 순채무는 247억호주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18.5% 크게 증가

〈표 3-VII-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1월	누계 (2007.7~ 2008.1)	1월	누계 (2008.7~ 2009.1)	1월	누계 (2009.7~ 2010.1)	누계 기준	%	FY2009
수입	27,267	170,528	25,434	171,755	25,443	167,318	-4,437	-2.6	291,823
지출	21,197	159,238	26,586	177,448	28,818	192,106	14,658	8.3	340,166
순운영수지	6,070	11,290	-1,153	-5,694	-3,375	-24,788	-19,094	335.3	-48,344
순자본투자	98	709	-384	569	209	2,318	1,749	307.4	6,033
재정수지 ¹⁾	5,972	10,581	-769	-6,262	-3,584	-27,106	-20,844	332.9	-54,377
예산수지 ²⁾	3,667	3,367	-285	-14,248	-242	-33,124	-18,876	132.5	-57,685
총자산	4,376	221,949	268,487	268,487	-	309,685	41,198	15.3	323,426
총부채	613	202,744	215,390	215,390	-	313,483	98,093	45.5	346,469
순채무	-3,276	-26,489	-20,821	-20,821	-	24,669	45,490	-218.5	45,171

주: 1) 재정수지(fiscal balance) = 순운영수지(= 수입 - 지출) - 순자본투자 (발생주의 기준)

2)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 재정수지(순운영수지 - 순자본투자) - Future Fund 수익금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년도 1월 보고서

2. 세목별 세입동향

- 2009.7~2010.1월까지 총재정수입은 전년에 비해 44억호주달러(2.6%) 감소한 1,673억호주달러 규모
 - 배당소득의 증가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6%(41억호주달러) 증가한 반면, 소득세 등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4%(85억호주달러) 감소
 - 근로가구지원을 위한 조세감면과 사업자 세금공제 확대로 소득세는 전년 대비 8.8%(101억호주달러) 감소
 - 기타 소득세 중 법인세가 전년에 비해 61억호주달러(14.9%), 국민연금기금이 24억호주달러(33.7%) 크게 감소

<표 3-Ⅶ-2> 일반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1월	누계 (2007.7~ 2008.1)	1월	누계 (2008.7~ 2009.1)	1월	누계 (2009.7~ 2010.1)	누계 기준	%	FY2009
총재정수입	27,267	170,528	25,434	171,755	25,443	167,318	-4,437	-2.6	291,823
조세수입	26,071	160,275	24,265	159,147	23,996	150,603	-8,544	-5.4	267,508
소득세	21,105	116,639	18,806	114,695	18,581	104,583	-10,112	-8.8	189,310
개인소득세	8,521	62,777	7,954	63,391	7,913	61,898	-1,493	-2.4	123,070
원천징수	8,447	65,340	8,065	68,622	7,666	67,422	-1,200	-1.7	119,290
기타 개인소득세	757	12,497	688	12,119	410	13,558	1,439	11.9	29,050
환급	683	15,059	799	17,351	163	19,082	1,731	10.0	25,270
기타소득세	12,583	53,861	10,852	51,304	10,668	42,685	-8,619	-16.8	66,240
법인세	10,636	41,604	9,754	40,699	8,955	34,622	-6,077	-14.9	54,670
국민연금기금	816	8,312	468	7,071	770	4,688	-2,383	-33.7	6,690
석유세	463	1,556	0	1,423	314	1,054	-369	-25.9	1,450
간접급여세	669	2,388	630	2,111	628	2,320	209	9.9	3,430
간접세	4,966	43,636	5,459	44,452	5,415	46,020	1,568	3.5	78,198
소비세	1,781	13,992	2,429	14,404	1,716	14,379	-25	-0.2	24,410
관세	523	3,620	535	3,889	444	3,648	-241	-6.2	5,830
재화·서비스세 ¹⁾	-	-	1,615	24,044	2,679	25,401	1,357	5.6	44,260
기타 간접세	2,662	26,024	881	2,115	577	2,592	477	22.6	3,698
세외수입 ²⁾	1,197	10,254	1,169	12,607	1,448	16,715	4,108	32.6	24,315
재화 및 서비스매출	440	3,134	516	3,300	660	4,386	1,086	32.9	7,953
이자	397	2,754	284	3,322	373	2,537	-785	-23.6	4,749
배당소득	15	1,884	18	2,379	18	6,712	4,333	182.1	7,384
기타	345	2,482	351	3,606	397	3,080	-526	-14.6	4,229

주: 1) 재화·서비스(Goods and Service Tax; GST) 항목은 FY2009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기타간접세(Other indirect tax)에 포함되어 있음

2) 세외수입 소계는 하위분류 값을 합산하였음.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년도 1월 보고서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1월(누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921억호주달러를 기록
- 보조금(grant), 재화 및 서비스 지출 증가가 재정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임
 - 교육지출이 전년 대비 72.3%(95억호주달러) 크게 증가, 연료 및 에너지 72.0%(22억호주달러),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71.0%(16억호주달러) 증가
 - 의료지출도 전년에 비해 약 25억호주달러(9.3%) 증가
 - 정부간 이전지출(10.9%), 공공서비스(3.5%), 사회보장 및 복지(2.6%), 교통 및 통신(2.5%) 등 지출 감소

〈표 3-Ⅶ-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FY2009-10
	1월	누계 (2007.7~ 2008.1)	1월	누계 (2008.7~ 2009.1)	1월	누계 (2009.7~ 2010.1)	누계 기준	%	
공공서비스	2,285	11,228	1,761	10,593	1,736	10,219	-374	-3.5	17,946
국방비	1,091	9,538	1,339	10,354	1,486	11,069	715	6.9	20,740
공공질서 및 안전	253	2,154	229	1,336	306	2,093	757	56.7	3,818
교육	2,937	13,718	4,025	13,182	5,510	22,712	9,530	72.3	35,231
의료	3,336	24,796	3,217	26,771	3,648	29,265	2,494	9.3	52,355
사회보장 및 복지	7,435	55,456	8,152	66,865	8,858	65,140	-1,725	-2.6	110,195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226	1,609	579	2,256	483	3,858	1,602	71.0	9,129
여가 및 문화	191	1,501	143	1,172	227	1,619	447	38.1	3,094
연료 및 에너지	460	2,877	431	3,042	926	5,231	2,189	72.0	8,467
농업, 산림, 어업	307	1,971	224	1,128	204	1,491	363	32.2	3,597
광업	72	929	92	895	166	1,125	230	25.7	1,692
교통 및 통신	252	2,240	403	2,570	282	2,507	-63	-2.5	5,805
기타 경상비	414	3,356	464	3,279	537	3,220	-59	-1.8	9,038
기타 목적	1,937	27,864	5,527	34,005	4,447	32,555	-1,450	-4.3	59,058
공공채무 지급이자	304	2,048	259	2,000	534	3,349	1,349	67.5	6,912
연금 지급이자	170	1,192	525	3,673	554	3,881	208	5.7	6,792
정부간 이전	1,451	24,286	4,741	28,305	3,351	25,219	-3,086	-10.9	44,701
자연재해 구조비용	15	320	0	13	8	106	93	715.4	145
간급예비비 ¹⁾	-3	18	2	14	0	0	-14	-100.0	508
총지출	21,197	159,238	26,586	177,448	28,818	192,106	14,658	8.3	340,166

주: 1) 간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에 자산매각 관련지출 포함

1.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표의 수치합계와 총지출 값이 다를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1월 보고서

4. 국가채무 동향

- 2010.1월 일반정부 순자산은 -38억호주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07.2%(569억호주달러) 감소
 - 자산이 412억호주달러(15.3%) 증가하였으나, 부채 증가가 981억호주달러(45.5%)에 달함
 - 연금 등 의무지급금을 제외한 이자발생부채규모는 1,402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81.0%(627억호주달러) 증가

- 2010.1월 순채무 규모는 247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218.5%(455억호주달러) 증가 (채무 구조 악화)

〈표 3-Ⅶ-4〉 일반정부 채무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2008.1.31.	2009.1.31.	2010.1.31.	증감액	%	2010.6.30.
자산	221,949	268,487	309,685	41,198	15.3	323,426
금융자산	173,400	178,380	213,722	35,342	19.8	224,694
비금융자산	48,548	90,107	95,963	5,856	6.5	98,732
부채	202,744	215,390	313,483	98,093	45.5	346,469
이자발생부채	64,246	77,427	140,155	62,728	81.0	175,634
예치금	318	271	238	-33	-12.2	230
정부채권	58,035	69,375	127,323	57,948	83.5	162,486
차입	5,521	6,955	11,742	4,787	68.8	12,093
기타	372	825	851	26	3.2	826
의무지급금 ¹⁾	138,497	137,963	173,329	35,366	25.6	170,835
순자산 ²⁾	19,205	53,097	-3,798	-56,895	-107.2	-23,043
순금융자산 ³⁾	-29,343	-37,010	-99,761	-62,751	169.6	-121,774
순금융부채 ⁴⁾	-	57,919	126,415	68,496	118.3	148,629
순채무 ⁵⁾	-26,489	-20,821	24,669	45,490	-218.5	45,171

주: 1) FY2007년도에는 해당 계정이 없이 하위항목 연금부채, 기타 고용자 관련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항목들의 합계 값을 구하였음.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순자산(net worth) = 자산 - 부채

3)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 금융자산 - 부채 (비금융자산 제외)

4) 순금융부채 = 부채 - 금융자산 + 금융자산 중 기타공공부문투자

FY2007-08 보고서에는 본 계정금액 산출을 위해 필요한 계정항목이 없음

5) 순채무 = (예치금 + 선수금 + 정부채권 차입 및 기타 차입) - (현금 및 예금 + 선지급 + 투자, 차입 등)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1월 보고서